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 업무편람

2017년 3월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계획

제19대 대통령선거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 개요

○ 일 시 : '17. 3. 23. ~ 3. 30., 09:30 ~ 17:00

○ 대 상 : 7,800여명(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거·전산·결격사유시스템 담당자)

※ 시·도 3명, 시·군·구 3명, 읍·면·동 2명

○ 일정 / 장소

권역	수도권	영남권	제주권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제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강원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일시	3.23.(목)	3.24.(금)		3.27.(월)	3.28.(화)		3.30.(목)
장소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구 문화예술회관	제주웰컴센터 웰컴홀	천안시청 봉서홀	세종대 대양홀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광주 문화예술회관
인원	1,550명	1,050명	100명	1,000명	1,400명	1,350명	1,400명

○ 강 사 : 행정자치부·중앙선관위(담당사무관) 등

□ 주요 내용

○ 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사항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 요령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 관여행위 금지

○ 기타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9:30~10:00 (30′)	○ 등록 및 안내	지자체 공무원
10:00~10: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0:05~10:10 (5′)	○ 인사 말씀	지방행정실장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장
10:10~10:40 (30′)	○ 법정선거사무처리 요령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포함	선거의회과
10:40~12:40 (110′)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운용 요령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포함	행정자치부 (주민과)
12:40~14:00 (80′)	○ 점심	
14:00~14:30 (30′)	○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중앙선관위 (선거1과)
14:30~15:30 (60′)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 요령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15:30~15:40 (10′)	○ 휴식	
15:40~16:30 (50′)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중앙선관위 (조사1과)
16:30~17:00 (30′)	○ 질의응답	
17:00	○ 교육 종료	

Contents 목차

Ⅰ. 공직선거법 개요

제 1 장 총 칙

1. 목적(법 §1) ····· 3
2. 선거인의 정의(법 §3) ····· 3
3. 인구의 기준(법 §4) ····· 3
4. 선거사무 협조(법 §5) ····· 5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6) ····· 5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6의 2) ····· 5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9, 법 §85①) ····· 6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10) ····· 6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법 §15) ····· 7
2. 피선거권(법 §16) ····· 8
3. 연령산정 기준(법 §17) ····· 8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①) ····· 9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19) ····· 14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33) ····· 15
2. 선거일(법 §34) ····· 15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35, §197, §203) ····· 16

제 4 장 선거인명부 작성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 18
2. 선거인명부 작성(법 §37) ····· 22
3.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39) ····· 27
4.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37) ····· 27
5.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 29
6. 전출·전입자 조치(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 30
7. 국외이주자 조치 ····· 30
8.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 31
9.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 31
10.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 32
11. 명부의 효력 ····· 32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1. 거소투표신고 기간·방법·내용·대상(법 §38, 규칙 §11) ····· 33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 38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 39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39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 42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 43

제 6 장 선상투표 관리

1. 선상투표 개요 ····· 49
2. 선상투표신고서 접수·처리 ····· 50
3. 선상투표신고서 보완요청 ····· 53
4. 선상투표용지 등 수신 ····· 60
5.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송부 ····· 60
6. 투표준비 ····· 64
7. 투표 개시 및 진행 ····· 65

8. 투표 마감 및 기타 ····· 66
9.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안내 ····· 67

제 7 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 구제

1. 명부 열람(법 §40, 규칙 §13) ····· 73
2. 이의신청과 결정(법 §41, 규칙 §13) ····· 75
3. 불복신청과 결정(법 §42) ····· 75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43, 규칙 §15) ····· 76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14) ····· 78
2.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44, 규칙 §16) ····· 80

제 9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1. 명부의 재작성(법 §45, 규칙 §17) ····· 84
2.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 규칙 §18) ····· 85
3. 세대주명단 작성·교부(법 §60조의3, §111) ····· 88

제 10 장 투 표

1. 선거방법(법 §146) ····· 91
2. 투표소의 설치(법 §147, §148) ····· 91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146조의2, §147⑨) ····· 92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153) ····· 93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154) ····· 93
6. 투표시간(법 §155) ····· 94
7. 투표의 제한(법 §156) ····· 94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157, 규칙 §82②) ····· 95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158, §158의2) ····· 95

10. 투표참관(법 §161, §213) ····· 97
11. 사전투표참관(법 §162, §213) ····· 98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163) ····· 98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164~§166) ····· 98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167) ····· 99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봉인(법 §168, §169) ····· 100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170, §171) ····· 100

제 11 장 개 표

1. 개표관리(법 §172) ····· 101
2. 개표소(법 §173) ····· 101
3. 개표사무원(법 §174) ····· 101
4. 투표함의 개함(법 §177) ····· 102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183) ····· 102

Ⅱ. 재외선거 일반

제 1 장 재외선거 일반

1. 재외선거제도 의의 ····· 105
2. 재외선거제도 개요 ····· 109
3.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 116

제 2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관리

제1절 개요 ····· 118
제2절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처리 ····· 123
제3절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관리 ····· 128
제4절 명부의 열람·수정 및 확정 ····· 139

제 3 장 재외투표

1. 재외투표 절차도 ····· 145
2. 재외투표 개요 ····· 146
3. 재외투표 절차 ····· 148
4. 귀국투표 ····· 149

제 4 장 재외선거 개표

1. 개표절차도 ····· 150
2. 개표방법 ····· 151
3. 개표절차(국내개표 예시) ····· 151

Ⅲ.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 155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 156
3.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 157
4.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 158
5. RIUS-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 158
6. RIUS-기타통보서 출력(작성상황) ····· 159
7. RIUS-거소투표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160
8. RIUS-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 160
9.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시·군·구 전산담당자) ····· 161
10. RIUS-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161
11. RIUS-기타통보서 출력(확정상황) ····· 162
12. RIUS-선거인명부 확정내역 ····· 162
13-1. 선관위용 파일작성(시·군·구용)-파일작성 ····· 163
13-2. 선관위용 파일작성(시·군·구용)-처리진행상황조회 ····· 163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 166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170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173
17. 선거인파일 작성 ····· 176
18.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 187
19. 선거인명부 출력 ····· 189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191
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195
22. 선상투표신고서 접수 ····· 196
23. 선상투표신고서접수부 ····· 197
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199
25.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201
26. 선관위용파일작성 ····· 202
27. 후보자용파일작성 ····· 202
28. 선거인명부열람 ····· 203
29.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 208
30.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209
31. 투표안내문 ····· 211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1.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 218
2.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 219
3.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 225
4. 기타 안내사항 ····· 229

Ⅴ. 주요 선거사무 일정

•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 235



I 공직선거법 개요

제1장 총 칙

1. 목적(법 §1)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

2. 선거인의 정의(법 §3)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3. 인구의 기준(법 §4)

○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함

○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규칙 §2①, §118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인구의 기준일에 따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법 제60조의2)**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
-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 상기 기준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제19대 대통령선거 : '17. 3. 10.부터 (실시사유 확정일)**

○ 시·군·구의 장은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규칙 §2②)

- 인구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5일까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15.8.13.〉

인 구 수 등 통 보 서

(　　년　　월　　일 현재)

읍·면·동명	투표구명	인 구 수	세 대 수	19세 이상의 주 민 수	비 고

주 : 1. 하나의 구·시·군안에 2 이상의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시·도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각각 "소계" 란을 둔다.

2. 하나의 읍·면·동안에 2개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가 있거나 2 이상의 투표구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별 또는 선거구별로 "소계" 란을 둔다.

3. "인구수·세대수·19세 이상의 주민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4. 선거사무 협조(법 §5)

○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6)

○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함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 §2조 10의2호)
- 「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함

☞「근로기준법」(법 §10, §110)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법 §10 공민권행사의 보장)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110 벌칙)

○ 각급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대책 수립·시행 가능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교통불편지역 거주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6의 2)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2014.2.13. 신설)

○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261③)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9, 법 §85①)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검사(군검찰관 포함)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포함)은 「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14.2.13. 신설)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10)

○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가능함

-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법 §15)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 19세 이상의 국민(외국인 제외)

> ☞ **제19대 대통령선거 : 1998. 5. 10. 이전 출생자**

- 다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 3개월 미만인 재외국민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법 §37①)
> - 대통령 :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원) : 선거일 전 22일
> -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함(법 §202②)
>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1.(화)**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1. 이전 등재)

2. 피선거권(법 §16)

○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

☞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 변경(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 포함)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봄

3. 연령산정 기준(법 §17)

○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함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함(「민법」 §158 연령의 기산점)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①)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권이 없는 자」의 해석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금치산자

- 대상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용어 정리

•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함

☞ **'13.7.1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 개정 민법 시행('13.7.1)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후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10조).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선거권 없음

개정민법('13.7.1.시행)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일반범죄

-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

☞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함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 ㉯ 가석방중인 자가 이에 해당

✱ 용어 정리

- **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용중인 자를 말함

  cf) 수형자가 아닌 미결 구금자는 선거권이 있음

  * **미결구금자**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을 말함
- **가석방**이란,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중 교도소 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죄를 뉘우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를 말함.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형법」제76조제1항) 가석방 중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선거권이 없음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 ㉮ 집행유예중이거나, ㉯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거나,
㉰ 형 집행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

• 이 중에서 집행유예자들은 투표 가능

단순위헌, 2012헌마409, 2014.1.28. 공직선거법(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제1항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용어 정리

☞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형법」제62조)

cf)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형법」제59조)

☞ **형의 시효의 완성**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함. 즉,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형법」제77조, 제78조)

☞ **기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형법 제1조제3항)
•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선거범 등

- 대상 : 일정 선거관련 범죄의 전과자(선거범과 「정치자금법」·「형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용어 정리

☞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함

•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 ㉮ 상소기간 등의 도과(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소하지 않거나), ㉯ 불복신청의 포기·취하, ㉰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해 확정됨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함

③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일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 용어 정리

- **형의 실효와 복권**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전과사실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과사실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이 두고 있는 제도임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됨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 법원의 판결,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 대상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상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 정지)
③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함

✱「형 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치료감호**는 형벌은 아니지만, 범죄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인적 보안처분으로써 「형법」제1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보안처분을 말함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19)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33)

○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 : 14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6.(일) ~ 5.9.(화), 23일**

○ 선거운동기간(법 §59)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6.(일) ~ 5.8.(월), 22일**

2. 선거일(법 §34)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함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35, §197, §203)

<table>
<tr><th>선 거 별</th><th>선거실시기한</th><th>공 고 권 자</th><th>공 고 기 한</th></tr>
<tr><td>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td><td>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td><td>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td><td>선거일전 50일까지</td></tr>
<tr><td rowspan="2">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td><td colspan="3">• 4월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에 실시
※ 민속절 등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0호 및 한식일(규칙 제8조)</td></tr>
<tr><td colspan="3">•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

•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td></tr>
<tr><td rowspan="2">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td><td>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중</td><td>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해야 함</td><td>선거일전 30일까지</td></tr>
<tr><td colspan="3">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td></tr>
<tr><td>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td><td>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td><td>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td><td>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td></tr>
</table>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실시사유 확정일(3.10.)로부터 60일째인 5.9. 실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 날
- 1월 1일
- 설날 전 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 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 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법 §35 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법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봄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법 별표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연기된 선거는 법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 재투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 4 장 선거인명부 작성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장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직권으로 작성하는 공부를 말함(법 §37)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신고한 자를 등재한 공부를 말함(법 §38)

○ “국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 국민에 해당되고, 해외영주권 취득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 국민에 해당됨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란 사실상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임

> ☞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됨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및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일시”는 해당일의 24시를 기준으로 함

○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대상자”는 시·군·구의 장이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말함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란 영내기거를 의무로 하는 자와 영외거주가 허용된 장병도 포함하는 사실상 영내에 거주하는 장병을 지칭함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휠체어에 의하여 거동하는 자도 포함함

○ “외딴 섬”이란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없는 섬을 지칭함

○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 선거권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함

○ “거소투표신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단위기관·시설의 장을 말함

- 군부대 : 직인을 가지고 있는 중대장 이상의 부대의 장

☞ 다만, 직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본대로부터 독립되어 설치된 부대의 장을 포함함

- 경찰관서 : 지구대 이상의 경찰관서의 장
- 병원·요양소 : 그 시설의 장
- 신체장애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 : 거소지 또는 주소지의 통·리·반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없이 거소신고 가능)

○ “관계인”이라 함은 신청인과 선거인이 다른 경우 당해 선거인을 말함

○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 함은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와 투표참관인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을 뜻함

○ “전산자료 복사본”이라 함은 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를 디스켓에 복사한 것을 말함

○ “위장전입자”라 함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제외함)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거주불명 등록제도

❑ 제도 개요

❍ 도입이유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 처리요령 : 주민신고 또는 직권조치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후(2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 관련 Q&A

1. 「거주불명 등록제」란?

❍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2.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단독세대주가 되며, 세대가 동시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 임시주소로 주민등록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 등록자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 말소자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거주불명 등록되었더라도 '주민등록자'에 해당하므로 본인 및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느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설정하는지?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가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했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합니다.

❍ 신고된 최종 주소에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공고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정정으로 처리) 합니다.

4. 신청에 의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른 읍·면·동 주소로 이관할 수 있는지?

❍ 마지막 주소지인 행정상 관리주소에서 신청에 의해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로 주소를 이전할 수는 있으나,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소를 이관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 이관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의 재등록은 이전신청을 의미

5.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해당주소의 재산권자가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말소자가 1년 경과기간 내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이 아닙니다.

6. 거주불명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주소를 갖지 못해 누릴 수 없었던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본권 관련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로 말소제도는 폐지되는지?

❍ 거주불명 등록제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사망말소, 해외이주말소, 현지이주말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8.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대신 거주불명 등록하면 주민등록법상 「공법상주소」와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지?

❍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행정상 관리주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시주소에 불과하고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가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는 등 기본권보장 이외의 분야에서는 기존 말소와 동일합니다.

9.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 등록제가 도입되면 장기로 거주불명 등록하여 악용할 우려는 없는지?

❍ 거주불명 등록제는 기본권보장 이외에는 기존 말소제도와 동일하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거주불명등록'이 표시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악용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법 § 37)

○ 작성권자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선거일 전 28일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1.(화)**

○ 작성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1.(화) ~ 4.15.(토)**

○ 등재대상자

- 선거일 전 28일 현재 법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
> ☞ '09.10.2부터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도」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도 행정주소를 가지고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 작성방법(법 §37, 규칙 §10)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선거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을 포함)를 투표구별로 주민등록표·국내거소신고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
-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 사항 기재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 가능

- 투표구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외국인선거권자를 각각 구분·작성

☞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 선거권자
※ '15.1.22.부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되나 선거인명부 등재순서는 현행 유지

-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 가능
-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음

❍ 작성단위 : 투표구별 2통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4.11.) 1통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마감일(4.15.) 2통(열람용 1통, 보관용 1통)

☞ 거소투표신고인 정보를 반영하여 출력

❍ 명부송부(법 §37, 규칙 §10)
- 시·군·구의 장은 작성 후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1통과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를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송부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5.(토)**

벌 칙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47①)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247②)

[별지 제2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년 월 일 실시 ○○선거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 년 월 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제○투표구분(○책중○권)

○○시·군·구의 장 [인]

※ 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읍·면·동 제○투표구분(○책중○권)"을 "○○읍·면·동분(○책중○권)"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나)] (선거인명부) 〈개정 2015.12.24.〉

등재번호 ①	주 소 ②	세대주 ③	성 별 ④	생년월일 ⑤	성 명 ⑥	투표용지수령인⑦ (가)	투표용지수령인⑦ (나)	비 고 ⑧

주 : 1. 명부기재방법

①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구역안의 주소의 건물번호순 또는 통·리·반 또는 선거인의 성명의 가·나·다순이나 생년월일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

③ 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세"로 표시한다.

⑥ 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⑦ 투표용지수령인란 중 "(가)"란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며(동시선거를 포함한다), "(나)"란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한다.

⑧ 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군·구의 장은 이의·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시·군·구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나.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 선거권자"로,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으로 적는다.

다.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표시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과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나.에 따라 적은 내용 아래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적는다.

라. 시·군·구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시·군·구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줄로 삭제하고, 오기의 발견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시·군·구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군·구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마.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시·군·구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된 자를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선상귀국투표신고·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시·군·구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된 자를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상귀국투표신고자·재외귀국투표신고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다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하 "사."에서 같다.

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거소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시·군·구의 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4.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 순으로 빈 줄 등을 두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을 적는다. 다만, 동시선거에서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의(라)]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14.1.17〉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작성하고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시·군·구의 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장소와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시·군·구의 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시·군·구의 장 [인]

주 : 1.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1)항 및 (3)항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2. (3)항은 명부의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가)] (규칙 제10조제6항 관련)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 구 수 (년 월 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세대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39)

○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

- 임면권자 : 시·군·구의 장
- 임면통보 : 임면권자가 지체 없이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임면 연월일 등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통보
- 해　　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명부작성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관할 시·군·구선관위 또는 직근 상급선관위와 협의하여 해임

○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 선거인명부작성의 감독 : 관할 시·군·구선관위 및 읍·면·동선관위
-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 교체 요구 : 관할 시·군·구선관위 및 직근 상급선관위
  - 명부작성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시·군·구선관위 및 읍·면·동 선관위의 지시·명령·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 명부작성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4.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37)

○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사전준비

- 단말기 및 프린터 일제점검 실시
- 주민전산 입력자료 중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시 사전 정비 입력
- 투표구별 명부작성시 선거인 파일은 통/반을 선택 입력하여 작성
- 예비선거인명부 출력 및 확인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3.(월) ~ 4.4.(화)

- 예비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이전에 1부를 출력하여 전산처리 상태 등을 사전 확인
- 예비선거인명부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할 것

○ 선거인명부 출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전·출입자 등 모든 변동사항을 수정·입력
- 변동사항 수정·입력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일과 후 선거인명부 전산파일을 작성(익일 작성 불가)

☞ 선거인명부 파일 작성

❖ 작성대상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4.11) 현재 법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해당 외국인* 포함)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등재자 : 19세 이상 거주자(주민등록된 재외국민 포함), 전입(거소이전)신고자, 재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 해당 외국인

– 제외자 : 19세 미만자, 말소자, 해외이주자, 국적상실자, 법 제18조 해당자

❖ 작성시기 : 선거일 전 28일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1.(화) 18:30 이후

- 선거인명부 전산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선거인명부를 기간 내 출력 완료

☞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해당 외국인(지방선거) 순으로 작성

유 의 사 항

❖ 출력된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선거권자, 선거권이 회복된 자에 한하여 추가등재 가능

*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군인 등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신고를 할 경우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미등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시 유의사항

- 세대주가 선거권이 없어 당해 세대원 또는 동거인이 타 세대원으로 혼돈되는 것을 방지

☞ 세대원 중 가장 먼저 등재된 선거권자의 세대주란에 “세”자 명기

- 명부 출력 중에 프린터의 장애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 중단된 페이지의 등재번호부터 출력 가능

5.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 수기 작성 판단 및 사전 준비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전산 출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군·구는 수기로 작성
- 투표구 단위로 명부작성 담당자의 지정 등 사전준비 철저

○ 수기 작성시 유의사항

- 선거인명부의 등재누락 방지
  -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누락여부 확인 철저
  - 관내 특수시설(기숙사, 병원, 합숙소, 사회복지시설 등)의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철저
  - 주민등록표 등과 작성된 명부의 대조·확인 철저
-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파악 기재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
  -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

6. 전출·전입자 조치(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 전입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선거인명부도 신거주지에서 등재되어야 함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전출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에 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전출지 읍·면·동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등재된 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절차 등에 따라 수정하여야 함

☞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 전입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관리하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중 등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7. 국외이주자 조치

○ 이민을 위한 국외이주 신고자가 국외로 출국한 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행정자치부 경유)한 이민출국자 통보서가 읍·면·동에 접수되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 등록 처리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 현지이주자는 일시적인 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갔다가 현지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외교부(재외공관장 등)로부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외교부(재외공관장 등)에서 통보(행정자치부 경유)한 현지이주자 통보서가 읍·면·동에 접수되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 등록처리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8.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된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권의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선거권이 회복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는 이를 즉시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에는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규정의 처리 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9.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 주민등록말소자는 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그 이전에 재등록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되어야 선거인명부에 등재 가능하고, 명부작성기준일이 지난 후 재등록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

>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4.11.)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 당연히 선거권이 부여되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4.11.)에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군·구의 장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가 그 말소행위가 원인 무효되어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때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발견된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장이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이의신청기간 중에 발견된 때에는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규정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발견된 때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10.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한 날이 신거주지의 전입일이므로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 그러나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국외거소투표신고 포함)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등 소위 위장전입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247)

○ 따라서, 선거인명부작성 후에도 신규전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위장 전입자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필요

참 고 사 항

❖ 사위등재, 위장전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47①)

❖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256③2호가목)

11. 명부의 효력

○ 선거인명부는 형식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부(公簿)임

○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하여 수시명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거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을 창설하는 효력(형성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투표를 할 수 없음(법 §156)
(다만, 법 제41조·제42조·제43조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하면 투표 가능)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라도 국적을 상실하면 투표를 할 수 없음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1. 거소투표신고 기간·방법·내용·대상(법 §38, 규칙 §11)

○ 신고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간)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1.(화) ~ 4.15.(토)**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

☞ 등기우편(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부담) 또는 인편신고 가능, 구두신고는 불가

○ 신고내용 : 거소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고 '거소'란에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실제 거소지'를 적음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 필요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

☞ 다만, 통·리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거소투표자로 등재할 수 있음(규칙 §11④ 단서)

③-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거소투표신고 가능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자 거소투표신고 관련

☞ 시·군·구의 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까지

※ 안내문은 거소투표신고서의 빈자리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갈음

☞ 등록장애인중 거동불능자 판정기준(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지체 (하지, 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평형)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장애	자폐성 장 애	정신
2급 이상	3급 이상	2급 이상	5급 이상	4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2급	2급 이상	2급 이상	1급

※ 위 "기준표"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도 거소투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거소투표 신고 안내를 할 수 있음

④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인천 팔미도·굴업도·지도, 경기 풍도·국화도, 충남 유부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소두라도·소횡간도·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다랑도·우도·섭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진목도·갈목도·눌옥도·내병도·성남도·소성남도·기도·고사도·평사도·율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제주 횡간도·추포도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1)

⑤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지정·공고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토) 까지

⑥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등기우편요금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부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별지 제3호서식의(가)] 〈개정 2015.8.13.〉

거 소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 기간만료일 전일(년 월 일)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시·군·구)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시·군·구) (읍·면) (대로·로·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표를 하고, 1·2·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경찰관서장	· 장의 직명(성명) _____인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 장의 직명(성명) _____인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 장의 직명(성명) _____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_____인

_____ 시·군·구의 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 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 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7. 삭제〈2015.8.13.〉

[별지 제3호서식의(라)] 〈개정 2015.8.13.〉

거 소 투 표 신 고 서

귀하께서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년 월 일)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시·군·구)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우편번호 (시·군·구) (읍·면) (대로·로·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_____ ㊞

_____시·군·구의 장 귀하

주 : 1. 이 서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2.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3.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7.5.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4.11. ~ 4.1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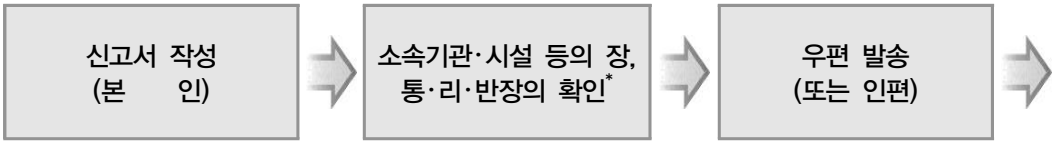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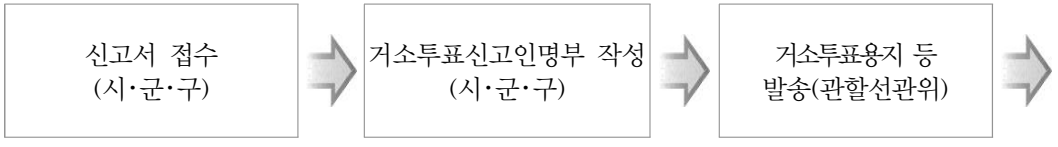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7년 4월 14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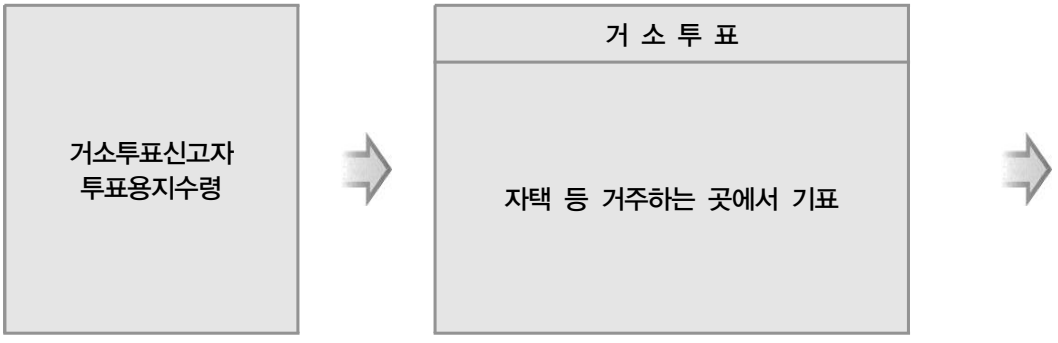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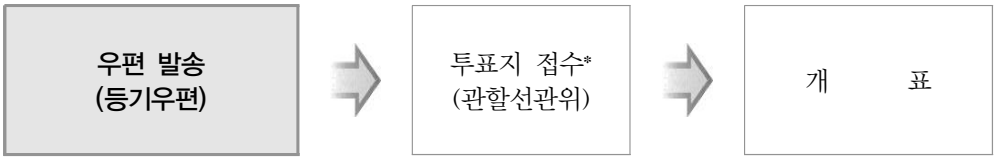
* 소속기관·시설의 장, 통·리· 반장의 확인 :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며, 사전에 거동불능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장애인도 거동 불능사유가 생긴 때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음



'17.4.11.(화) ~ 15.(토) 18:00

'17.4.30.(일)까지





* 선거일(5.9.) 18:00까지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 거소투표신고서 교부시 안내 철저

-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주소·거소·성명의 기재요령과 거소란에는 반드시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되, 지번주소를 적는 경우 통·리·반·번지까지, 아파트 등은 동·호수 등 상세 주소까지 적도록 안내

  • 거소투표신고서는 '17.4.15.(토)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도착되도록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안내

○ 거소투표신고서 대량 수요처 사전점검

- 거소투표신고서는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지 말고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많은 지역 또는 시설(병원, 요양소 등)을 사전에 파악, 과부족이 없도록 차등 배부

○ 거소투표신고서의 민원창구 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민원창구에는 반드시 변경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개시일 7일 전까지 사전에 비치하여 거소투표신고대상자의 편의 도모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접수기간 : 신고기간과 동일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1.(화) ~ 4.15.(토) 18시까지**

○ 접수방법

- 우체국 또는 시·군·구의 장은 다른 시·군·구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표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
  •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 이 경우 당해 시·군·구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하되, 거소투표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모사전송된 거소투표 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 거소투표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송부한 후에 접수되는 거소투표신고서도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 모사 전송시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 "원본과 틀림없음"을 기재한 후 전송자의 사인을 날인하여 송부하고, 그 원본은 즉시 우편(등기)으로 송부하며, 모사 전송한 사본은 발송한 기관에서 당해 선거의 임기만료일까지 별도 보관

- 신고서 접수시 신고요건 미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접수부에 기재
- 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사유(비고)」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신고 사유란에 표시된 해당번호를 기재(요건 미비자는 사유 기재)
-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모아 두었다가 접수부에 일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요건 미비자는 그 사유를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 사유(비고)」란에 기재한 후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고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하도록 안내
- 신고기간이 지난 후 도착되는 신고서라도 수취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일단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기재한 후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 「거소투표신고 사유(비고)」란에 명기하고, 신고인 본인에게는 신고요건 불비로 거소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도록 통보·안내함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5일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기재사항 누락 및 요건 미비자로 처리되어 통보되었을 경우 재작성 신고할 기간이 없으므로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작성방법을 사전 주지시키기 바람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자가 본인인지 의사, 필체 등을 통해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 여부 철저 확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 시·군·구의 장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음(규칙 §11④ 단서)

☞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 그 확인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 법령에 따라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부대장의 확인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확인자의 직위가 중대장, 대대장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아닌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봄

- 거소투표신고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소투표신고인 본인임을 시·군·구의 장이 확인한 때에는 보완등재 할 수 있음

- 거소투표신고 요건이 구비된 신고라면 신고서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이나 우편에 의한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서로 보지 아니함

-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간이 마감된 후 신고서의 반환을 요구 하더라도 일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반환이 불가하여 거소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당해 시·군·구선관위의 의결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을지라도 지체없이 당해 선거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을 지체없이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거소투표 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선거인명부 해당『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하고 당해인이 선거일 투표시 인정 처리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 거소투표신고기간 내에 철회 요구시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명부와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서 삭선하여 삭제하고 각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한 후 시·군·구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자”라 명기된 사항을 삭제하고 그 여백에 “철회”라고 기재한 후 연월일과 시·군·구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철회요구시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는 때에는 투표할 수 있음을 통지·안내함

[별지 제3호서식의(나)] (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개정 2014.1.17〉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

접수번호	성 명	주 소	거소·선상투표신고 사 유 (비 고)
접수일자	생년월일·성별	거 소 (우편번호)·(전화번호)	

주 : 1. 이 접수부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서의 해당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2. 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는다.

3. “거소·선상투표신고사유”란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유란에 표시된 해당 번호 또는 내용을 적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라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그 거소가 병원·요양소인 경우에는 “2”로, 그 밖의 경우에는 “3”으로 적는다.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작성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1.(화) ~ 4.15.(토)**

- 작성권자 : 시·군 · 구의 장
- 작성부수 : 투표구별로 2통(시·군·구용, 관할 시·군·구위원회 송부용 각 1통)
- 기재방법
  - "거소"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기재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자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기재

❍ 명부작성시 유의사항

-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는 거소투표신고서 접수순에 따라 작성함
- 거소투표신고서의 하단 중앙여백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순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편철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작성되면 이중등재 여부, 결격자등재 여부, 정당한 신고자의 누락 여부, 거소·성명·우편번호 오기 여부 등을 거소투표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수정할 수 없음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사망자, 결격자로 확인된 때라도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 수를 변경 처리하지 아니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및 송부(법 §44, 규칙 §16)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6.(일)**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 송부
  - 시·군·구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그 확정상황을 지체없이 관할 시·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시·군·구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 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시·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시·군·구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가 거소투표신고자인 때와 사망자, 결격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 시·군·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함

[별지 제2호서식의(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개정 2015.12.24.〉

등재번호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주 소	비 고
	(거소투표)·(선상투표) 접수일시	생년월일, 성별	거소(우편번호)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

2. "거소"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선상투표신고서는 선박의 명칭란 및 팩시밀리 번호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적는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 선거권자"로 적는다.

4.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과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주3에 따라 적은 내용 아래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적는다.

5.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사망한 사람, 잘못 적힌 사람에 대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는다.

6.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의 순서는 선거인명부등재번호순에 따른다.

거소투표신고서 접수·처리 등의 잘못된 사례에 대한 예방·대처방안

항 목	물 의 사 례	예방·대처방안
요건미비 신고자에 대한 처리	○ 요건이 미비된 신고서를 방치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처리 미숙으로 신고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사례	○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등재한 후 ○ 신고요건 구비여부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구비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바로 등재
	○ 접수부에 접수 처리하지 않고 신고한 본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보해 주지 않은 사례	○ 신고요건이 미비된 자는 그 접수부 “비고”란에 신고요건 미비사항 요지를 기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는 사유와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해야 함을 본인에게 통보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거소투표 신고인” 기재 처리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인”이라고 명기하지 않아 선거인명부상의 거소투표신고인수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상의 신고인수가 상이하여 거소투표신고자를 조작 등재하였다는 오해 발생 사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즉시 반드시 선거인명부와 대조·확인하여 “거소투표신고자” 기재 여부 확인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마감 처리	○ 거소투표신고 접수 마감일이 지나서 도착되는 거소투표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	○ 기한이 지난 거소투표신고서라 하더라도 일단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기재한 후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 “비고”란에 명기함 ○ 신고한 본인에게는 신고요건 미비로 거소투표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통지함
	○ 신고기간 경과 후 도착되는 신고서가 신고기간내에 발송우체국의 소인이 된 것이라 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하는 사례	○ 우체국소인이 신고기간 내에 찍혀진 것이라 하여 모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명부에 등재할 수 있음

항 목	물 의 사 례	예방·대처방안
거소투표 대리신고에 대한 처리	○ 읍·면·동직원, 통·리·반장 등이 자기 관내 선거권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례	○ 거소투표신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장애인수용시설에 집단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대리신고한 사례	○ 거소투표신고자 본인의 성명과 신고자의 성명이 다르거나, 거소투표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타인의 서명 또는 인영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신고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함
	○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거소투표신고서 여러 매가 접수되어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대리신고 사실이 발견된 사례	○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거소투표신고서가 여러 매 접수될 때는 대리신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본인 의사를 전화 확인하여야 함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요구에 대한 처리	○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가 사정에 의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기 위해 본인의 거소투표 신고를 철회 요구하는 사례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철회 요구가 불가하며 투표를 하여야 함을 안내 ○ 다만, 거소투표용지발송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거소투표 신고서의 편철	○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순으로 편철하지 않은 사례 ○ 거소투표신고서를 투표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의하여 읍·면·동 전체로 편철	○ 거소투표신고서의 하단 중앙여백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재하고 투표구별,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순위별로 편철하도록 함
군인의 거소투표 신고서 처리	○ 소속 부대장의 직인이 아닌 사인이 날인 되었다는 이유로 부적격한 거소투표신고로 처리한 사례	○ 사인이 날인 되더라도 유효한 거소투표 신고서로 처리함
착오입력 등재	○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동명이인 등)을 등재한 사례	○ 거소투표신고서에 의한 전산입력 철저
	○ 거소투표신고인의 주소, 우편번호 등을 착오 전산입력하여 투표용지가 반송된 사례	○ 전산입력 후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출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확인(오기입력 사항 발생시 수정 입력)

사전투표 관련 안내사항

❑ 도입 배경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사실상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통합명부는 명부작성권자(시·군·구의장)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송부 받아 중앙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명부를 작성**한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사용

❑ 사전투표소 대상 및 범위

○ 대상선거 : 모든 공직선거

○ 대 상 자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

○ 설치단위 :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

※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가능

○ 기　　간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06:00～18:00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5.4.(목), 5.5.(금)임.

❑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 본인확인기 신분증명서 스캔→선거인조회(명부단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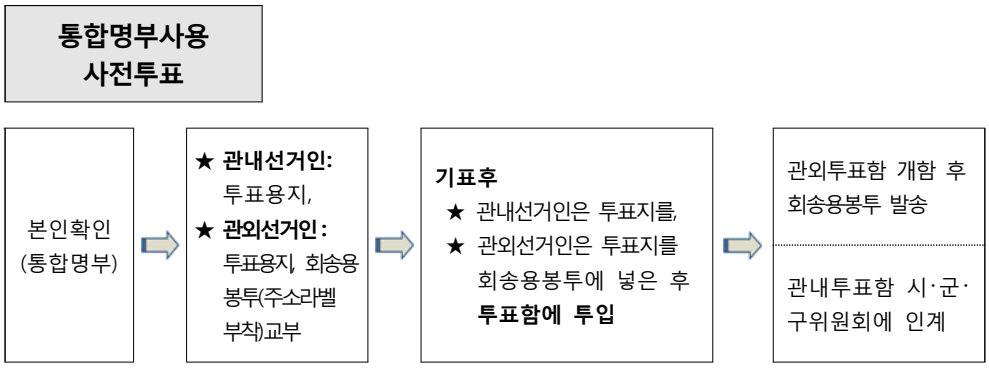
○ 명부등재 확인되면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출력하고, 회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하여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 발급하여 교부

☞ 관외선거인 : 출력된 주소라벨을 회송용봉투에 부착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1매)를 교부함

○ 관내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 사전투표 장비 및 보안

○ 통합선거인명부의 운영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운용프로그램, 통합명부통신망, 사전투표 운용장비로 구성

※ 사전투표운용장비는 명부단말기(노트북PC), 투표용지 발급기, 본인확인기(손도장 또는 서명입력기), 유·무선통신장비,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음

○ 통합명부통신망은 전용망으로 구축, 전기 통신 장애 등 대비 '통신사 무선통신망'을 보조망으로 구축

※ 주통신망과 보조통신망으로 이원화하여 안전성 확보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을 실시간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유지하여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는 물론, 선거일에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음(이중투표 방지)

제 6 장 선상투표 관리

1. 선상투표 개요

○ 도입배경

- 2005. 8.18. 원양어선 선원들이 선상투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공직선거법」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
- 2007. 6.28. 헌법재판소의「공직선거법」제38조 제3항과 제158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 2012. 2.29. 「공직선거법」개정, 선상투표제도 도입
- 2012.12.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 선상투표 실시

○ 선상투표제도 주요내용

가.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나. 선 거 인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용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 선상투표 관리현황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현황임.

가. 선박·선원 수

(단위 : 척·명, %)

구 분	합 계	원양어선	외항화물 · 여객선	외국국적 선박중 국민이 선장인 선박
선박수	458 (100)	28 (6.1)	321 (70.1)	109 (23.8)
선원수	2,849 (100)	275 (9.7)	1,892 (66.4)	682 (23.9)

나. 선원분포현황(시·도별)

(단위 : 명, %)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3,543 (100)	863 (6.4)	7,065 (52.2)	326 (2.4)	334 (2.5)	386 (2.8)	163 (1.2)	194 (1.4)	745 (5.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0 (1.5)	115 (0.8)	190 (1.4)	344 (2.5)	894 (6.6)	446 (3.4)	1,108 (8.2)	160 (1.2)

2. 선상투표신고서 접수·처리

○ 신고기간 : 2017년 4월 11일(화) ~ 4월 15일(토), 5일간

○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투표일(5.4. ~ 5.5.) 및 선거일(5.9.)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승선예정이거나 승선중인 선원

○ 선상투표신고

〈승선 예정 선원 - 서면신고〉

① 선상투표안내문(참고 1)을 읽은 후

② 작성예시(참고 2)를 참고하여 선상투표신고서 작성

③ 선장(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업경영자)의 확인(서명이나 도장)

④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2017.4.15.)까지 우체국에 접수 또는 우체통에 투입

〈승선하고 있는 선원 - 팩시밀리신고〉

① 선상투표안내문(참고 1)을 읽은 후

② 작성예시(참고 2)를 참고하여 선상투표신고서 작성

③ 선장(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업경영자)의 확인(서명이나 도장)

④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시밀리 번호를 기재

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청에 팩시밀리번호로 전송

※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17.4.15.)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

○ 신고서 접수 및 작성주체

- 시·군·구청에 설치된 선상투표신고서 수신용 팩스번호를 중앙선관위를 통해 선상투표 대상선박에 기 안내되었으므로(반드시 선상투표신고기간인 4.11.이전에 정상 송수신여부를 확인할 것)해당 번호에 의하여 선상투표신고서 접수 및 명부작성

※ 선박의 운항 특성상 시·군·구위원회로 제출한 선상투표신고서 수신용 팩시밀리번호 변경 시 적기에 안내가 불가하므로 변경 불가

※ 시·군·구의 책임 하에 선상투표신고서 접수처리(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및 보완요청

- 시·군·구청에서는 선상투표신고서 접수 및 명부작성 담당공무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접수 방법 등 교육 실시

○ 신고서 접수 시 주요 확인사항

〈서면(우편) 및 팩시밀리 접수 공통 유의사항〉

가. 정당한 신고여부

- 선상투표 신고서식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의한 선상투표신고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선상투표 신고인이 선거인명부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

※ 선상투표 신고사유 미기재, 본인의 도장(손도장 또는 서명)이나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확인(직인이나 개인도장 또는 서명, 손도장 불가)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처리

나. 신고서 서명·날인유무

- 선상투표신고인(선원)의 도장(손도장 또는 서명) 유무
- 선상투표신고사유 확인자(선장)의 직인(개인도장 또는 서명, 손도장 불가) 유무

다. 투표용지 수신 및 전송팩스번호 등 기재유무

- 선박에서 투표(용)지 수신 및 전송 위성통신 팩스번호 기재유무
- 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 기재유무

〈승선예정선원의 서면(우편)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신고서 기재내역 오류 시

- 신고서 상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유선확인 후 정정처리

  ※ 승선증명서 또는 확인서 등 증명서 첨부는 불필요함.

나. 다른 시·군·구의 신고서를 한 경우

- 거소투표신고서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
- 이 경우 당해 시·군·구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선상투표신고서를 접수·처리하고 신고인명부에 등재하되,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 후 모사전송된 선상투표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신고서철에 편철함.
- 승선예정선원의 선상투표신고 서면(우편)접수는 거소투표신고 접수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선상투표 신고기간 전에 접수한 신고서의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 후 신고기간 1일차에 접수처리

〈승선중인 선원의 팩시밀리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신고서가 뒷면으로 수신된 경우 접수처리

- 선박명, 선거인명, 선박팩스번호가 '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경우

  ⇨ 신고서 발송 당해선박에 재전송 보완요청

  ※ 선관위가 사전에 선박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제공한 신고서의 경우 뒷면에 선박명, 선거인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

- 팩스수신시 신고서 뒷면 상단에 자동 기재되는 팩스번호만 있는 경우

  ⇨ 현출된 팩스번호로 **보완요청서에 의한** 재전송 보완요청

- 신고서 뒷면에 팩스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 보완요청 없이 수신 일시·매수만 별도 기록·관리함
  ※ 추후 이의제기시 접수·처리 증거자료로 활용

나. 다른 시·군·구의 신고서를 수신한 경우

- 즉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통지 후 신고서 팩스 전송
- 부재자신고인 접수부에 사유를 기재한 후 수신한 신고서는 별도 보관
  ※ 보완요청은 통보받은 해당(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이 함

3. 선상투표신고서 보완요청

○ 보완요청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완요청

-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일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선박팩스로 전송(보완요청) 후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처리함
- 선박이 음영지역에 위치하여 팩스 송신이 안되거나, 보완요청서에 의한 보완요청일시까지 보완이 없는 경우 선상부재자신고기간 마감일 마감시각 전까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선박의 선장 또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 통화하여 보완요청서 정상 수신여부 확인 및 보완된 신고서 재전송 요청

유 의 사 항

❖ 반드시 위 절차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되 송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조업·항해 가능성 등 선박의 특수환경을 고려하여 사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요청을 하여야 함
※ 보완요청 절차를 생략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보완요청시에는 보완요청(팩스전송) 일시·보완요청 내용, 통화일시·통화상대방 직위·성명 등 자세히 기록·관리하여 사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별지 제3호서식의(다)] 〈개정 2015.12.24.〉

선 상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팩시밀리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시·군·구)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에 사용할 팩시밀리 번호**		**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상투표 신고사유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
□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장의 성명 _____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_____ ㊞

_____시·군·구의 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선박의 명칭"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팩시밀리 번호"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시·군·구 위원회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 · 도위원회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에는 선박 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 · 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 1】

선상투표신고 안내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6년 4월 11일(화) ~ 4월 15일(토), 5일간**

○ 신고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서식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대상선박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승선 예정 선원**(서면신고)

- 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상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7년 4월 14일)까지 선상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신고)

- 신고서 전송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4월 15일)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가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군·구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선상투표신고서 작성예시

선 상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2017년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선상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이 신고서를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팩시밀리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123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			세 대 주 성 명	이 △ △
성 명	이 ○ ○	생년월일 (성 별)	77. 5. 9.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52-XXX-XXXX (010-XXXX-XXXX)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공 명 호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에 사용할 팩시밀리 번호	870-763-110-210	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	872-123-456-789

선상투표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합니다.

선상투표 신고사유	확 인 란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선장 김 ○ ○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인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포함]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인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선박소유자, 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 인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신고인 이 ○ ○ (서명 또는 인)

연 제 (시)·군·구의 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선박의 명칭"란에는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팩시밀리 번호"란에는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팩시밀리 번호를 적습니다. 또한, 시·군·구위원회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시·도위원회로 선상투표지를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번호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에는 선박 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6.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상투표신고인에게는 선상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7. 거짓으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8.13.〉

선상투표신고서 보완요청서

선장은 이 요청서를 받은 즉시 해당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 요청서를 받은 선원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보완된 선상투표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지 않으면 선상투표신고 인명부에 올리지 않습니다.

1. 선상투표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2. 보완이 필요한 사항(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상투표자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의 장 ㊞

_____귀하

4. 선상투표용지 등 수신

○ 수신기간 : 2016년 4월 23일(일) ~ 4월 30일(일)

○ 수신내역 및 방법

- 선상투표용지 : 선박의 팩시밀리로 수신
- 선상투표관리기록부 : 선박의 팩시밀리로 수신
-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정보자료 : 선박 또는 선장의 전자우편으로 수신

○ 유의사항(선원의 선상투표용지 등 수령 · 보관)

-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한 선장은 당사자인 선원에게 즉시 교부하고
- 선장으로부터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원은 안전한 곳에 선상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선장이 정한 투표일에 투표하러 갈 때 지참함

5.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송부

❍ 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이 지난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보낸 선상투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함

※ 신고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고서에 한해 명부에 등재

※ 선상투표신고기간은 대한민국의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하되, 마감일 마감시각 후 도착되는 신고서라도 수취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일단 접수부에 모두 기재한 후 비고란에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라고 명기함

명부작성시 유의사항

❖ 승선하고 있는 선박명칭

- 한글·영문 등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등재
- 선박명이 누락된 경우 해당 선박에 보완요청 실시

❖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전송 팩스번호

- 선상투표 대상선박 대부분이 INMARSAT(인말세트)사에서 제공하는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팩스를 사용하고 있음

〈 INMARSAT(인말세트) 위성통신 팩스번호 구성(예시) 〉

001 - 870 - 763133432

[국가코드 : 3자리] [선박팩스번호 : 9자리]

- INMARSAT(인말새트)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팩스번호중 국가코드 미기재 또는 선박팩스번호가 9자리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 후 기재

  ※ 국제전화번호 '001'이 누락된 채 신고서에 '8700763133432'로 기재된 경우 누락된 국제전화번호인 "001"을 부가하여 "001870763133432"로 등재

- 신고서에 기재된 위성통신 팩스번호와 팩스 수신시 신고서에 현출되는 발송선박의 팩스번호가 서로 다르거나 현출되지 않는 경우는 보완요청 대상이 아님에 유의

❖ 선박의 위성통신 전화번호

-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전송 팩스번호 확인·등재 방법과 같음

○ 시·군·구의 장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신고서를 그 명부 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와 함께 시·군·구위원회에 송부

선상투표 업무흐름도

단 계 별		업 무 진 행 절 차
1 단계	선상투표 신고안내	○ 시 기 : 선거일전 3개월까지 ○ 주 체 : 중앙위원회 ○ 방 법 : 선상부재자신고서와 안내문 등 제작 후 선박회사에 제공 ※ 선박회사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선장에게 송부
2 단계	선상투표신고	○ 시 기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 주 체 : 선상투표 대상선박 중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방 법 : 선상부재자신고서 작성 후 시·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
3 단계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작성	○ 시 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 ○ 주 체 : 시·군·구의 장 ○ 방 법 : 선상투표신고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을 시·군·구 위원회 송부
4 단계	선상투표용지 발송	○ 시 기 : 선거일 전 9일까지 ○ 주 체 : 시·군·구위원회 ○ 방 법 :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된 선원의 승선 선박의 팩시밀리로 전송
5 단계	선상투표 및 투표지 전송	○ 시 기 : 선상투표 기간인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주 체 : 선상투표자 ○ 방 법 :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지 시·도위원회 전송
6 단계	선상투표지 수신 및 시·군·구 위원회 우송	○ 시 기 : 선상투표 기간 중 ○ 주 체 : 시·도위원회 ○ 방 법 : 쉴드팩스(Shield Fax) 이용하여 선상투표지 수신 후 시·군·구위원회 우송
7 단계	접수 및 개표 (시·군·구 위원회)	○ 시 기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 주 체 : 시·군·구위원회 ○ 방 법 :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하다가 개표소에서 일반부재자 투표지와 함께 개표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 역할 병행.

선 상 투 표 절 차 도

❶ **선상투표신고서·안내문 제공**
- ○ 기한 : 2017. 3. 10.까지
- ○ 주체 : 중앙위원회

❷ **선상투표 신고**
- ○ 기간 : 2017. 4. 11. ~ 4. 15.
- ○ 주체 : 신고 대상자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

❸ **선상투표신고서 접수 및 명부작성**
- ○ 기간 : 2017. 4. 11. ~ 4. 15.
- ○ 주체 : 시·군·구의 장

❹ **선박에 투표용지 작성·발송**
- ○ 기한 : 2016. 4. 30.
- ○ 주체 : 시·군·구선관위

❺ **선상투표 후 투표지 팩스 전송**
- ○ 기간 : 2017. 5. 1. ~ 5. 4.
- ○ 주체 : 승선선원

❻ **투표지 접수 및 시·군·구선관위에 우송**
- ○ 기간 : 2017. 5. 1. ~ 5. 4.
- ○ 주체 : 시·도선관위

❼ **투표지 우편접수 및 투표함 투입**
- ○ 기 한 : 2017. 5. 9. 18:00
- ○ 주 체 : 관할 시·군·구선관위

❽ **선상투표 개표**
- ○ 시기 : 2016. 5. 9. 18:00 후
- ○ 주체 : 관할 시·군·구선관위

시·도선관위
- ○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전송
- ○ 기한 : 2017. 5. 8.까지
- ○ 주체 : 선장

6. 투표준비

○ 선상투표기간 : **2017년 5월 1일(월) ~ 5월 4일(목)**

○ 선상투표 일시·장소 결정 및 안내

≪일시·장소 결정 및 사전 안내≫

- 선장은 **선상투표기간(2017. 5. 1. ~ 5. 4.)중** 선상투표자 수·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일시·장소를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안내

  ※ 기상악화,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정한 일시에 투표를 진행할 수 없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새로이 투표일시를 정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음.

≪투표과정 입회인 선정 및 사전 안내≫

- 선장은 투표 과정에 입회할 입회인을 승선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정하고 선원들에게 안내
- 선장은 입회인을 2인 이상 선정 시 투표용지 서명 란에 서명할 입회인을 사전에 지정

○ 팩시밀리 점검 등

≪투표지전송용 팩시밀리 단축번호 저장 및 등록≫

- 선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투표지의 정확한 전송을 위하여 반드시 **팩시밀리 단축번호(700#)**로 저장 및 등록하고, 선원들에게 안내

≪선박의 팩시밀리 설정확인≫

- 전송된 투표지에 팩시밀리번호가 프린트되지 않거나,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처리 되므로, **"선박의 팩시밀리에 설정된 팩시밀리번호가 현재 사용 중인 팩시밀리번호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선상투표소 설비·설치

- 선장·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 필기구
- **기표소** : 선상투표지 전송 팩시밀리, 필기구
  - 선상투표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선상투표자 1인이 독립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공간(선교의 해도실 또는 조리실)등을 활용하여 기표소를 설비·설치

• 아래 그림과 같이 박스 등을 이용(윗면과 앞면을 절단)하여 제작하거나 커튼 또는 벽면을 이용하는 등 비밀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 **선상투표지 봉함석** : 투표지봉함용 봉투(일반우편 소봉투), 풀, 필기구

≪입회인·선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 팩스 사용법(용지투입방향, 전송방법, 투표지 전송할 선관위 팩시밀리 단축번호 등)
- 투표진행절차(선장·입회인 서명, 투표용지 뒷면 기재사항, 선원 본인 서명, 투표용지 기표방법, 투표지 봉함·제출 등)
- 입회인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 선상투표물품 준비

- 필기류 및 풀 : 적정량
- 소봉투(10×22cm정도) : 적정량(선상투표지 등 봉함용, 선상투표자수정도)
- 대봉투(24×33cm정도) 또는 박스 : 적정량(투표관계서류 등 봉함용)

7. 투표 개시 및 진행

○ 투표개시선언

- 입회인의 입회하에 사전에 선원에게 통지한 투표장소 및 투표시각에 맞춰 투표개시를 선언함.

투표개시 선언 예문

지금부터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OOO호"의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원들은 투표소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투표 진행절차

① 투표하러 온 선원의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표지부분(가)에 **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

※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1명일 경우, '입회인 서명이 없는 사유'란에 선장이 서명

※ 입회인이 투표하는 경우 투표를 마친 선원 중 1명을 입회하도록 하여 투표진행

② 투표용지 표지부분 뒷면에 '선박명·선박위성전화번호·선원명' 기재

③ 투표용지 선거인확인란 서명 안내 및 투표지 봉함용 봉투 교부

④ 선상투표자는 선거인확인란에 서명 후 기표소로 이동

⑤ 투표용지 기표 및 투표지를 팩시밀리(700#)로 전송

※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588-4807#으로 전송

⑥ 전송한 투표지를 봉함용 봉투에 투입하고, 봉투 겉면에 **성명·생년월일 기재** 후 선장에게 제출

8. 투표 마감 및 기타

○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전송

- 전송일시 : **투표종료 후 즉시**[선거일전일, 5.8.(월)까지]
- 전송내역 : 「별지 제50호서식의(다)] 선상투표관리기록부
- 전송방법 : **선관위 팩시밀리 단축번호(700#)**로 전송

※ 뒷면에 "선상투표관리기록부"라 기재하고, "선박명·선박위선전화번호" 기재

○ 투표지 봉함 봉투 등 별도 보관

- 봉투 앞면에 당해 선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유무를 확인 후 이를 대봉투나 박스 등에 담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보관

※ 선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는 재전송사유발생 시 해당 용지를 전송하기 위함임.

○ 투표종료 및 투표종료 상황 안내

- 선장은 사전 안내한 투표시간에 선상투표자가 모두 투표를 마치면 선원들에게 투표종료 선언

※ 투표마감시각전이라도 해당 선박 승선 선원 전원이 투표를 마친 경우에는 투표를 종료할 수 있음.

○ 기타(사전기표·공개된 투표지 처리방법)

≪**사전에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 처리**≫

- 사전에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는 무효처리되므로 해당 선원의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고 **'사전기표된 투표지'** 라고 기재한 뒤 봉함하고, 앞면에 선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 보관

≪「**투표지 전송 전**」 **공개된 선상투표지의 처리**≫

- 투표지 전송 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투표지 기표부분을 공개한 경우 당해 선원의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고 **'공개된 투표지'** 라고 기재 후 봉함하고, 앞면에 선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 보관

≪「**투표지 전송 후**」 **공개된 선상투표지의 처리**≫

- 투표지 전송 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투표지 기표부분을 공개한 경우 위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한 후 투표지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700#)로 그 사실을 전송함.

전송 후 공개된 투표지

아래 선거인의 선상투표지는 팩시밀리 전송 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의2제8항에 규정된 "투표한 후 공개된 투표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선상투표자 성명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재번호 :

선장 (서명)

9.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안내

○ 신고대상 : <u>2017년 4월 30일(일)이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u>

○ 신고서식 : [별지 제50호서식의(마)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

○ 신고장소 : <u>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u>

○ 유의사항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2017. 5. 1.)에 국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함.
- 선상투표자가 귀국투표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별지 제50호서식의(다)】

2017년 5월 9일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관리기록부

1. 선박의 명칭 :

2. 선상투표소 설치·운영상황

가. 선상투표소 설치장소			항해·조업구역	
나. 선상투표소 투표일시	개시일시	2016년 4월 일 시		
	마감일시	2016년 4월 일 시		
다. 선상투표지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				

3.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교부상황

가. 수신매수 : 통

나. 교부매수 : 통

4. 선상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입회인	직위	성명	입회일시	비고
투표 상황	계 (①+②+③)	정상적으로 송신한 선상투표지 수 (①)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 수 (②)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한 선상투표지 수 (③)
선상투표지 재전송 및 선상투표 진행 중의 특기사항				

첨부 : 1. 보관 중인 선상투표지 봉투 (통) 및 선상투표용지 봉투 (통)
2.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 내역 팩시밀리 기록지

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2017년 월 일

작성자 선장 ㊞

주 1. 이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입회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한 입회인을 비고란에 "서명자"라고 기재한다.

3. 끝부분에는 선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선상투표 관리상황 기록에 필요한 때에는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5. 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 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또는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인하여 보관 중인 선상투표지 봉투 및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 고】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예시"

2017년 5월 9일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 상 투 표 관 리 기 록 부

1. 선박의 명칭 : **공 명 호**

2. 선상투표소 설치·운영상황

가. 선상투표소 설치장소	해 도 실		항해·조업구역	남태평양
나. 선상투표소 투표일시	개 시 일 시	2017년 5월 1일 11시		
	마 감 일 시	2017년 5월 4일 14시		
다. 선상투표지 전송용 팩시밀리 번호	870-763-110-210			

3.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교부상황

가. 수신매수 : 20통

나. 교부매수 : 20통

4. 선상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입회인	직위	성명	입회일시	비고
	선 원	김 구	2017.5.2. 11:00	
투표상황	계 (①+②+③)	정상적으로 송신한 선상투표지 수 (①)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지 수 (②)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한 선상투표지 수 (③)
	20	19	1	0
선상투표지 재전송 및 선상투표 진행 중의 특기사항				

첨부 : 1. 보관 중인 선상투표지 봉투 20 (통) 및 선상투표용지 봉투 (통)

2. 선상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투표지 전송 내역 팩시밀리 기록지 1 부

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2017년 5월 4일

작성자 선장 김 ○ ○ (인)

주 : 1. 이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입회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한 입회인을 비고란에 "서명자"라고 기재한다.
3. 끝부분에는 선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선상투표 관리상황 기록에 필요한 때에는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5. 이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또는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인하여 보관 중인 선상투표지 봉투 및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마)】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시·군·구)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		하선일자		국내 도착일자		전화번호	

본인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 승선경력 확인 서류 부
선상투표용지 매

2017년 월 일

신고자 ㊞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2.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란에는 선상투표신고 시 승선할 예정이었거나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하선일자"란에는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란에 적은 선박에서 하선한 날짜를 적습니다.
4. "국내 도착일자"란에는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란에 적은 선박에서 하선 후 국내에 도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5. "승선경력 확인 서류"는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고자의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말하며, 신고자가 "승선하였던 선박의 명칭"란에 적은 선박에 승선한 날짜와 하선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승선하였던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귀국투표신고 시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7.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8.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국내에 도착하였거나 허위로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 구제

1. 명부 열람(법 §40, 규칙 §13)

○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6.(일) ~ 4.18.(화)

○ 열람시간 :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다만, 인터넷 열람은 상시 가능

○ 열람장소 : 시·군·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장소·기간·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열람방법 공고 : 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3.(목)

- 공고를 요하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으면 선거의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음
- 공고 후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음

○ 인터넷 열람과 관련 시·군·구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 시·군·구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
- 시·군·구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 방법을 안내

○ 선거인명부 열람 계도

- 열람의 일시·장소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유권자가 열람하도록 계도

○ 명부 열람시 관계공무원 등 참여

- 시·군·구의 장은 명부 열람 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선거인 명부 오류 등 방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7.28〉

공고 제 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의 장 인

1. 선거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공휴일에 불구함)

나.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없음)

다. 열람장소

장소명	소재지	비 고

라.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마. 인터넷 열람방법

2.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가. 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확인시간 제한없음)

나. 확인대상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다. 인터넷 확인 홈페이지 주소

라. 인터넷 확인방법

주 : "인터넷 열람(확인)방법"은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확인)시 접속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이의신청과 결정(법 §41, 규칙 §13)

○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3일간)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6.(일) ~ 4.18.(화)**

○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당해 시·군·구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심사결정

- 심사·결정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심사·결정권자 : 시·군·구의 장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이의신청의 친절·신속한 처리

- 이의신청의 접수 및 공정한 처리
  - 구술·서면 신청에 불구하고 접수 즉시 확인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석에서 심사·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심사·결정기간 1일)
  - 심사·결정의 잘못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 요구사례가 없도록 신중 처리
  - 열람 장소에는 용지와 필기구 비치
- 인터넷 열람시의 이의신청 처리
  - 인터넷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를 우선 회신(인터넷에 리플 및 전화 등)

3. 불복신청과 결정(법 §42)

○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신청권자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심사·결정
- 기　　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관계 시·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시·군·구의 장에게 통지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43, 규칙 §15)

○ 누락자의 명부등재 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9.(수) ~ 4.27.(목)**

○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 누락된 선거권자 또는 시·군·구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신청사유 : 시·군·구의 장의 착오 등으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 심사·결정
- 기　　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관계 시·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시·군·구의 장에게 통지

유 의 사 항

❖ 선거인명부 작성 후 발생된 누락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장이 임의로 선거인명부에 등재시킬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신청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15조 관련) 〈개정 2015.8.13.〉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			투표구명	등재신청사유	비고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덧붙임 소명자료 ○부

년 월 일

신청인 ┌ ○○시·군·구의 장 인 ┐
└ 선거권자 ○ ○ ○ ㊞ ┘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는다.
2. 주소·연령에 관한 소명자료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금치산 또는 수형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
3.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14)

○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 명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시 시·군·구의 장이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 관할 시·군·구선관위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관계 시·군·구의 장에게 통지된 때
- 명부 누락자 구제신청 시 관할 시·군·구선관위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관계 시·군·구의 장에게 통지된 때
-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 선거인명부 수정방법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 수정할 사항이 있더라도 명부작성 만료일까지는 여하한 형태의 수정(삭선처리, 글자의 수정, 『비고』란에 사유기재 및 작성권자의 사인날인 등)처리는 없어야 함
  - 다만,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도 함께 등재

☞ 선거인명부의 수정처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명부의 열람 개시일부터 가능함

선거인명부 확정 전

-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또는 법 제43조(명부 누락자의 구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시·군·구의 장의 사인 날인

-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군·구의 장의 사인 날인
-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발생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명부 수정상황통보서」를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통보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인명부확정과 별개로 수정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시·군·구선관위로 통보

선거인명부 확정 후

-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오기된 자를 발견한 때에는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경우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시·군·구 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비고』란에 사유 기재

  •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
  ① 선거인명부 확정 후부터 사전투표기간 만료일(5.5.)까지 : 그때마다 시·군·구 선관위에 통보하고, 시·군·구 선관위는 통합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② 사전투표기간 만료익일(5.6.)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시·군·구 및 읍·면·동 선관위에 통보하고, 읍·면·동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한 사람의 정보가 반영된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 시·군·구의 장 또는 시·군·구선관위로부터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2.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44, 규칙 §16)

○ 명부확정 시기

- 선거인명부 : 선거일 전 12일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27.(목)**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 날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28.(금)**

○ 명부의 효력 : 당해 선거에 한함

☞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의함(법 §204①)

○ 명부 확정상황 통보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나)·(다)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도 함께 송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시·군의 장에게서 제출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므로 지체없이 송부

- 시·군·구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명부 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4.28.~5.9.)

[별지 제7호서식의(나)] (규칙 제14조제4항 관련) 〈개정 2015.8.13.〉

확정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투표구명	등재번호	성명	오기사항등	비고

주 : 1. "오기사항등"란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예 : 성명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음, ○년 ○월 ○일 사망함 등).
2.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주민등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9호서식의(나)]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구명	① 인구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⑥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⑦ 선상투표 신고인명부등재자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⑧ 세대수	비고
				감	증	감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⑦란 제외)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3.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주민등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2호〉 (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선거인명부확정내역

투표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 거주불명자 선거인수						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③ 외국인 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 투표소 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란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다)] 〈개정 2015.12.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구수 (년 월 일 현재)	선거인수 (선거인명부작성 기간만료일 현재)			확정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인수			인구수에 대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선거인수·확정된 (거소투표)·(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 9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1. 명부의 재작성(법 §45, 규칙 §17)

○ 재작성 사유

-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
- 다만,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송부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작성권자 : 시·군·구의 장

○ 재작성 방법

- 일반적인 경우
  - 법 §37(명부작성) 내지 §45(명부의 재작성)의 규정에 따라 재작성 하되, 선거인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전산화일에 의하여 출력 작성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할 시·군·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작성기간·열람기간·열람장소·이의신청 및 심사결정·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규칙 §17①)
  - 시·군·구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시·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규칙 §17②)

2.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 규칙 §18)

○ 교부권자 : 시·군·구의 장

○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 비례대표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은 제외

○ 신청방법 : 시·군·구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함

○ 신청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7.(월)**

○ 교부수량 : 후보자별 1통(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 작성비용 : 교부신청자가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며, 시·군·구의 장이 선거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시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5.(토)**

○ 서　　식 : 선거인명부(거소투표 신고인명부 포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56③2호다목)

- 시·군·구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의(가)] (표지) 〈개정 2014.7.29〉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1. 이 사본은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른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이중등재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든지 이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군·구
○○읍·면·동 제○투표구분

○○시·군·구의 장 ㊞

주 : 전산자료 복사본에는 "㊞"을 생략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나)] (끝부분) 〈개정 2014.1.17〉

이 사본은 ○○읍·면·동 제○투표구의 작성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와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의 장 ㊞

주 : 1.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교부시에 사본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산자료 복사본에는 "㊞"을 생략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다)] 〈개정 2014.1.17〉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투표구명	명부의 종류	사본의 종류	비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사본작성비용 원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 ㊞
선거사무장 ○○○ ㊞
선거연락소장 ○○○ ㊞

○○시·군·구의 장 귀하

주 : 1. 신청인은 신청대상투표구명과 명부의 종류(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사본의 종류(일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라)] 〈개정 2014.1.17〉

공시 제 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의 장 인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3. 세대주명단 작성·교부(법 §60조의3, §11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법 §60조의3)

- 교부목적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발송
- 교부신청범위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 신청주체 :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법 §60조의2)
-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군의원 및 장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상기 사항 모두 기준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선거기간(법 §33)
-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선거 : 14일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7.(목) ~ 5.9.(화)

- 교부신청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20.(목)까지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법 §49①)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일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일전 20일

❍ 의정활동보고 관련(법 §111)

- 교부목적 :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보고서 발송

☞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발송할 수 없음(인터넷 게재만 가능)

- 신청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원
- 교부신청 :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교　　부 : 신청 시 지체없이

❍ 세대주명단 작성·교부(규칙 §26조의2, §49 등)

-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의 4서식의 (가)

> ☞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

- 교부의무자 : 시·군·구의 장
- 작성·교부
  - 신청한 발송대상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주소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교부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산자료복사본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 작성비용 공시
  - 시·군·구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해 공시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규칙 제26조의2제11항·제49조제2항 관련) 〈개정 2009.2.19〉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선거 ○○선거구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년 월 일

국 회 의 원 ○○○ 인
신청인 ○○의회의원 ○○○ 인
예 비 후 보 자 ○○○ 인

○○시·군·구의 장 귀하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의 2] (규칙 제26조의2 제13항, 제49조3항 관련) 〈신설 2005.8.4〉

공시 제○○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의 장 인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제10장 투 표

1. 선거방법(법 §146)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함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시·군·구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함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투표소의 설치(법 §147, §148)

○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29.(토)까지
>
> ☞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투·개표 장소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261④)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

○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30.(일)까지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146조의2, §147⑨)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법 §146의2, 규칙 §67)

- 대 상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투표구마다 1인씩 위촉
- 역 할 : 해당 투표구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감독
- 해촉 사유
  -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군·구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표사무원(법 §147⑨)

- 위촉/공고 : 읍·면·동위원회가 위촉하고 선거일전 3일까지 성명을 공고

> ☞ 투표사무원 공고 : '17.5.6.(토)까지

- 대 상
  -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 ☞ 다만,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외의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함

  - 각급 학교의 교직원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직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해태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261⑧2호바목)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153)

○ 주　　체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 대상(방법) :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우편발송)

○ 기재내용 : 세대별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선거공보 동봉)

○ 기　　한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17.(월)**

○ 우편요금 :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제65조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시각장애선거인)는 점자형 투표안내문 동봉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154)

○ 주　　체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 발송대상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 시　　기 : 선거일전 10일까지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4.29.(토)**

○ 발송·참관

-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발송하되, 정당추천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봄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함
- 책자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
-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
- 발송·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
- 우체국장은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함

6. 투표시간(법 §155)

○ 투표시간 :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함

○ 거소투표자의 경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가 도착되어야 함

7. 투표의 제한(법 §156)

○ 투표할 수 없는 자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 다만,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거소투표자의 투표

-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함
- 다만, 허위신고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157, 규칙 §82②)

○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 ☞ 신분증명서
>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함

○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

○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제외)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외에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없음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158, §158의2)

사전투표

○ 대　　상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나(거소투표자 제외)

○ 투표기간 : '17.5.4.~5.5.(2일간)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 제 시 물 : 신분증명서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함

○ 사전투표의 우편발송

- 발송자 : 사전투표관리관 등
- 시　기 :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후
- 방　법 :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다음에 따라 처리

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첫째날은 사전투표소에 보관하고 해당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 종료후 직접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

거소투표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용지 도착 즉시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배부하고 거소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투표장소 : 자택, 군부대, 병원·요양소, 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 거소

※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 후 투표 가능

○ 투표절차

① 관할 시·군·구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

②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

※ 회송용 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안내

※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10. 투표참관(법 §161, §213)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 고 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고인수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 신고시기·방법 :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투표참관인의 지정 : 투표소마다 8인

○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
-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 제18조제1항2호 후단 위헌판결로 집행유예자는 '14년 동시지방선거부터, 1년 이하 수형자의 경우 법률개정으로 '16.1.1부터 선거부터 가능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투표참관

-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11. 사전투표참관(법 §162, §213)

○ 사전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 고 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고인수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 신고시기·방법 : 선거일 전 7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기타 투표참관에 관한 사항은 법 §161 준용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163)

○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음

※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 불가

○ 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에 대해서 법 §163 준용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164 ~ §166)

○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구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흉기·폭발물을 지닐 수 없음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167)

○ 질문 및 진술요구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음

○ 텔레비전방송국 등의 예외적인 질문허용

- 대상 :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
- 목적 : 선거의 결과 예상
- 방법 :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음(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결과 공표 불가)

○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함
- 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 서식의 (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

[별지 제50호서식의(나)] 〈개정 2015.12.24.〉

공개된 투표지의 표시

이 봉투에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제3항에 규정된 공개된 투표지가 들어 있음(선거명 : ○○선거, ○○선거)

○○ 읍·면·동 제○투표소투표관리관	○ ○ ○ ㊞
○○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 ○ ○ ㊞
○○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 ○ ○ ㊞
○○ 재외투표소관리자	○ ○ ○ ㊞

주 : 1. 이 서식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기표후 공개한 투표지를 넣은 봉투의 앞면에 첩부하거나 봉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는 자신의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할 수 있다.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봉인(법 §168, §169)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함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위의 규정과 같이 각각 봉인

○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170, §171)

○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

○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

제 11 장 개 표

1. 개표관리(법 §172)

○ 주 체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2. 개표소(법 §173)

○ 공고기한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5.4.(목)까지**

○ 설치기한 : 선거일 전일까지

3. 개표사무원(법 §174)

○ 위촉·공고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17.5.6.(토)까지**

○ 대 상

-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직원,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4. 투표함의 개함(법 §177)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

○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183)

○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Ⅱ 재외선거 일반

제 1 장 재외선거 일반

1. 재외선거제도 의의

가. 재외선거 개념

일반적으로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를 말함.

나. 재외선거제도 의의

- ❍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 공직선거법에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07.6.28)에 따라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12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함.
- ❍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본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및 애국심 고취의 계기가 되었음.

다. 재외선거 도입 연혁

- 1966. 12.『대통령선거법』에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 제6대 대통령선거(1967.5.), 제7대 국회의원선거(1967.6.), 제7대 대통령선거(1971.4.), 제8대 국회의원선거(1971.5.)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선거권 부여(영주권자 제외)
- 1972. 12.『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해 국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 1997. 일본 및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소원 제기
  - ⇨ 1999. 1. 28.『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37조 제1항 합헌 결정
  - ⇨ 1999. 3. 25.『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38조 제1항 합헌 결정
- 2003, 2005, 2006. 중앙위원회『공직선거법』개정의견 국회 제출
- 2004.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소원 제기
  - ⇨ 2007. 6. 28.『공직선거법』헌법불합치 결정

❖ 제37조(명부작성)제1항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움.

※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원칙 위반

❖ 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함.

※ 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원칙 위반

- 2008. 10. 15. 중앙위원회『공직선거법』개정의견 국회 제출

- 2009. 2. 12.『공직선거법』 개정
  - ⇨ 재외선거제도 도입(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 2011. 4. 8. 중앙선관위『공직선거법』 개정의견(재외선거제도 개선) 국회 제출
- 2011. 7. 28·9. 30·11. 7, 2012. 1. 17·2. 29 『공직선거법』 개정
  - ⇨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선거 절차사무 등의 합리적 개선
  - ⇨ 국외선거운동 방법 개선, 국외선거범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규정 신설
- 2012. 7. 2. 중앙선관위『공직선거법』 개정의견(재외선거제도 개선) 국회 제출
- 2012. 10. 2.『공직선거법』 개정
  - ⇨ 전자우편 이용 신고·신청, 순회접수 및 가족의 등록신청서 대리제출 도입
- 2015. 8. 13.『공직선거법』 개정
  - ⇨ 인터넷 신고·신청, 재외선거인의 우편접수 허용, 귀국투표제도 신설
- 2015. 12. 24. 『공직선거법』 개정
  - ⇨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삭제
  - ⇨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 ⇨ 공관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 헌법재판소 결정문 비교표 ≫

구 분	1999년 결정문(합헌)	2007년 결정문(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관련 논거	•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재외국민등록제도, 국내거소신고제도 및 여권 소지여부를 활용하여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권 행사를 예방할 수 있음
	• 근소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재외국민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보통선거의 원칙상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움	• 선거의 공정성 확보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으므로 이를 선거권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치 아니함
	• 선거기술상 불가능함	• 선거기술상의 어려움은 선거운동기간 연장, 투표용지 등의 현지인쇄 등 대안이 있음
	• 우편투표제도가 발달한 일부국가에 대하여만 가능한 재외선거제도를 만들 경우 평등문제가 야기됨	• 우편제도 발달정도에 따라 가능지역에서 먼저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애초부터 차별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실상의 결과일 뿐이므로 평등원칙 침해가 아님
	• 선거권은 납세, 병역, 기타의 의무와 결부되나, 재외국민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음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행사는 납세나 국방의 의무이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님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관련 논거	• 선거기술상 이유와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 선거기술상 이유와 공정성 확보 관련 문제는 법 제37조 제1항 관련 검토와 동일함
	• 선거기간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 증가	• 비용부담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님
	• 해외거주자들은 투표권행사의 장애를 스스로 초래하였으므로 국내거주자와 차이가 있음	• 직업·학문 등의 사유로 인한 자진출국자의 선거권 행사 제한은 해외거주자의 국외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임
	• 법 제38조 제1항은 선거권 관련 문제가 아닌 투표편의 제공의 문제임	• 법 제38조 제1항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임

2. 재외선거제도 개요

가.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1) 대통령선거

가) 대상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나) 선거권자 :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

2) 국회의원선거

가) 대상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비례대표, 지역구)

나) 선거권자

- ❍ 비례대표 :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와 같음)
- ❍ 지 역 구 : 주민등록(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제외)이 되어 있는 국민

■ 국외부재자 : ┌ 주민등록자 ⇒ 대선, 국선(비례, 지역)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대선, 국선(비례)
└ 국내거소신고자 ⇒ 대선, 국선(비례)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중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권자 ⇒ 대선, 국선(비례)

나. 국외에서의 재외선거관리기관

1) 재외투표관리관

가) 대　　상 : 공관장이 해당 공관의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상시)

☞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임　　무

○ 재외위원회 운영 지원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 · 지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재외투표소 설비 및 재외투표 국내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2) 재외위원회

가) 설치단위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

재외위원회 미설치 공관

❑ 영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관
❑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겸임국)
❑ 중앙위원회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공관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공관이 아닌 주대만대표부, 주팔레스타인대표사무실

나) 설치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다) 위　　원

○ 자격요건 :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 재외투표관리관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구　　성

- 중앙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함

☞ 단, 재외위원회를 구성한 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봄

라) 간사·서기 등

재외위원회위원장이 공관장과 협의하여 공관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음

마) 임　　무

- ❍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 ❍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결정·공고
- ❍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 ❍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재외동포 분류표 ≫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2">일반적 분류</th><th>등록사항</th><th>국적</th></tr>
<tr><td rowspan="4">재외
동포</td><td rowspan="2">외국
국적
동포</td><td>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td><td colspan="2" rowspan="2">시민권자</td><td rowspan="2">가족관계등록 ×
주민등록 ×</td><td rowspan="2">외국인</td></tr>
<tr><td>부모의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td></tr>
<tr><td rowspan="2">재외
국민</td><td>대한민국 국민으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 취득자</td><td colspan="2">영주권자</td><td>가족관계등록 ○
주민등록 △</td><td rowspan="2">국민</td></tr>
<tr><td>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 해서 90일 이상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td><td rowspan="2">체
류
자</td><td>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중인 자</td><td rowspan="2">가족관계등록 ○
주민등록 ○</td></tr>
<tr><td colspan="2">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td></tr>
</table>

≪ 재외국민 현황≫

지역별 \ 자격별		재외국민 수				예상선거인수 (A×80%)
		계 (A)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총계		2,472,746	1,080,559	1,115,353	276,834	1,978,198
동북아시아	소계	869,800	430,185	365,721	73,894	695,840
	일 본	500,451	424,613	60,064	15,774	400,361
	중 북	369,349	5,572	305,657	58,120	295,479
남아시아태평양		451,376	83,730	330,014	37,632	361,101
북미	소계	927,020	483,120	318,139	125,761	741,616
	미 국	824,114	426,838	297,714	99,562	659,291
	캐나다	102,906	56,282	20,425	26,199	82,325
중 남 미		67,347	52,024	14,348	975	53,878
유 럽		120,316	28,032	55,122	37,162	96,253
아프리카		11,460	3,344	7,223	893	9,168
중 동		25,427	124	24,786	517	20,342

※ 출 처 : "2015 재외동포현황"(외교부, 2015.9월 刊, 2014.12.31. 기준)

용어의 정의 등

① "**공관**"이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함)을 말함(법 제218조①, 규칙 제136조의2①).

② "**재외투표관리관**"이란 위 "①"에 의한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함.(법 제218조의2).

※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재외선거인 등**"이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을 말함(법 제218조의10④).

④ "**재외투표**"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말함(법 제218조의16, 제218조의18).

⑤ "**귀국투표**"란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말함(법 제218조의16③).

⑥ "**여권**"이란 대한민국 정부가「여권법」에 따라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공문서를 말함.

⑦ "**외교행낭**(파우치, pouch)"이란 본국 정부와 공관 사이에 문서 등을 주고받고자 암호장치와 압봉을 하여 사용하는 가방 등을 말함.

※ 선거장비·용품, 재외투표 등의 수·회송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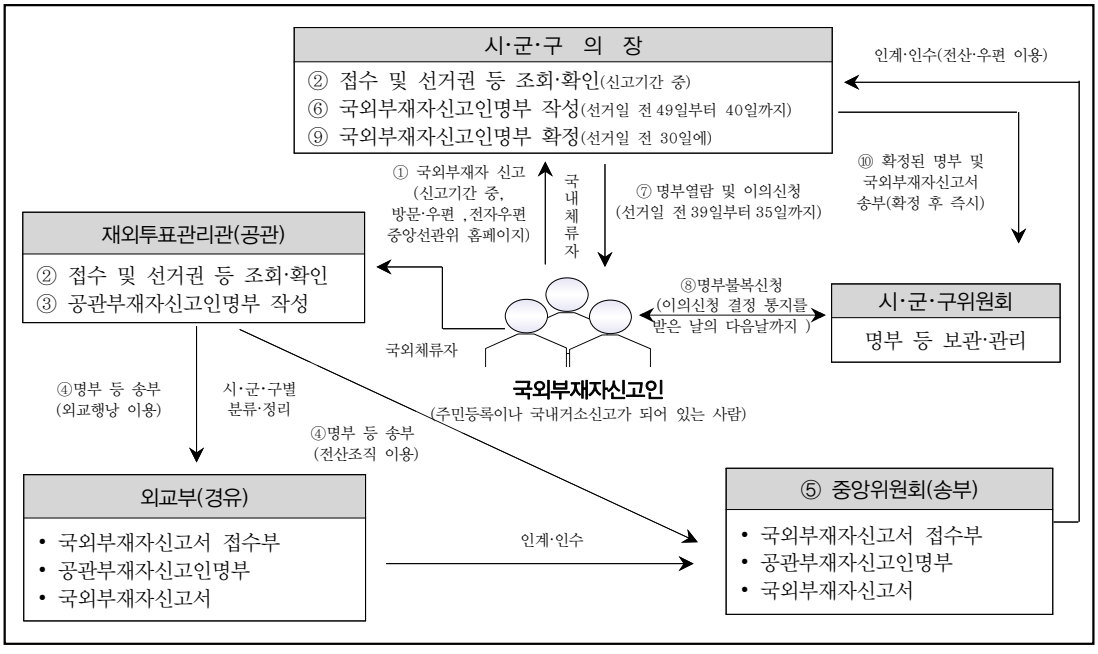
⑧ "**재외선거 개표**"란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재외투표를 시·군·구선관위에서 개표하는 것을 말함.

⑨ "**공관개표**"란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함)까지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외위원회가 공관에서 개표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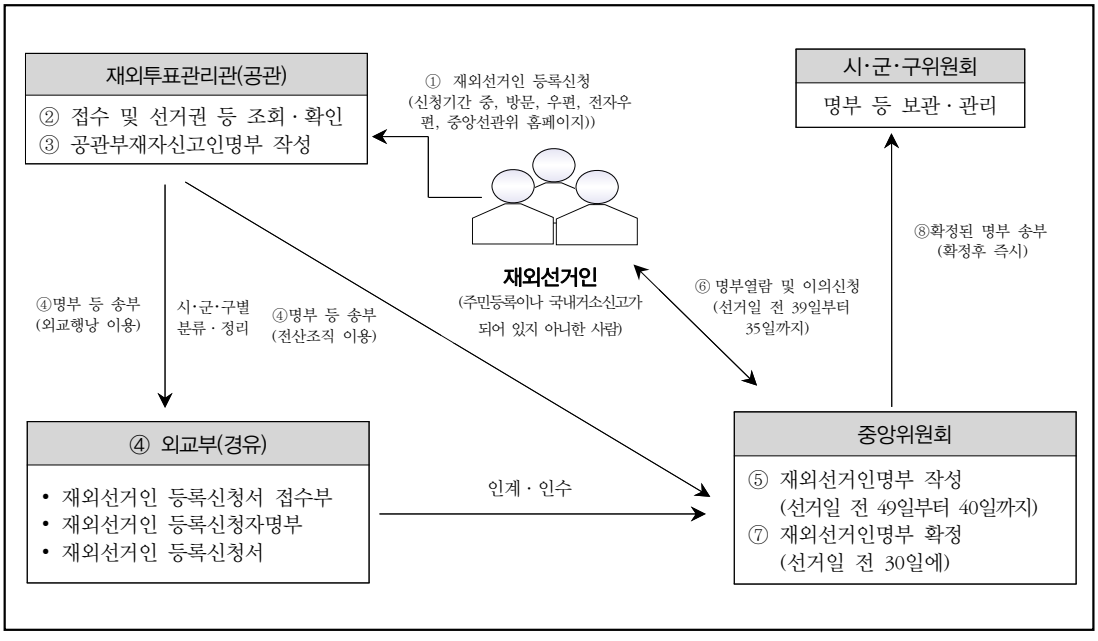
⑩ "중앙위원회"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함(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

다. 재외선거사무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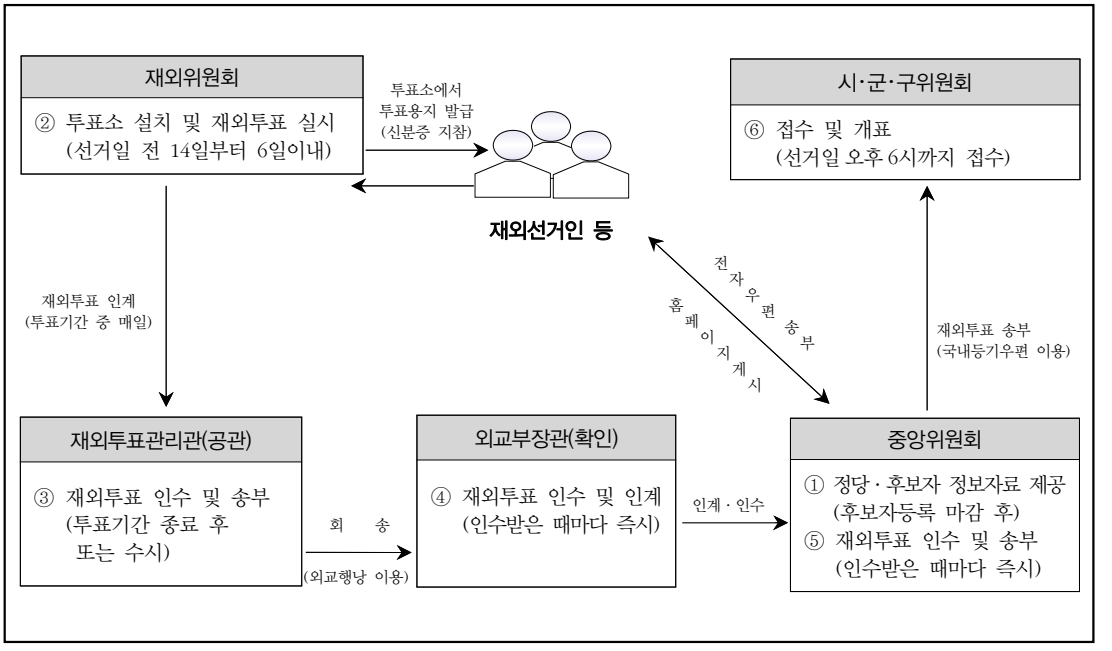
≪ 국외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명부작성 ≫



≪ 재외투표 및 개표 ≫



≪ 국내선거와 재외선거 비교표 ≫

구 분	국내선거	재외선거
명부작성권자	시·군·구의 장	재외선거인명부 :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시·군·구의 장
명부작성방법	직권주의	신청주의
투표방법	기표식(記票式)	기표식(記票式)
투표장소	투표소·사전투표소·거소	공관투표소(협소시 대체투표소)

3.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1) 재외선거에 관한 기간 계산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공관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현지 날짜에 따름 (법 제218조의34②, 규칙 제136조의31).

☞ 재외투표기간(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이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경우 공관별 현지시간으로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

2) 신고 · 신청 등의 시간

가) 선거기간 전에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 · 신청, 재외투표소 설치 · 운영과 관련한 신고 · 신청 등은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해야 함. 다만, 그 신고 · 신청 등의 기간 개시일이나 마감일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관의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해당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를 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국외부재자신고, 재외투표참관인 선정신고(국회의원선거) 등

나) 선거기간 중에는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불구하고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하여야 함(법 제274조①).

☞ 재외투표참관인 선정 및 교체신고 등

다) 선거기간 중인지 여부를 떠나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

☞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음 (법 제218조의17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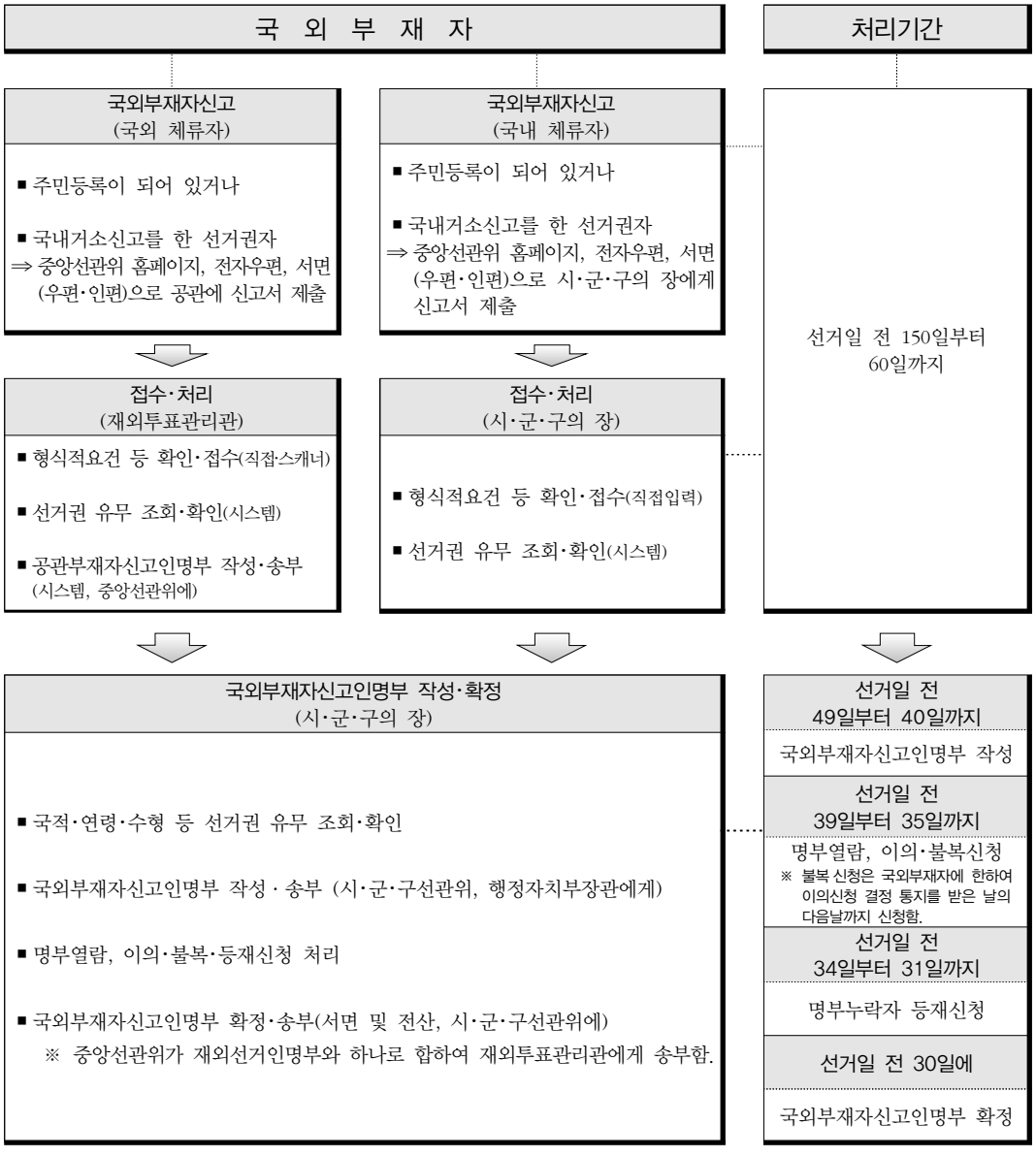
≪ 재외선거 관계기관별 역할 ≫

관계기관	협 조 사 항	비고
국무총리실	• 행정 각 부처의 재외선거 관련업무 총괄 조정	
대 법 원	• 선거권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정보, 금치산 정보 등 제공	
외교부 (공관포함)	• 재외선거 관련 구상서 통보 또는 MOU 체결(필요시) • 재외선거 제도 홍보 및 공명선거추진활동 전개 •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 및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송부 •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재외투표 회송 지원 • 선거권 확인을 위한 여권정보 제공 등	
법 무 부	• 국외선거범에 대한 조치 등 공정성 확보 • 선거권 확인을 위한 국내거소정보, 복수국적자정보 제공 등	
국 방 부	• 파병군인 등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투표지원 등	
대 검 찰 청	• 선거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없는 자의 수형정보	
행정자치부 (시·군·구 포함)	• 재외선거 절차사무 처리교육 실시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 작성·송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열람 조치 • 명부 이중등재 검색을 위한 기술적 조치 • 선거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금치산자 정보, 수형정보 제공 등	
경 찰 청	• 국외에서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등	
병 무 청	• 복수국적자의 병역정보 등 제공	
우정사업본부	• 재외투표의 시·군·구위원회 회송 등	

제 2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관리

제 1 절 개 요

1. 업무흐름도



명부관련 용어의 정의 등

① "**국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국적법상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국민에 해당됨.

복수국적자
(국적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의2)

1 개 념

"복수국적자"라 함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함.(국적법 제11조의2)

2 유 형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 국적선택기간 중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2조)

- 만 20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만 22세 미만인 자
- 만 20세가 된 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취득한 때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한 자는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에도 복수국적 인정(국적선택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 및 출생 당시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제외)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 병역해소(복무만료, 병역·소집면제, 제2국민역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한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4조의2)

- 위 국적선택기간이 경과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국적법 제9조, 제10조)**≫

❍ 그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국적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한 자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특별귀화한 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등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란 사실상의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대법판례).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란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④ "**파병부대**"란 외국에 파병된 대한민국 국군부대를 말함.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등이 있음.

⑤ "**비자**"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증으로서, 개인이 외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외국의 대사·공사·영사로부터 여권에 그 나라의 출·입국 허락서명을 받은 증서를 말함.

⑥ "**영주권증명서**"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한 서류를 말함.

⑦ "**장기체류증**"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한 서류를 말함.

⑧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정부에서 그 나라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한 등록서류로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⑨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 입증서류**"란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수국적 입증가능 서류를 말함.

⑩ "**국외부재자신고등**"이란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말함(규칙 제136조의4③).

⑪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이란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말함. (규칙 제136조의6②).

⑫ "**공관명부**"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약칭으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말함.

⑬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이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말함(규칙 제136조의5①).

⑭ "**재외선거인명부등**"이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말함 (법 제218조의10①).

⑮ "**영구명부**"란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말함.

2. 명부 등재자격 및 명부의 효력

가. 명부 등재자격

1)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17. 5. 4.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중(궐위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재자 신고를 한 자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신고함

  ☞ 우편신고도 가능함

※ 참고

- **재외선거인 : <u>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u>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 **등록신청 방법 : 공관 방문 신청(서면), 공관근무 직원의 순회 접수 시 서면신청,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나. 명부의 효력

1) 재외선거인명부 등(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명부)은 등재자격이 있는 자의 신고·신청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시·군·구의 장, 중앙선관위)이 작성한 공부로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선거권 행사의 필요적 요건으로서 "재외선거인 등"임을 공증하는 효력을 가짐

   ☞ 재외투표관리관이 작성하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위한 예비명부의 성격을 가짐

2) "재외선거인명부 등"에의 등재가 선거권 행사의 필수적 요건이기는 하나 재외선거인등이 될 자격의 형성적 효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님

3)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귀국)투표를 할 수 없으며, 그 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재외(귀국)투표를 할 수 없음

   ☞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가 한 투표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함



제 2 절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처리

1. 국외부재자신고 방법

가. 신고·신청대상자(법 제218조의4①, 법 제218조의5①)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선거권자

나. 신고기간·신청기한(법 제218조의4①, 제218조의5①, 제218조의12)

1) **대통령 재선거·궐위선거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제19대 대통령선거 : 2017. 3. 10. ~ 3. 30. (21일 간)

2) **임기만료 선거 :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91일 간)**

다. 신고 내용(법 제218조의4①, 규칙 제136조의4)

○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여권번호

☞ 거소는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기재, 필요 시 해당국가 언어 함께 기재

라. 제출방법(법 제218조의4 ①, 제218조의5 ①)

○ 국내 체류자는 주소지(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우편, 인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만 할 수 있음

○ 국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제출

전자우편 및 서면(우편·인편)을 이용한 신고·신청서 작성요령

○ "**성명**"란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포함)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적습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란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 요건확인, 투표기간·장소 등 안내,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

○ "**전자우편(E-mail)**"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국외거소**"란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현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표시 후 "주소란"에 공관명만을 기재합니다.

○ "**투표예정 공관**"란은 재외투표기간 중에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별지 제59호의4서식] <개정 2017. 3. 9.>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앞쪽>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서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서명)

성 명[a]	한 글		영 문 (대 문 자)
여 권 번 호			※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적습니다.
주 민 등 록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주민등록표상)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연 락 처 ※ 반드시 정선 안에 기재	전화번호[c] (가정·직장 등)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c]		
	전자우편[d] (E-mail)		
국 외 거 소[e]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 반드시 정선 안에 기재	거투국명		우편번호
	주 소		☐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사람 (표시한 후 "주소"란에 공관명만 기재)
			투표예정공관[f]

본인은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며,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g] : (서명 또는 날인)

○○ 구·시·군의 장 귀하

※ 국외부재자신고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접수·처리

가. 확인 사항

❍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주소 · 거소 · 연락처 등] 미기재 여부

❍ 신고인의 서명 · 날인 누락(중앙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 신청의 경우 서명 · 날인 불요)

☞ 성명이 인쇄체로 표기되고 사인이 병기되었거나 성명(서명 포함)이 표기되지 않고 도장만 날인된 경우 또는 성명(서명 포함)만 기재(인쇄체로 기재한 경우 제외)하고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자로 처리함.

❍ 투표예정공관 기재 여부

❍ 신고 연월일의 정확한 기재 여부

❍ 신고서 하단 구 · 시 · 군 명칭 기재 여부

❍ 전자우편 이용 시 본인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나. 미비 시 처리방법

❍ 접수 현장에서 보완 요구 또는 반려

❍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신고기간 · 신청기한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신고기간 · 신청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함(법 제28조의4제5항).

❍ 타인의 전자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부에 접수하지 않고 즉시 반려 처리함

☞ 반려 처리시 국외부재자신고는 반드시 본인의 전자우편으로 해야 함을 안내

다. 신고·신청기간 경과 후 제출된 신고·신청서 처리

바로 해당자에게 “신고·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할 수 없음”을 구두·전자우편·전화 등을 통하여 안내함(신고서는 반려하거나 별도 보관).

라. 전산 처리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 프로그램 운용요령 참고

마. 사위 신고·신청 여부 확인

1) 확인대상

❍ 동일 필체로 서명된 신고·신청서가 다량 접수된 경우

❍ 동일한 장소를 국외거소로 한 신고·신청서가 다량 접수된 경우 등

2) 확인방법

❍ 전화·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에 의한 신고·신청인지 여부 등 확인

❍ 해당 신고·신청서의 여백에 확인일시·방법, 답변자 및 확인내용 등을 기록한 후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

3) 확인결과 처리

사위의 방법으로 신고·신청한 자의 처리방법

① 신고기간 중 발견된 때(시·군·구의 장)

☞ 명부 등에 등재하지 않고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지

② 명부 작성기간 중에 발견된 때(중앙선관위, 시·군·구의 장)

☞ 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지

③ 명부작성 후부터 명부확정 전까지 발견된 때(중앙선관위, 시·군·구의 장)

☞ 명부에서 해당자를 삭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사위등재자"라 표시 후 명부작성권자의 사인을 날인하며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함.

④ 명부확정 이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 전 발견시(중앙선관위, 재외선관위)

☞ 중앙선관위가 각 재외선관위에 통보하고,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함.

※ 해당자가 재외투표소 방문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록에 기록함.

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후에 발견한 때(시·군·구선관위)

☞ 명부의 "비고"란에 "사위등재자"라 표시하고 해당자의 회송용 봉투가 접수되면 봉투겉면에 '사위등재자'라고 기재한 붙임쪽지를 첩부하여 재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 무효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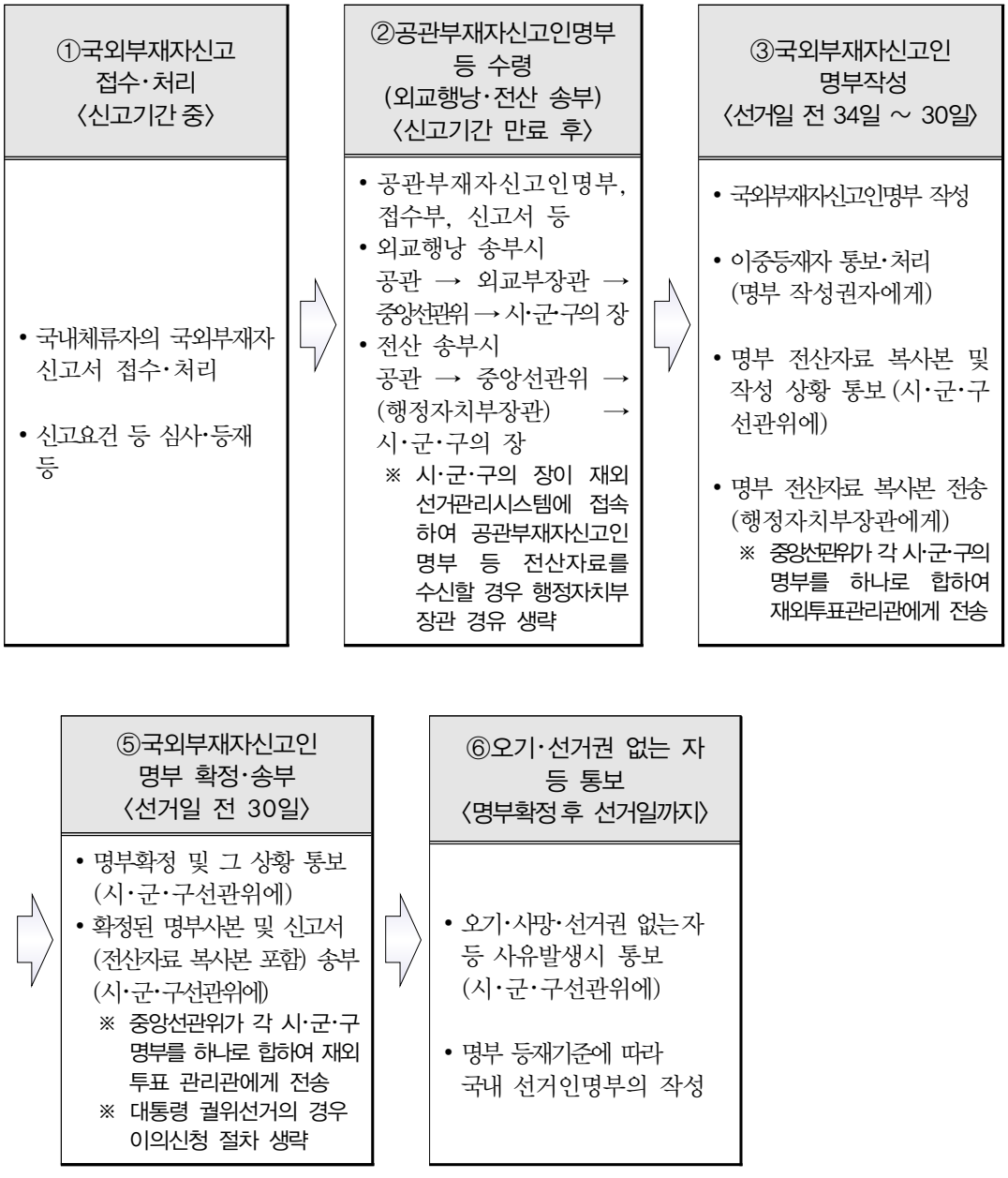
※ 이미 재외투표함에 투입된 경우에는 개표소에서 이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함.

⑥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시·군·구의 장 및 중앙선관위)

제 3 절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관리

(시·군·구의 장)

1. 업무흐름도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가. 작성권자 및 작성기간(법 제218조의9①)

1) **작성권자 :** 시·군·구의 장

2) **작성기간 : 선거일 전 34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 제19대 대통령선거 : 2017. 4. 5. ~ 4. 9. (5일 간)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10일간)

나. 작성기준일 및 기준지

1) **기 준 일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선거일 전 30일)

☞ 제19대 대통령선거 : 2017. 4. 9.

2) **기 준 지 :**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지

다. 작성부수 : 2통(자체보관 및 열람용, 시·군·구선관위 송부용)

라. 작성방법(법 제218조의9①, 규칙 제136조의9②, ③)

1)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해당 시·군·구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의해 작성함
   ☞ 시·군·구의 장은 신고기간신청기한 경과 후 국외부재자신고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철회서에 의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해당자를 등재하지 않음

2) 작성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함.

3) 신고서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함.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시스템에 임포팅하여 작성할 수 있음

4) 신고서를 전산입력하는 때마다 전산시스템에서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조회·확인하여야 함

가) 국외부재자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자인지 여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2017. 4. 5.) 현재 주소지(국내거소신고지)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나) 연령·금치산(피성년후견)선고·수형 등 선거권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 등

5) 동일인이 2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접수된 신고서에 의해 명부를 작성함(법 제218조의9①)

6) 사위(거짓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법 제218조의9②)

7) 명부작성(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철회자의 등재여부, 이중등재 여부, 결격자 등재여부, 정당한 신고인의 누락여부, 주소·성명·국외거소 등의 오기 여부를 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3. 이중·착오등재자 등에 대한 처리기준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에 이중등재 된 사람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일 현재 해당 신고·신청인의 선거인 구분 기준(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해당 명부에 등재함.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선거일 전 30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함(법 제218조의11⑥)

☞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릴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신청서의 사본(전산자료 또는 그 출력물)과 함께 다른 명부작성권자에게 알려야 함(규칙 제136조의10③).

나. 2 이상 시·군·구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중등재 된 사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2017.4.5.) 현재 해당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명부에 등재함.

다.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사람(규칙 제136조의9③)

1) 명부작성기준일(2017.4.9.) 까지 변경된 경우

➪ 변경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그 사실(신고서 첨부)을 통지함

➪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은 해당자의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2) 명부작성기준일(2017.4.9.) 후에 변경된 경우

➪ 주소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당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 변경 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변경된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은 그 사람이 해당 시·군·구의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함(법 제37조①).

라. 신고서에 주소지 오기재 등으로 다른 시·군·구 명부에 등재된 사람

○ 착오기재(접수)된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정상적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송부함

○ 정상적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은 그 신고인의 요건을 확인하여 당해 시·군·구의 명부에 등재함

☞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주민등록표의 전산정보자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때에는 전산정보자료에 의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직권 정정·등재함.

마. 명부작성기간 중에 선거권 결격사유가 변경된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중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미등재하였으나 명부작성기간 중에 선거권이 회복된 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함

○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중 명부작성기간 중에 사망 또는 선거권이 없게 된 자는 명부에 등재하지 않으며 선거권이 없게 된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함

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사이에 선거권 결격사유가 변경된 사람

○ 그 기간 중 선거권이 회복된 사람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

○ 그 기간 중 사망 또는 선거권이 없게 된 사람은 직권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

사. 명부확정 후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권 결격사유가 변경된 사람

○ 선거권이 회복된 자라 하더라도 명부에 추가로 등재할 수는 없음

○ 사망 또는 선거권이 없게 된 자는 명부의 “비고”란에 “사망 또는 선거권 없음”이라 기재함(시·군·구선관위)

4. 명부 작성상황 통보 등(규칙 제136조의9⑤⑥)

가. 행정자치부 명부 열람용 전산자료 전송

1) **시　　기** : 명부작성 후 지체없이

2) **방　　법** : 전산조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3) **전 송 처** : 행정자치부장관

나. 시·군·구선관위 작성상황 통보

1) **시　　기** : 명부작성 후 지체없이

2) **방　　법** :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함(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3) **통 보 처** : 관할 시·군·구선관위

4) **보　　고** : 시·군·구선관위는 「각종 보고지침」에 의해 명부작성 상황(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을 지체없이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전산입력)·전송함

5. 명부 이중등재 검색

가. 시　기 : 명부 작성기간 만료 후 확정일 전일까지

나. 주　관 : 시·군·구의 장

다. 방　법

○ 시·군·구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재외선거인명부를 교차 검색하여 이중등재 여부를 확인함

○ 이중등재자 발견시 선거권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여 나중에 접수된 신고·신청서에 따라 명부에 등재하고 다른 명부작성권자에게 통보함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송·수신

업무명	송신(발송)	수신(출력)	처리 방법
① 공관명부 등 국 내 송 부	재외투표관리관	중앙선관위	○ 신고·신청 접수처리시 실시간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서버저장
② 공관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등 구·시·군의 장에 송부	중앙선관위	시·군·구의 장	○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신·조회·출력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출력 - 공관부재자신고서 접수부·명부 조회
	중앙선관위	시·군·구선관위	○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신·조회·출력(명부작성상황 감독용)
③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확정) 상황 송부	시·군·구의 장	시·군·구선관위	○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임포트 처리
④ 열람용 재외선거인 명부 송부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장관	○ 열람용 전산자료 복사본 직접 송부
⑤ 열람용 재외선거인 명부 등 송부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 조회 및 공관 관할 구역내 국외거소자 재외선거인명부등 출력(열람용) ※ 열람용 PC 설치시 별도 서버에 접속
⑥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보고	시·군·구선관위	중앙선관위	○ 재외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군·구의 장이 임포트한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최종 검토 후 시스템상 보고처리함.
⑦ 투표용지 발급기용 재외선거 DB 송부	중앙선관위	재외투표관리관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과 후보자 명부로 생성한 DB를 시스템을 통하여 내려받기(보완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 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내장함.

【 별지 제59호의9 서식의 (가), (다), (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표지)

2017년 5월 9일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시·군·구)

작성기간 :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확 정 : 2017년 4월 9일

○○시·도 ○○시·군·구

(○책 중 ○권)

○○시·군·구의 장 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내지)

등재번호	접수기관	한글 성명 영문 성명	대한민국 주소	국외부재자투표 접수일시	투표용지 수령인	비고
	접수기관 등재번호	생년월일 (성 별)				

주: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방법

가. "등재번호"란은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순(투표구별 주소의 건물번호순, 통·리·반순, 선거인 성명의 가·나·다순, 생년월일)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나. "접수기관"란은 구·시·군, 공관명을 기재한다.

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기재한다.

라. 그 밖의 사항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마. 윗란과 동일한 내용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袋綴)하여 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구·시·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수정방법

가.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적고, 구·시·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

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사망한 사람·이중으로 올라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 줄로 삭제하고,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부분만 두 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적고 구·시·군의 장의 도장을 찍는다.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사망한 사람·이중으로 올라 있는 사람·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하거나 동 사실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작성하고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시·군·구의 장 인

(2) 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2017년 4월 9일에 확정되었음.

○○시·군·구의 장 인

주 : (3)항은 명부의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

【별지 제59호의11(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시·도명	구·시·군명	① 공관명부 접수자			수정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④인 구 수 (연 월 일 현재)	인구수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비고
		계	등재자	미 등재자	증	감	구분	계	②공관 접수 등재자	③시·군·구 접수등재자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당초 통보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접수자의 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의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 중 해당 시·군·구의 장이 접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한다.
④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3. 이 통보서에서 별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 · 첨부한다.

<별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상황

접 수 기관명	공관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 1. 수정사유란은 구、시、군의 장이 수정한 내역을 기재한다.
2.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등재자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미등재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 "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 "미등재자"로 표기하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미등재자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 "미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 "등재자"로 표기한다.

제 4 절 명부의 열람·수정 및 확정

※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열람·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확정

①열람용 재외선거인명부등 작 성 · 송 부 등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구·시·군의 장 → 구·시·군선관위, 행정자치부(전산송부)
  - 구·시·군선관위 → 중앙선관위 (전산송부)
- 재외선거인명부
  - 중앙선관위 → 행정자치부 (전산송부)
- 재외선거인명부등
  - 중앙선관위 → 재외투표관리관 (전산송부)

② 명부 열람

- 서면 열람(선거권자 누구든지)
  - 구·시·군의 장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재외투표관리관 : 해당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등
- 인터넷 열람(당해 선거권자)
  - 구·시·군의 장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중앙선관위 : 재외선거인명부등
  - 행정자치부 : 재외선거인명부등
- 공관 열람용 PC를 이용한 열람 (선거권자 누구든지)
  - 재외투표관리관 : 열람용 재외선거인 명부등

③ 이의신청

- 구·시·군의 장 및 중앙선관위
  - 구두(말)·서면(임의서식)·인터넷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 행정자치부
  -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신청 하도록 안내
- 재외투표관리관
  -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 신청서 모사전송(FAX)

④ 불복신청

- 직접 신청(서면신청)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 ⇒ 시·군·구선관위
- 공관경유 신청(서면신청)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 ⇒ 재외투표관리관 (모사전송) → 시·군·구선관위
  - ※ 불복신청은 국외부재자에 한함.

⑤ 명부누락자 등재 신청

- 직접 신청(서면신청)
  -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되지 못한 사람 ⇒ 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공관경유 신청(서면신청)
  -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누락된 자 ⇒ 재외투표관리관 (모사전송) → 중앙선관위, 구·시·군의 장
  -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신청

⑥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송부 〈선거일 전 30일까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구·시·군의 장 → 구·시·군선관위 → 중앙선관위(전산송부)
- 재외선거인명부등
  - 중앙선관위 → 재외투표관리관 (전산송부)

1. 명부의 확정 및 송부

가. 명부의 확정 및 효력(법 제218조의13①)

1) **명부확정일** : 선거일 전 30일 24시(2017.4.9.)

2) **명부의 효력**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해당 선거에 한해 효력

나) 재외선거인명부 : 영구적 효력

나. 확정된 명부 등 송부(법 제218조의13②, 규칙 제136조의11)

1) **송부시기** : 명부확정 후 지체없이

2) **송 부 처** : 관할 시·군·구위원회

3) **송부서류**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시·군·구의 장 → 관할 시·군·구위원회)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별지 제21호)
-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복사본 포함)
- ○ 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국외부재자신고서
  - ☞ 명부에 올라 있는 순서대로 신고서를 정리·편철하여야 함.
  - ☞ 전산조직에 의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정리·편철함.

나) 재외선거인명부(중앙위원회 → 관할 시·군·구위원회)

- ○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 ○ 재외선거인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복사본은 재외선거관리시스템으로 전송)

다. 명부확정 후 선거권 없는 자 등의 통보(규칙 제14조④)

1)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사람 중 명부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별지 제22호』에 의해 지체없이 관할 시·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2) 시·군·구위원회가 위 “1)”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함
3) 구·시·군위원회가 사망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의 명단을 통보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해당자의 재외투표 접수시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붙임쪽지를 붙여 재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 무효로 처리함(규칙 제96조②, 제136조의33①)
   ☞ 해당자의 회송용봉투가 이미 재외투표함에 투입된 때에는 개표 시에 당해 재외투표를 가려내어 무효처리 함
   ☞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 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 처리함

라. 투표한 재외선거인 등의 국적관련 이의제기 금지(법 제218조의13④)

❍ 누구든지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별지 제59호의11(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①접 수 기관명	②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직권수정에 의한 감	④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⑥인구수 (연월일 현재)	인구수대비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	비 고
				증	감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접수기관명"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접수기관"의 순에 따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서상의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전까지 사망·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기간이 지난 후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서 ③, 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⑥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3. 이 통보서에는 별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 상황〉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 상황

접 수 기관명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 고
			수정전	수정후		

주 :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7호의(나)】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통보서**

시·군·구명 (지역구명)	등 재 번 호	성 명	선거권이 없는 자 등	오기사항 등	비 고

주 : 1. “오기사항 등”란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 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예: 성명 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음, ○년 ○월 ○일 사망함 등).

2.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오기사항 등을 통보할 경우에는 “시·군·구명”란의 ( )에 지역구명을 병기 한다.

6. 재외선거인 등의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기준

가.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법 제37조①)

1) 시·군·구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국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7.4.11.)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을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해당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국외부재자"라 기재하고 시·군·구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2) 다만, 국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시·군·구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함(법 제37조①)

☞ 관할구역이 다른 시·군·구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법 제37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2017.4.9.) 현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작성하는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법 제37조 제1항의 국내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4.11.) 이전에 사망하거나 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한 시·군·구의 장은 그 사람을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린 후 수정함

☞ "비고"란에 "국외부재자", "연월일 사망, 선거권 없음" 등으로 기재하고 시·군·구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나. 재외선거인의 국내 선거인명부 미등재

1) 시·군·구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함

2)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가 법 제37조제1항의 국내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 4. 11.)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시·군·구의 국내 선거인명부에는 올리지 않음.(법 제37조①)

제 3 장 재외투표

1. 재외투표 절차도

재외투표용지 원고송부 및 보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 중앙선관위 → 재외투표관리관(전산조직으로)
◦ 재외투표용지 원고보관(보안 정보저장매체)

재외투표소 투표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중 재외선관위가 정한 기간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하여 투표용지 작성·교부
◦ 투표용지 발급기 장애시 재외투표용지 원고를 인쇄·복사하여 작성·교부

귀국투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투표 가능
◦ 귀국투표를 위해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선관위에 사전 귀국투표신고 필요
◦ 관할 선관위가 지정한 국내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

재외투표 회송

◦ 재외투표관리관 → 외교부장관(확인) → 중앙선관위 → 시·군·구선관위(등기우편으로)

재외투표 접수

◦ 선거일 오후 6시까지(시·군·구선관위)

☞ '책임위원등'이란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위하여 두는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를 말함.

2. 재외투표 개요

구 분	재외투표소 투표	귀국투표
투표기간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 선거일
투표시간	◦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병부대 추가투표소의 경우 투표시간 조정 가능)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 공관 외 추가투표소 ◦ 파병부대 추가투표소	◦ 국외부재자 주소지(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 ◦ 재외선거인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관할 시·군·구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투표대상	◦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신고인	◦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한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
지 참 물	◦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재외선거인에 한함)	◦ 신분증명서
투표절차	◦ 본인확인 ⇨ 투표용지·회송용 봉투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 회송용 봉투에 투입·봉함 ⇨ 투표함 투입	◦ 국외부재자 일반 선거인과 동일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귀국투표자'로 기재) (투표상황을 투표록에 기재) ◦ 재외선거인 선거인명부 맨 끝란에 등재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또는 무인 포함) 후 투표 (투표상황을 투표록에 기재)
기표방법	◦ 기표식 (투표용지 발급기 장애 등의 경우 일부자서식)	◦ 기표식
회송경로	◦ 재외투표관리관(외교행낭·인편) ⇨ 외교부장관(확인) ⇨ 중앙선관위 ⇨ 시·군·구선관위(등기우편)	◦ 해당없음

재외투표소 종류

❑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법 제218조의17①, ⑤)

❍ 재외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투표를 위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다만,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주재국의 사정으로 공관밖에 재외투표소 설치가 곤란한 공관은 제외

❍ 재외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게 함.

❑ **공관(대체시설) 외 추가투표소(법 제218조의17②, ⑥)**

❍ 재외선관위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공관(대체시설)에 두는 재외투표소 외에 추가로 시설 등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주재국의 사정으로 공관밖에 재외투표소 설치가 곤란한 공관은 제외

❍ 재외국민 수가 4만을 초과하는 공관은 매 4만명까지 마다 1개소로 하되 그 수는 최대 2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 재외선관위는 책임위원을 둘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소관리자'를 지정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음.

❑ **파병부대 추가투표소(법 제218조의17②, ⑥)**

❍ 재외선관위는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 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공관(대체시설)에 두는 재외투표소 외에 추가로 병영 내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재외선관위는 책임위원을 둘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소관리자'를 지정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음.

3. 재외투표 절차

투 표 개 시	○ 책임위원등이 투표개시를 선언함(매일 오전 8시).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등 작성	○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서류 포함)를 제시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음. ○ 위원·투표사무원은 재외선거인등의 재외투표소명부(투표용지 발급기에 탑재) 등재여부를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 또는 무인하게 함. ○ 투표용지 및 회송용 라벨 출력함. ○ 참관인은 본인여부 확인상황 등을 참관함.
투표용지 등 교부	○ 출력된 투표용지에 책임위원 도장 날인(또는 서명)함. ○ 출력된 회송용 라벨을 회송용 봉투에 부착함.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함.
기 표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함. ○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기표소에서 나옴.
봉 투 봉 함	○ 회송용 봉투를 봉함용 양면테이프로 봉함함. ☞ 봉함용 양면테이프가 불량인 경우 풀로 봉함함.
투 표 함 투 입	○ 재외선거인등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소함. ○ 참관인은 투표함의 회송용 봉투 투입상황을 참관함.
투 표 마 감	○ 책임위원등이 투표마감을 선언함(매일 오후 5시). ○ 책임위원등 도장 및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봉인함.
투표자수 집계 및 재외투표관리관 인계	○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자수(회송용 봉투수) 집계 후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함. ○ 참관인은 투표함 개함 및 투표자수 집계·인계과정을 참관함.

4. 귀국투표

가. 대　　상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

나. 투표방법(법 제218조의16③, 규칙 제136조의14)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
2)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귀국투표신고인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읍면동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함
3)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4) 투표방법은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함
5) 기타 성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은 국내투표 절차를 준용함

다. 귀국투표 관리

⇨ 국내 투표 관리절차에 의함

제 4 장 재외선거 개표

1. 개표 절차도

국내 개표소		공관개표소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개표	수작업에 의한 개표	수작업에 의한 개표
재외투표함 개함 (개 함 부)	재외투표함 개함 (개함·점검부)	재외투표 보관봉투 개봉 (개함·점검부)
⇩	⇩	⇩
회송용 봉투 분류·확인	회송용 봉투 분류·확인	회송용 봉투 분류·확인
⇩	⇩	⇩
회송용 봉투 개봉	회송용 봉투 개봉 및 투표지 분류	회송용 봉투 개봉 및 투표지 분류
⇩	⇩	⇩
투표지 분류 (투표지분류기운용부)	유·무효 구분	유·무효 구분
⇩	⇩	⇩
투표지 심사·집계 (심사·집계부)	투표지 심사·집계 (심사부·집계부)	투표지 심사·집계 (심사부·집계부)
⇩	⇩	⇩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 보고	개표상황 보고	개표상황 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투표지 포장·정리	투표지 포장·정리

2. 개표 방법

재외투표의 개표는 개표장소와 개표주체에 따라 국내개표와 공관개표로 나뉨.

가. 국내개표

- ❍ 법 제218조의19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국내에 회송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위원회에서 개표함
- ❍ 국내 개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개표관리함

나. 공관개표

- ❍ 천재지변 또는 전쟁 ·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재외위원회가 해당공관에서 개표함
- ❍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관리함

3. 개표 절차(국내개표 예시)

가. 재외투표함 개함

1) 재외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시·군·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재외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진행 절차에 따라 재외투표함의 개함을 선포함

2) 재외투표함은 일반투표함 또는 우편투표함의 투표지와 구분하여 개표함

3)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을 각각 구분하고, 국외부재자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여 개표한 후 재외선거인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함
   ☞ 하나의 투표함 개표가 완료된 후에 나머지 투표함을 개함하여야 함

나. 국외부재자투표의 분류

1)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자의 회송용 봉투로 각각 분류함

2) 분류된 주민등록자 및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의 회송용 봉투를 순차적으로 개표함

다. 회송용 봉투의 확인

라. 회송용 봉투 개봉

마. 투표지의 분류, 계표 및 공표

1)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꺼낸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함

2)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투표 중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의 투표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의 투표지와 비례대표선거의 투표지를 먼저 구분 후, 지역구선거는 지역구별로, 비례대표선거는 국외부재자투표 중 국내거소신고자 및 재외선거인의 비례대표선거 투표지와 합하여 각각 유·무효로 구분함
   ☞ 지역구선거의 투표지를 우선 개표한 후 비례대표선거의 투표지를 일괄 개표함

3) 무효투표지(봉투째 무효로 된 봉투 포함)의 수를 계산 별도로 묶어서 관리함

4) 유효한 투표지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별로 분류하여 그 수를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각각 별도로 묶어서 관리함

5) 위 “3), 4)”에 의한 유·무효투표지의 수를 집계하고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심사·점검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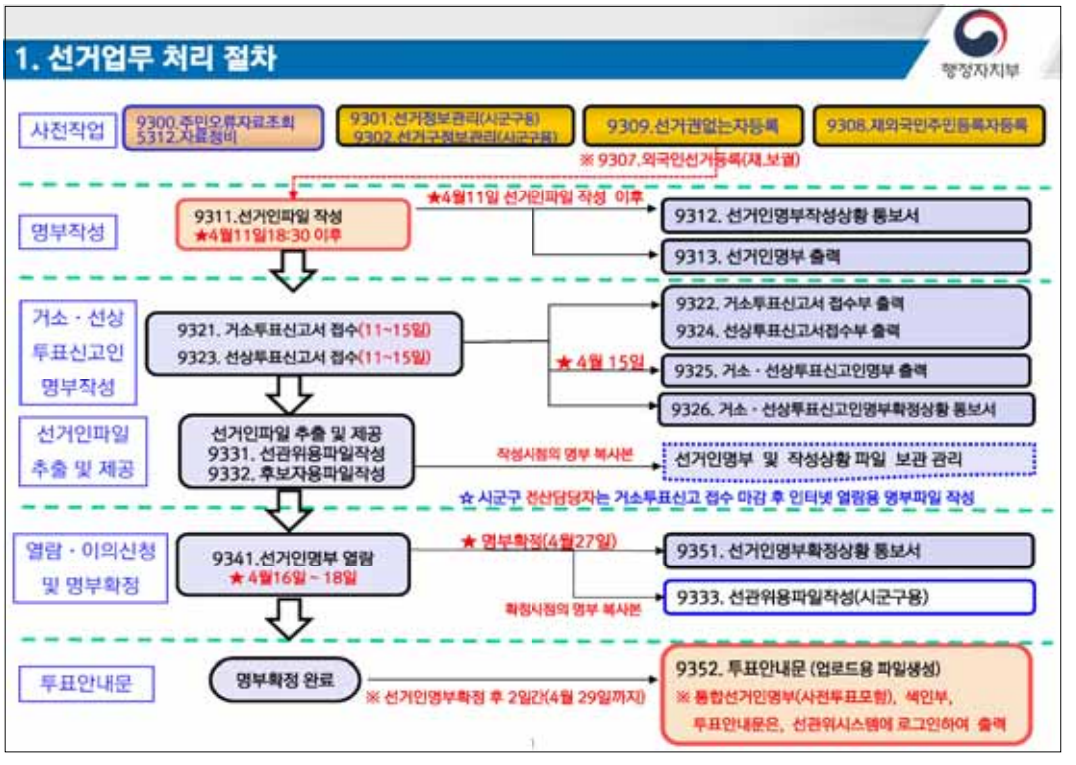
6) 개표상황표에 출석한 위원의 검열 및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공표함

바. 개표종료에 따른 조치 : 결과 공표 후 즉시 개표관리시스템에 입력·전송함



Ⅲ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행정자치부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3.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행정자치부
사전작업
9300.주민오류자료조회
5312.자료정비
9301.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9302.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9309.선거권없는자등록
9308.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
※ 9307.외국인선거등록(재.보궐)
명부작성
9311.선거인파일 작성
★4월11일18:30 이후
★4월11일 선거인파일 작성 이후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
9313. 선거인명부 출력
거소·선상 투표신고인 명부작성
9321. 거소투표신고서 접수(11~15일)
9323. 선상투표신고서 접수(11~15일)
★ 4월 15일
9322.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 출력
9324. 선상투표신고서접수부 출력
9325.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출력
9326.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 통보서
선거인파일 추출 및 제공
선거인파일 추출 및 제공
9331. 선관위용파일작성
933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시점의 명부 복사본
선거인명부 및 작성상황 파일 보관 관리
☆ 시군구 전산담당자는 거소투표신고 접수 마감 후 인터넷 열람용 명부파일 작성
열람·이의신청 및 명부확정
9341.선거인명부 열람
★ 4월16일 ~ 18일
★ 명부확정(4월27일)
9351. 선거인명부확정상황 통보서
9333.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확정시점의 명부 복사본
투표안내문
명부확정 완료
※ 선거인명부확정 후 2일간(4월 29일까지)
9352. 투표안내문 (업로드용 파일생성)
※ 통합선거인명부(사전투표모함), 색인부,
투표안내문은, 선관위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출력

2-1.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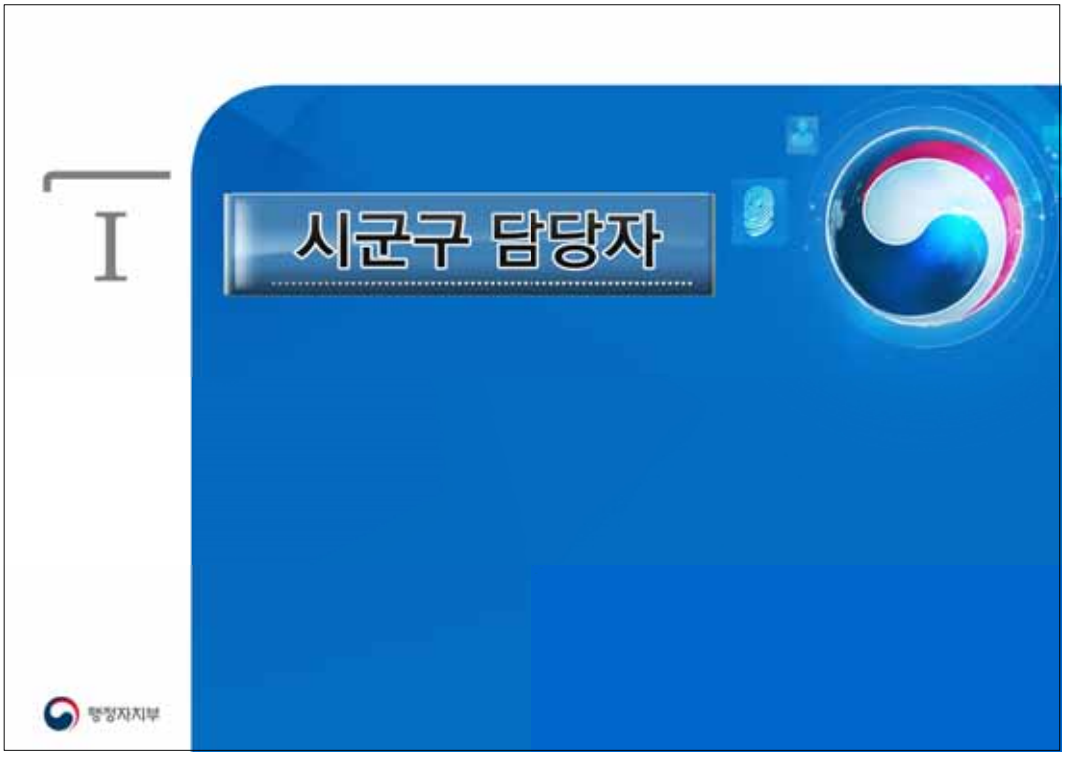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사무	일정	시스템명	처리 업무	처리기관
주민등록 자료정비	4/5	주민등록 시군 구정보시스템	9300. 주민등록오류자료조회 5312. 자료정비	읍면동 ※ 4.6. 예비명부작성
선거정보확인	4/6 오전	주민등록 시군 구정보시스템	9301. 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9302. 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시군구(선거담당)
선거인명부 작성 -예비명부(4/6) -본 명부(4/11)	작성당일(4/11) 09:00~18:00 작성 준비	결격사유 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 자 일괄추출	시구/읍면 (결격사유시스템담당) ↓ 읍면동(주민등록)
		외국인공동 이용시스템	※ 재보궐지역만 해당 외국인 선거권자 자료 추출 및 읍면동별 송부	시군구(선거담당) ↓ 읍면동(주민등록)
		주민등록 시군 구정보시스템	9300.주민오류자료조회 및 5312.자료정비	읍면동(주민등록)
			9307. 외국인선거인등록 (일부 재/보궐선거지역)	
			9308. 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	
			9309. 선거권 없는자 등록	
			9311. 선거인파일작성	
	4/11 18:30 이후 ~ 종료 시 까지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9313. 선거인명부출력	
		RIUS	340.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_외국인포함 370. 선거인명부기타통보서_외국인포함	시군구(선거담당)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4/11 ~4/15 선거일파일작성 완료 이후	주민등록 시군 구정보시스템	93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 9323. 선상투표신고서접수	읍면동(주민등록)

2-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행정자치부

사무	일정	시스템명	처리 업무	처리기관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작성	4/15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22.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출력 9324. 선상투표신고서접수부출력 9325.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출력 9326.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읍면동
			9313. 선거인명부출력	
		RIUS	360.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시군구(선거담당)
열람용 파일작성 및 선관위파일제공	4/15 ~ 거소투표확정이후	서버작업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명부 파일작성	시군구(전산담당)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31.선관위용파일작성 9332.후보자용파일작성	읍면동 시군구(선거담당) ↓ 구시군(선관위)
열람 및 이의신청	4/16 ~4/18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41. 선거인명부열람	읍면동
선거인명부 확정	4/27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51.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읍면동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33.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선거인(확정)명부 선관위 최종 송부	시군구(선거담당) ↓ 구시군(선관위)
		RIUS	350.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_외국인포함 370. 선거인명부기타통보서_외국인포함	시군구(선거담당)
		서버작업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명부 파일작성	시군구(전산담당)
투표안내문 송부	4/28 ~ 4/30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	9352.투표안내문 파일추출(선관위시스템 등록용)	읍면동
		선관위시스템	투표안내문 출력	읍면동
투표일 전 준비	5/6 ~ 5/8	선관위시스템	사전투표가 반영된 통합선거인명부 및 색인부 출력	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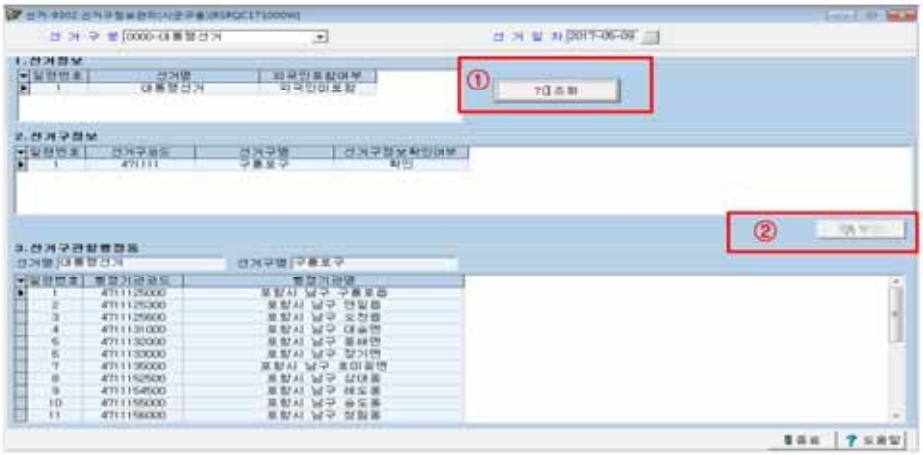

Ⅰ
시군구 담당자
행정자치부


Ⅰ.시군구 담당자
3.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행정자치부
○ 선거구분은 "0000-대통령선거" 를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시군구 선거 담당자는 선거정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선거정보가 틀린 경우 주민과 주민등록정보전산센터(02-2076-3501, 3502)에 문의 바람

Ⅰ.시군구 담당자

4.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행정자치부



○ 선거구분은 "0000-대통령선거" 를 선택한다.

○ **1.선거정보**에서 시행되는 선거를 선택 후 ①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선거의 **2.선거구 정보**를 각각 확인한다.

○ 선거구별로 **3.선거구관할행정동** 정보를 확인한 후 ②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선거구별 관할 행정동이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

Ⅰ.시군구 담당자

5. RIUS -통계-선거관련보고-340.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행정자치부



○ "선거구분"은 실시하는 선거명을 선택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 : '0000' 대통령선거

※ 재보궐선거 지역인 경우 : 각 선거별로 선택하고 확인(구·시·군의 장 선거인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초의회의원선거', 시·도 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광역의회의원선거')

○ "선거구코드"는 해당 시군구에 해당되는 선거구를 선택한다.

Ⅰ.시군구 담당자

5. RIUS –통계–선거관련보고–340.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행정자치부



①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기준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기준일자**는 **작성상황통보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②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③ **[보고서 집계]**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작성상황통보서를 집계한다.

④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작성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읍면동 작업완료 이후 3번작업을 재수행한다.

⑤ 시군구에서 보고서집계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된다. **재전송 기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보고서 집계를 다시 하고 출력해야 한다.**

⑥ 집계 수행 후 **[보고서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⑦ 선관위시스템에 업로드하기 위한 제출용 파일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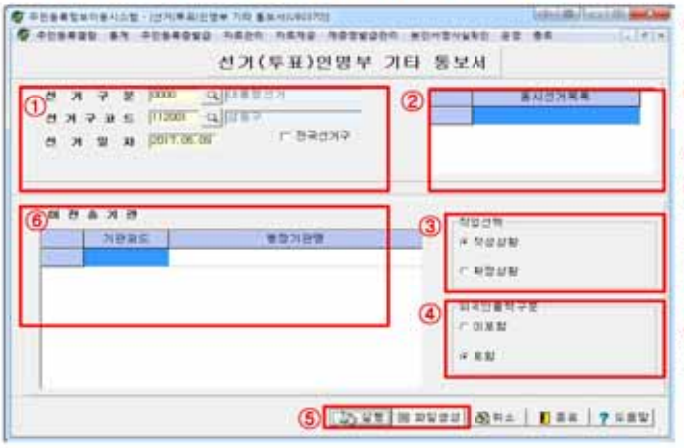


★ 엑셀파일 생성시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Enter"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함.

Ⅰ.시군구 담당자

6. RIUS –통계–선거관련보고–370 기타통보서 출력 (작성상황)

행정자치부



①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③ 작성상황을 선택한다.

④ 외국인 포함 또는 미포함 출력 가능하다.

– 대통령선거 : 외국인 미포함

■ 재보궐선거 : 외국인 포함

⑤ **[실행]**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⑥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작성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읍면동 작업완료 이후



★ 엑셀파일 생성시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Enter"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함.

Ⅰ.시군구 담당자

7. RIUS –통계–선거관련보고–360.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행정자치부



①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기준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기준일자**는 **거소투표확정상황통보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②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③ 거소투표/선상투표 각각 선택

* **선상투표는 재.보궐 해당 없음**

④ **[보고서 집계]**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거소투표확정상황통보서를 집계한다.

⑤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거소투표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읍면동 작업완료 후 ③, ④번 작업 재실행

⑥ 시군구에서 보고서집계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된다. **재전송기관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서 집계(③, ④번 작업)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⑦ 집계 수행 후 **[보고서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⑧ **선관위시스템에 업로드하기 위한 선관위제출용 파일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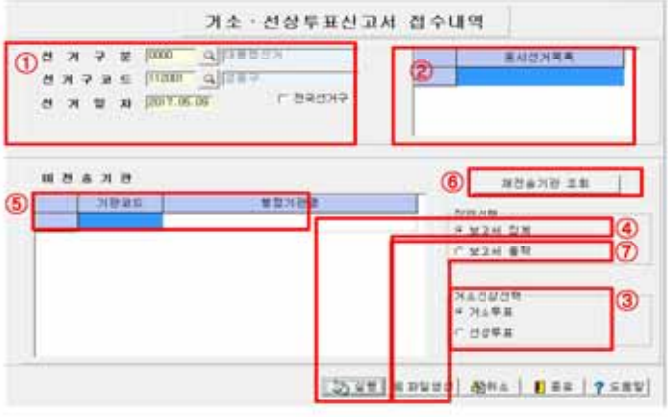
★ **엑셀파일 생성시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Enter"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함.**

10

Ⅰ.시군구 담당자

8. RIUS –통계–선거관련보고–3B0.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행정자치부



①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③ 거소투표/선상투표 각각 선택

* **선상투표는 재.보궐 해당 없음**

④ **[보고서 집계]**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거소투표확정상황통보서를 집계한다.

⑤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⑥ 시군구에서 보고서집계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된다. **재전송기관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서 집계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⑦ 집계 수행 후 **[보고서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 **엑셀파일 생성시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Enter"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함.**

11

Ⅰ.시군구 담당자

9.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 (●시군구 전산담당자)

행정자치부

○ 선거인 명부 작성 또는 확정 완료 (4월 15일, 4월27일)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열람용 명부 파일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한다.

1. irais 계정으로 공통기반1 AP서버 로그인

2. 실행파일 디렉토리 이동 : cd /irais/a_rsr/bin

3. 전산파일생성 작업 : RSRCC119000Z ∨ /irais/a_rsr/data1/ ∨ 선거일자8자리

- 프로그램명과 선거인파일 생성 디렉토리, 선거일자8자리는 각각 한 칸(∨) 띄워야 함.

- 생성되는 파일명 : VOTEMAN_선거일자_작성일자.dat

예) [irais@jumin:/irais/a_rsr/bin] RSRCC119000Z /irais/a_rsr/data1/ 20170509

=> /irais/a_rsr/data1/VOTEMAN_20170509_20170415.dat 파일이 생성됨

※ 작업일을 2017년 4월 15일로 가정했을 경우임

4. 로그 위치: /irais/a_rsr/log/RSRCC119000Z.log

※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용 전산파일작성 지침서 및 인터넷열람용 전산파일(샘플)

★ 주민등록.인감 온라인 공동학습방(http://10.51.21.13) ->선거업무->자료실 게시번호 32714 에 게시

12

Ⅰ.시군구 담당자

10. RIUS -통계-선거관련보고-350.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행정자치부



①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기준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기준일자**는 **확정상황통보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②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③ **[보고서 집계]**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확정상황통보서를 집계한다.

④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⑤ 시군구에서 보고서집계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되면, **재전송기관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서 집계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⑥ 집계 수행 후 **[보고서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⑦ 선관위시스템에 업로드하기 위한 선관위제출용 파일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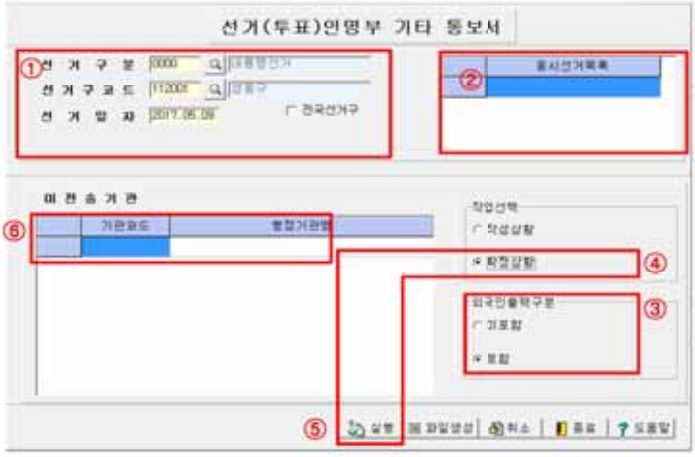
★ 엑셀파일 생성시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Enter"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함.

13

Ⅰ.시군구 담당자

11. RIUS –통계–선거관련보고–370.기타통보서 출력 (확정상황)

행정자치부



①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③ 외국인 포함 또는 미포함 출력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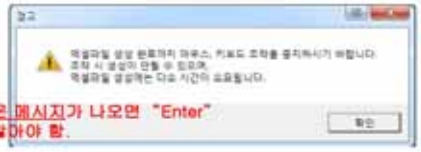
※대통령선거 : 외국인 미포함

※재보궐선거 : 외국인 포함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확정상황을 선택한다.

⑤ **[실행]**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⑥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엑셀파일 생성시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Enter"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함.

14

Ⅰ.시군구 담당자

12. RIUS –통계–선거관련보고–3A0.선거인명부 확정내역

행정자치부



①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③ **[보고서 집계]**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확정내역을 집계한다.

④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⑤ 시군구에서 보고서집계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되면 **재전송 기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보고서 집계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⑥ 집계 수행 후 **[보고서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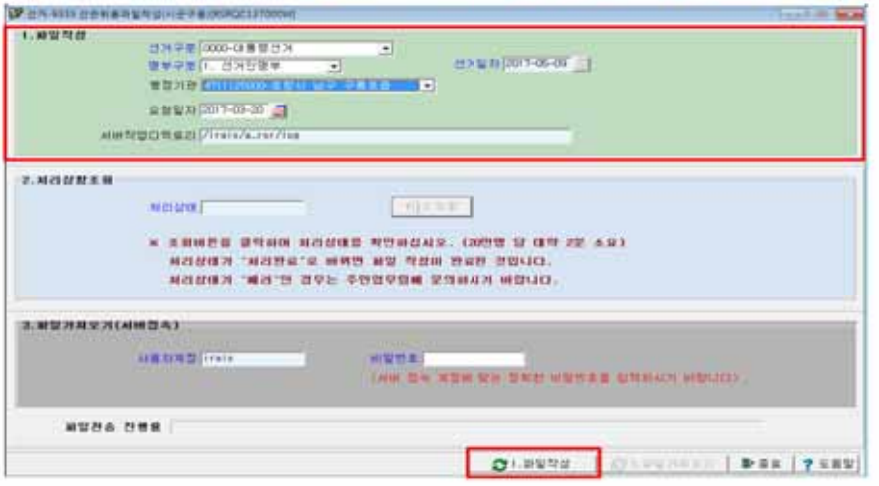
★ 엑셀파일 생성시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Enter"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함.

15

Ⅰ.시군구 담당자

13-1.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선거-9333.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파일작성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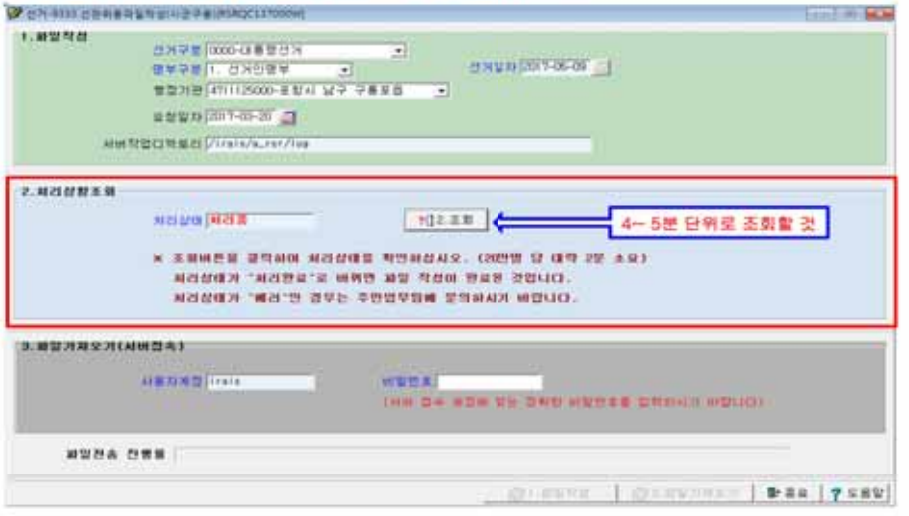
○ 대표선거구분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조회된다.
○ 요청일자는 기본으로 현재일자가 지정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 파일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시.군.구 서버의 서버 작업디렉토리(/irais/a_rsr/log) 폴더에 선거인명부 파일을 생성한다.
※ 구.시.군 업무담당자가 선거인명부 확정일(4/27)부터 작업이 가능하다. (★읍.면.동 업무담당자 작업 불가)

16

Ⅰ.시군구 담당자

13-2.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처리진행상황조회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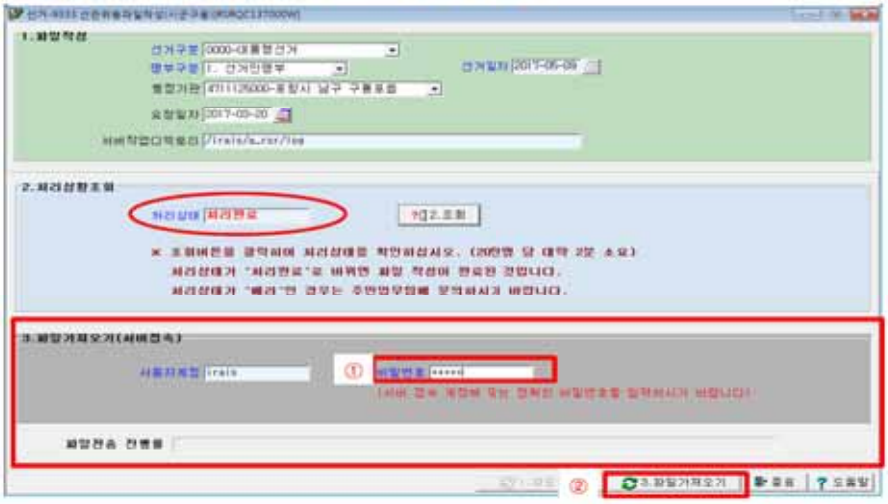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시.군.구 서버에 선거인명부 파일이 작성되는 처리상태를 조회한다.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조회되면 파일작성 한다.(다음 장)

17

Ⅰ.시군구 담당자

13-2.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파일 가져오기

행정자치부



① 시.군.구 공통기반 AP1서버의 'IRAIS'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
★ 시군구청 주민등록 전산담당자에게 사전에 파악해야 함
② "파일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작성

Ⅰ.시군구 담당자

13-2.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파일 저장위치 선택

행정자치부



○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 위치를 지정하고 파일이름을 확인한 후 저장한다.
○ 파일전송 진행률의 정선이 증가되면서 진행과정이 조회되고, 서버에 생성된 선거인명부 파일을 가져온다.
★ 위의 파일 가져 오기가 안 될 경우(FTP가 막힘) 구.시.군 전산담당자가 서버의 작업디렉토리(/irais/a_rsr/log)에서 파일(VOTEMANCOPY_20170509_XXXX .dat)를 ftp로 전송 받는다.
※ 파일형식을 VOTEMANCOPY_20170509_XXXX.txt 파일로 변경

Ⅰ.시군구 담당자

참고.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대통령선거 해당 없음)

행정자치부

○ 등록외국인영주권자명부 조회

• (화면하단) 정보조회 > 등록외국인관리 > **등록외국인영주권자명단조회**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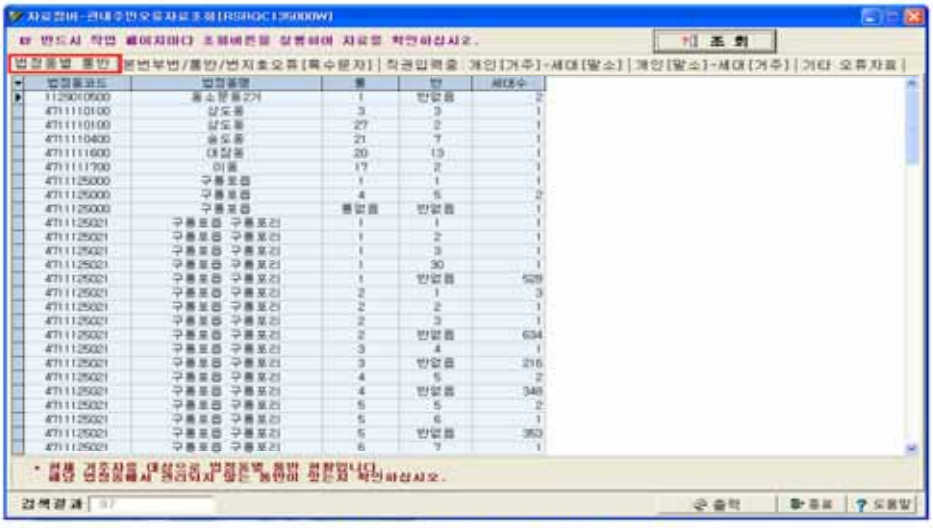
Ⅱ

읍면동 담당자

행정자치부

II.읍면동 담당자

14. 9300.주민오류자료 조회 – 법정동별 통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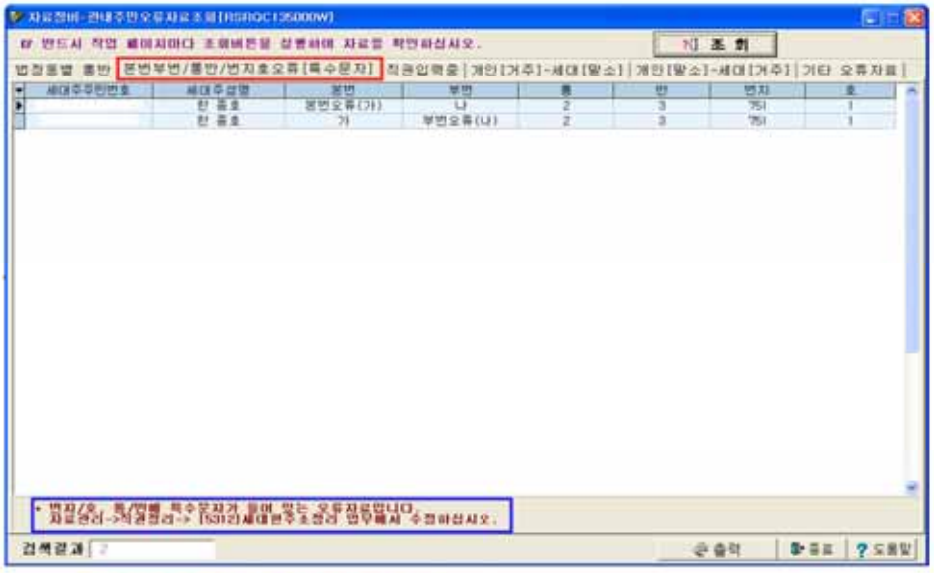
○ 법정동별통반에서 조회되는 내역들은 **오류자료가 아닌 현재 거주 세대의 통,반 별 현황**이다.

○ 관리되지 않는 통반에 세대수가 있을 경우 대상세대를 세대별 명부에서 조회하여
"자료관리->직권정리->[5312] 세대현주소정리" 업무에서 통/반을 수정한다.

22

II.읍면동 담당자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 본번부번/통반/번지호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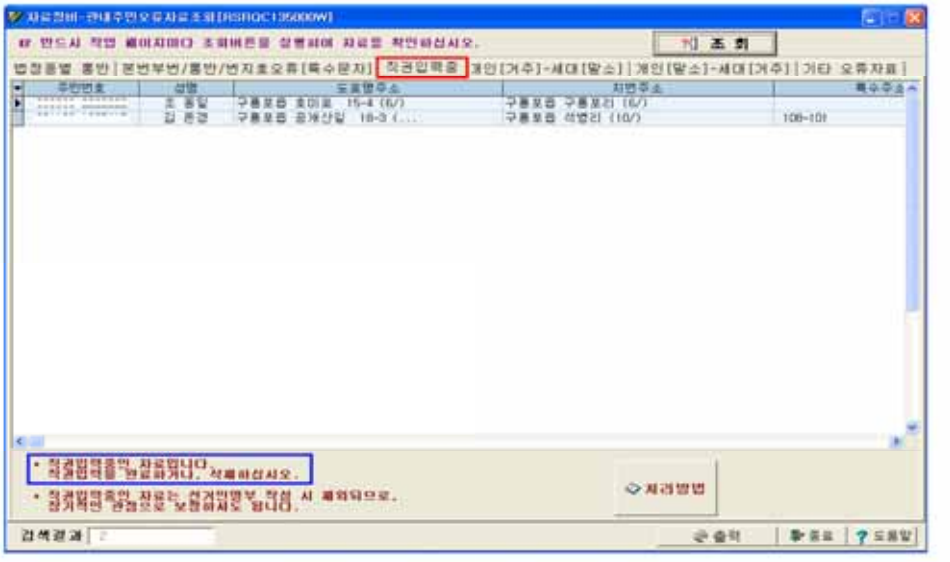
○ 반드시 **해당 작업영역 탭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어야 한다.

23

Ⅱ.읍면동 담당자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 직권입력중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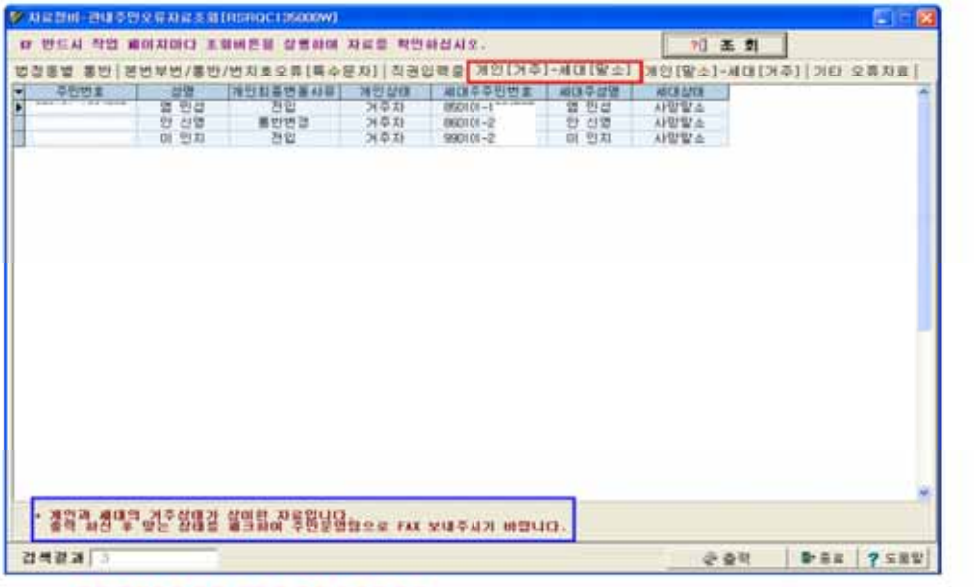


○ 반드시 **해당 작업영역 탭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어야 한다.

Ⅱ.읍면동 담당자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 개인[거주]/세대[말소]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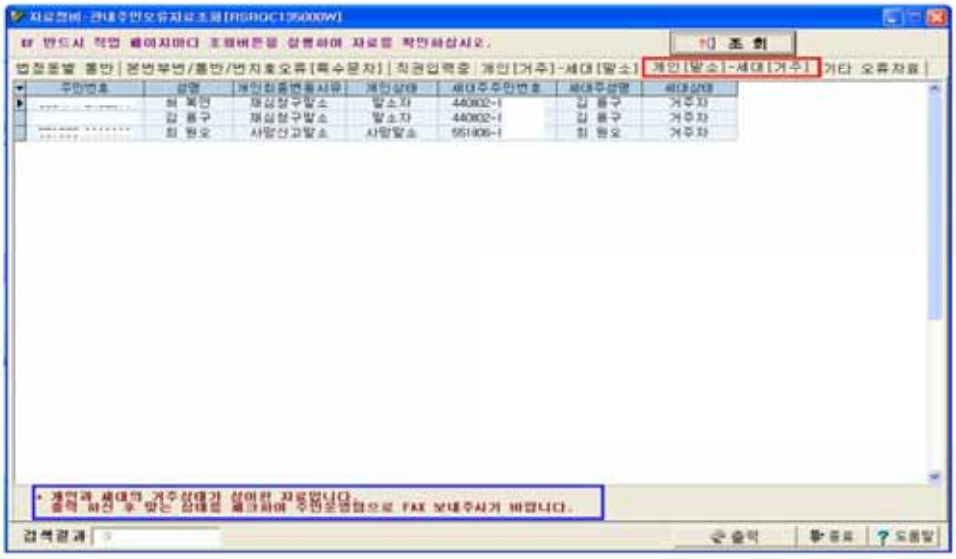


○ 반드시 **해당 작업영역 탭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어야 한다.

II.읍면동 담당자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 개인[말소]/세대[거주]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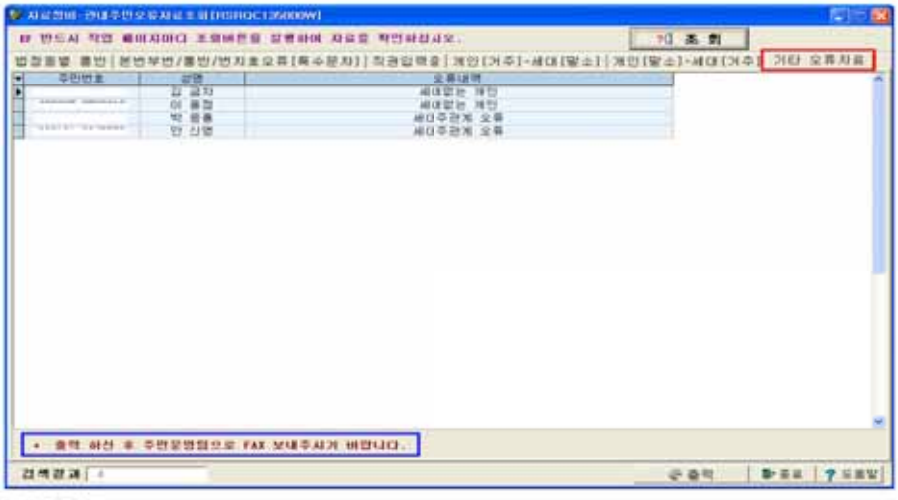
○ 반드시 **해당 작업영역 탭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한다.

26

II.읍면동 담당자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 기타오류자료

행정자치부



○ 오류유형

- 세대없는 개인: 세대자료가 없는 개인자료로서 열람 등 모든 주민등록업무에서 조회가 불가능
- 등록구분 누락: 거주자, 말소자 등과 같은 등록구분이 누락된 자료
- 세대주관계 오류: 개인의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자료

○ 직접 수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출력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FAX송신

27

Ⅱ.읍면동 담당자

14. 기타주소정비 -자료관리→명부관리→5210.세대별명부

행정자치부



○ 자료관리→명부관리 → 5210.세대별명부에서 주택명칭·층·호수(기타주소) 항목에 자료가 있는 대상자를 모두 조회

○ 등록구분이 **거주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출국신고자, 재외국민출국자, 재외국민거주불명자**를 각각 조회하여 지번주소 괄호()안에 표기되어있는 **주택명칭·층·호수**를 전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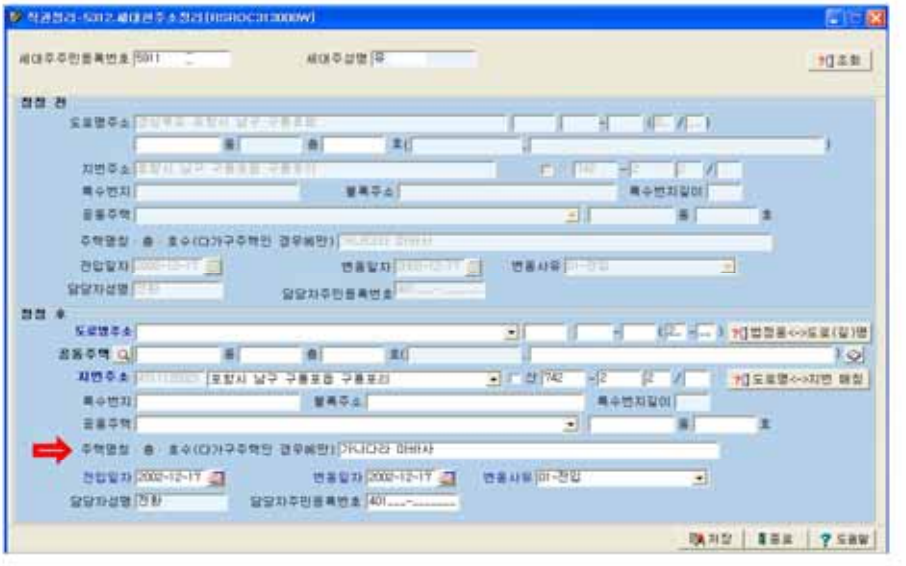
○ 기타주소란에 주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가 있는 경우, 수정대상자를 선택하고 **5312.세대현주소정리**버튼을 클릭하여 현주소의 주택명칭·층·호수(기타주소) 자료를 수정

28

Ⅱ.읍면동 담당자

14. 기타주소정비-5312.세대현주소정리

행정자치부



○ 주택명칭·층·호수(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항목에 불필요한 기재사항 삭제 후 저장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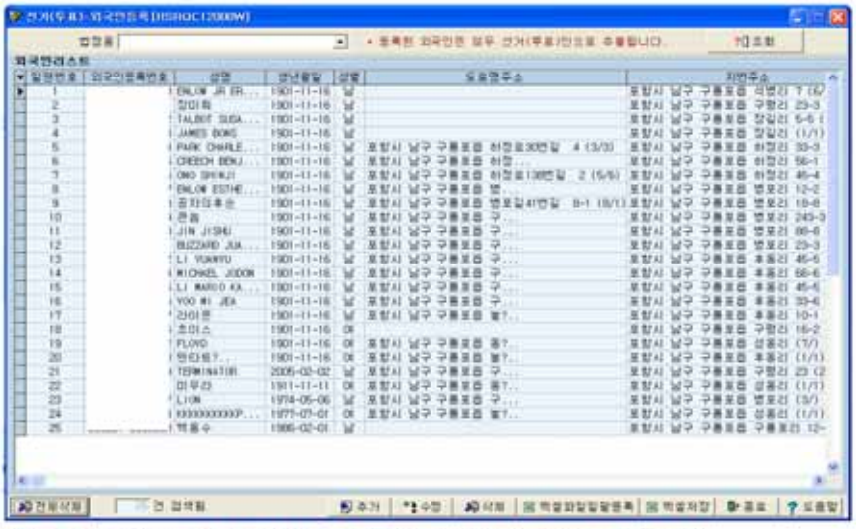
○ 반드시 화면을 닫고 다음 대상자 정비

29

II.읍면동 담당자

15. 9307.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조회

행정자치부



○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는 **외국인선거인을 등록한다.(대통령선거만 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음)**

○ 조회하고자 하는 법정동을 선택한다. **모두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동을 선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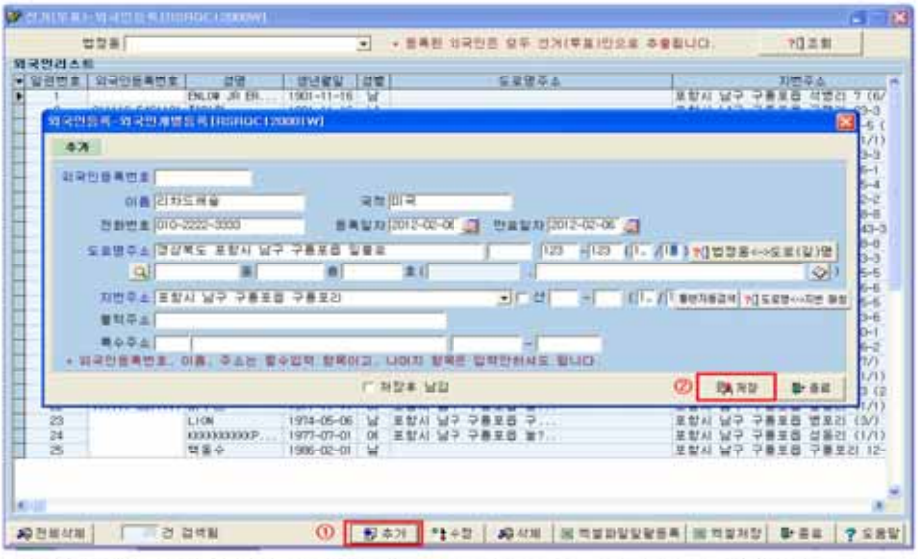
○ 엑셀파일로 일괄 등록한 경우 주소가 모두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동명을 선택하여 조회할 경우 누락될 수 있다.

30

II.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추가

행정자치부



○ 외국인선거인등록은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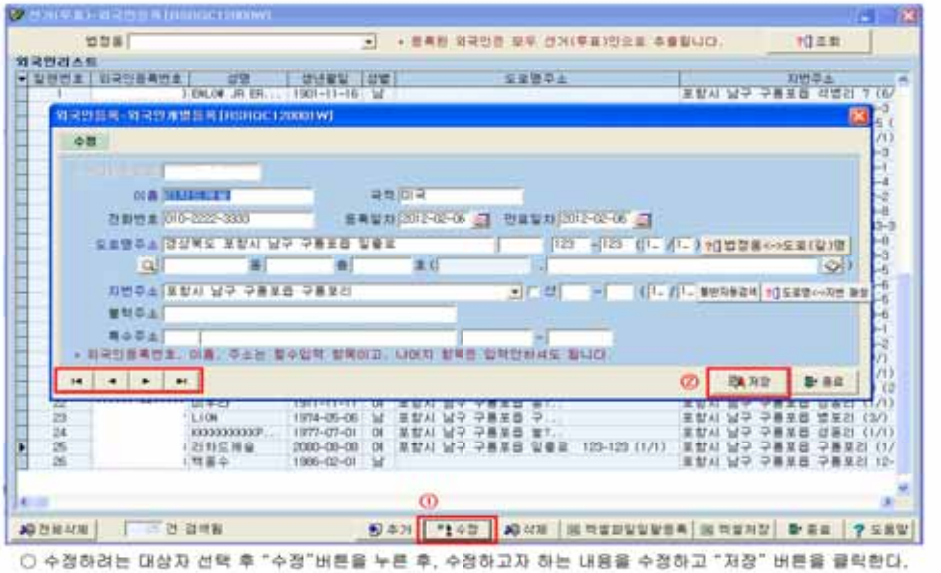
○ **등록된 외국인 대상자는 모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신중하게 입력한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만 등록함)**

31

Ⅱ.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수정

행정자치부



○ 수정하려는 대상자 선택 후 "수정"버튼을 누른 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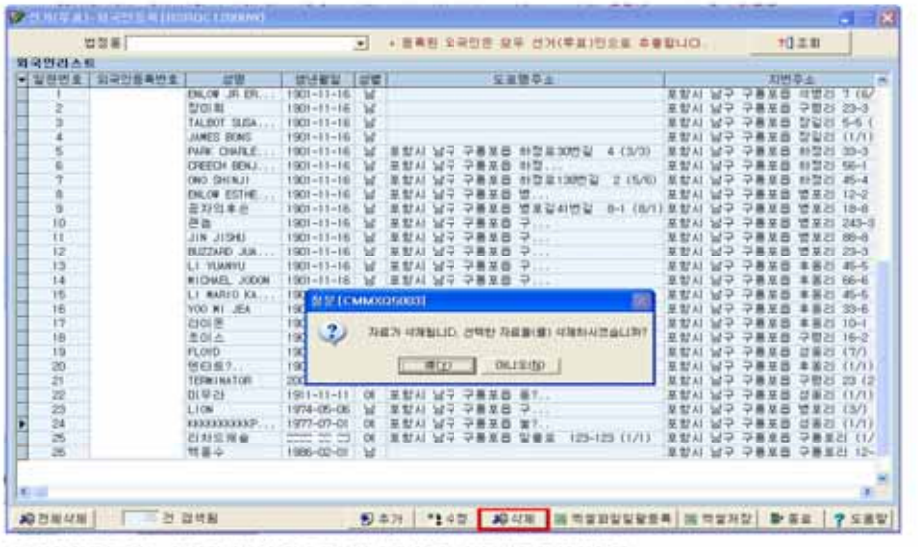
○ DB네비게이터를 이용해서 이전자료와 다음자료를 이동하면서 자료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32

Ⅱ.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삭제

행정자치부



○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외국인리스트에서 선택한 후, 삭제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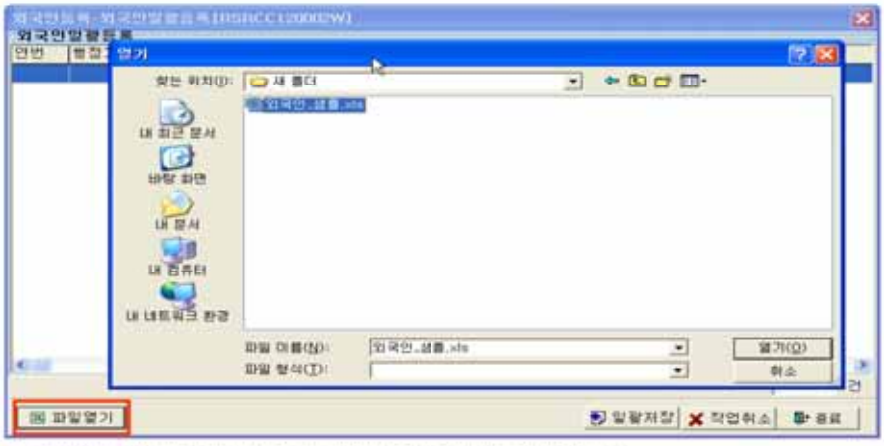
○ **외국인 대상자 중에 19세 미만인 대상자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삭제 처리한다.**

33

II.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일괄등록1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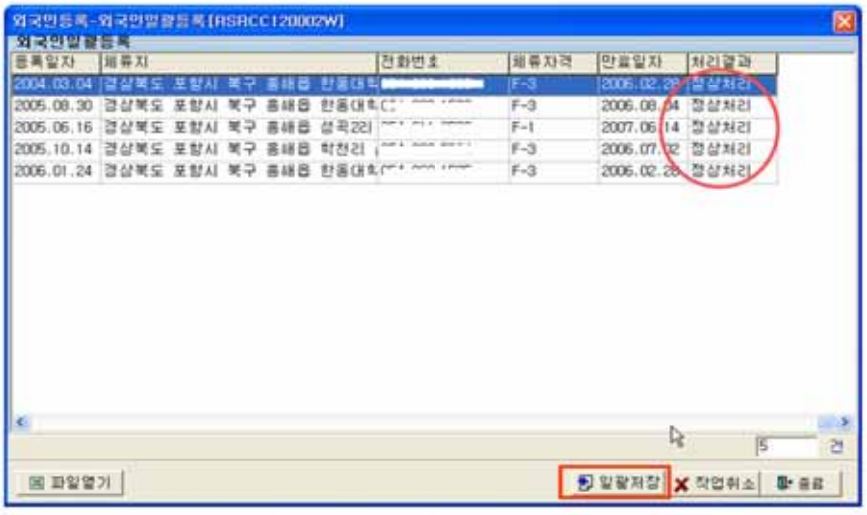
○ "파일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외국인 선거인 대상 엑셀파일을 읽는다.
○ 입력하고자 하는 엑셀파일에는 선거권자만 포함하는 파일이어야 한다.
☞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선거권자만 등록 (**시군구에서 파일 제공시 각읍면동별로 분류하여 제공해야함**)

○ 엑셀 칼럼순서 : 연번, 행정기관명, 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적, 등록일자, 체류지, 전화번호, 체류자격, 만료일자, 법정동코드, 도로명코드, 지하여부, 건물본번, 건물부번, 산구분, 번지, 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 데이터형식 : 등록번호: XXXXXX-XXXXXXX, 등록일자/만료일자: 2008.12.30.

II.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일괄등록2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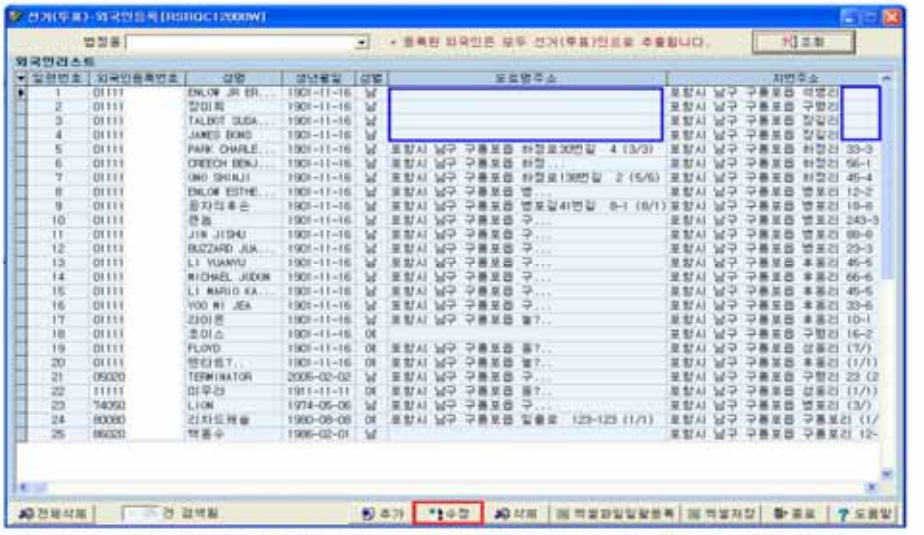


○ 엑셀파일의 내용과 그리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한다.
○ "일괄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처리결과가 '정상처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건별로 입력한다.

Ⅱ.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일괄등록3

행정자치부



○ 엑셀파일로 일괄등록 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주소(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동/층/호, 공동주택명, 통반)는 대상자 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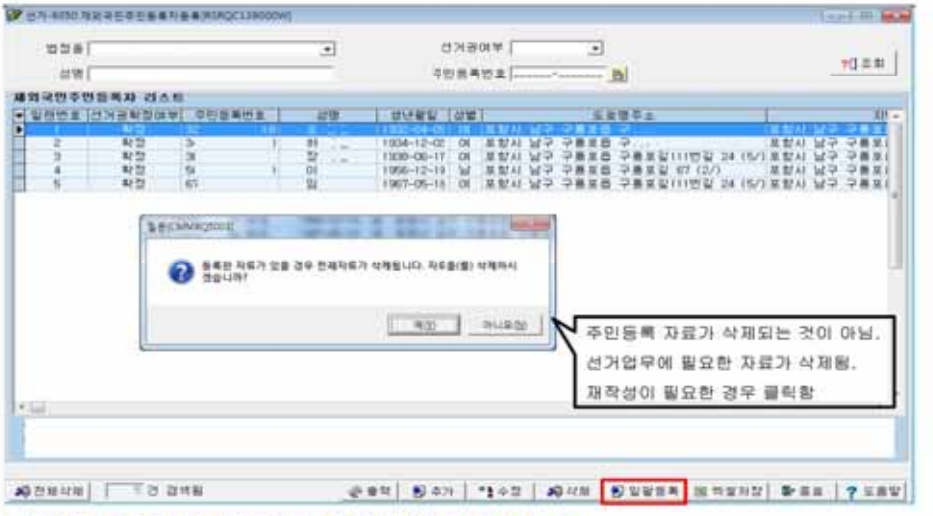
○ 선거인생성시 **법정동과 통반에 따라 해당 투표구에 배정**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36

Ⅱ.읍면동 담당자

16. 9308.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조회

행정자치부



○ **선거인명부 작성 전 관할 읍면동의 모든 재외국민주민등록자를 등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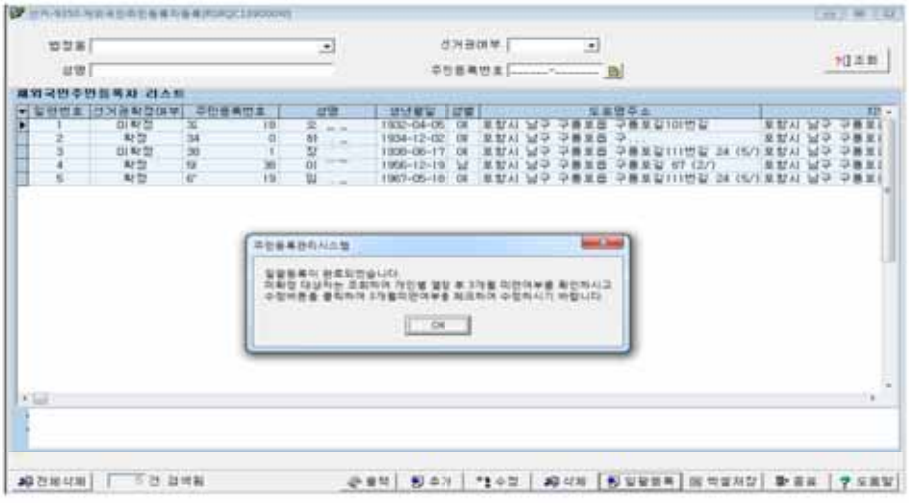
○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 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대상자는 삭제하고 버튼을 클릭 한 시점의 선거업무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데이터가 생성된다.(읍면동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작성 바로 직전에 작업해야 함)

37

II.읍면동 담당자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일괄등록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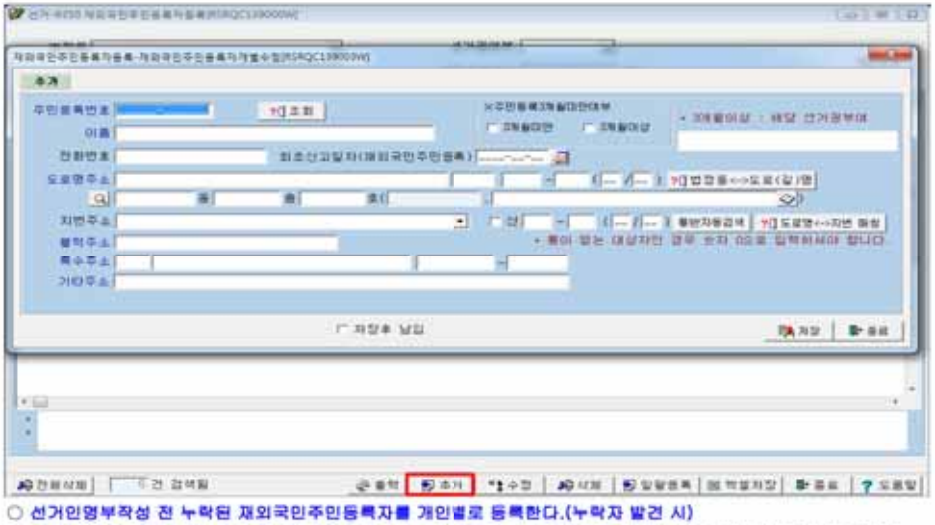


○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 후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나오는 메시지이다.
○ **선거권확정여부**
- **확정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작성기준일로부터 최초 등록된 날짜가 3개월 이상이 확실한 대상자.**
- **미확정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작성기준일로 부터 최초 등록된 날짜가 3개월 미만이므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II.읍면동 담당자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추가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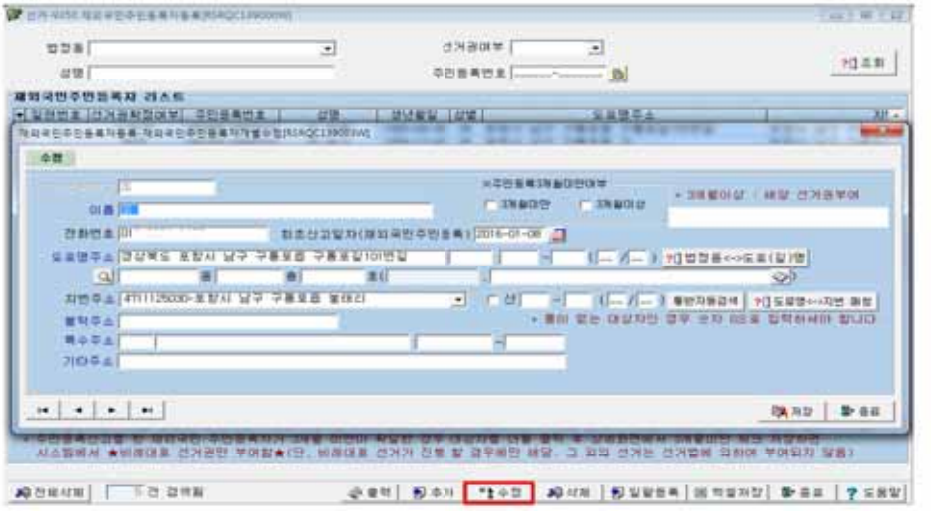


○ **선거인명부작성 전 누락된 재외국민주민등록자를 개인별로 등록한다.(누락자 발견 시)**
○ 건 별 입력은 "추가"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자료를 조회한다.
○ **필히!! 주민등록 3개월미만 여부(선거권 부여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체크함)와 최초 재외국민주민등록자로 등록한 날짜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Ⅱ.읍면동 담당자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수정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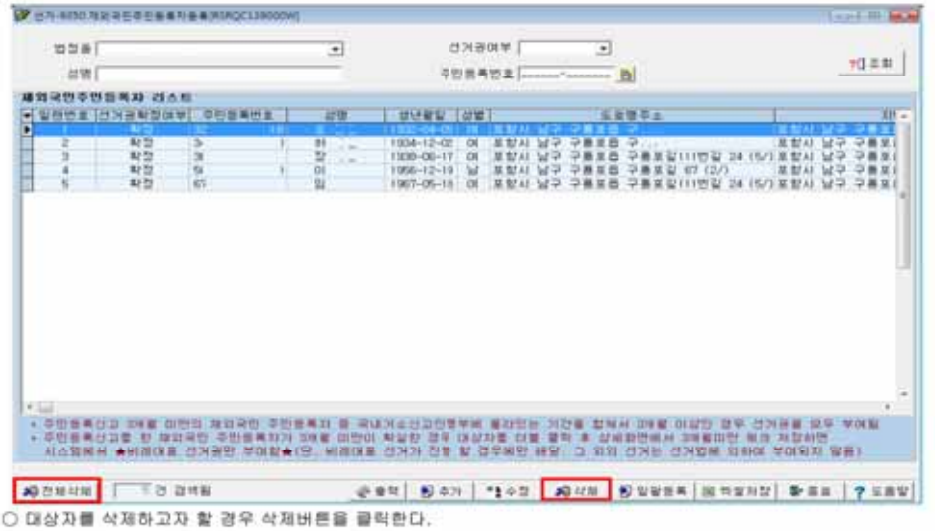
○ 일괄등록 후 누락된 재외국민주민등록자를 개인별로 등록한다.(예비명부 작성이후 전입자 등 누락자 발견 시)
○ 주민등록 3개월미만 여부(선거권 부여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체크함)를 체크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저장 후 화면을 닫으면 메인화면에서 선거권확정여부가 확정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한다.

40

Ⅱ.읍면동 담당자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삭제

행정자치부



○ 대상자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삭제버튼을 클릭한다.
○ 일괄로 삭제하고자 할 경우 전체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41

II.읍면동 담당자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 **재외국민주민등록자란?**

- 등록구분 :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출국신고자, 재외국민 출국자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에 대한 3개월 이상인 대상자**

1. 현재 주민등록자료에 등록구분이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인 경우
   1) 재외국민거주자로 재등록 한 일자가 2016년 12월 22일 이전인 경우
   : **3개월 이상 대상자.**
2. 현재 주민등록자료에 등록구분이 **재외국민 출국자**인 경우
   1) **거주자 → 국외이주통보, 현지이주통보 → 재외국민 출국자**
   : **3개월 이상 대상자.**
   2) **재외국민거주자 → 재외국민출국신고, 재외국민현지통보 → 재외국민 출국자**
   - 재외국민거주자로 재등록 한 일자가 2016년 12월 22일 이전인 경우
   : **3개월 이상 대상자.**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의 선거인명부 등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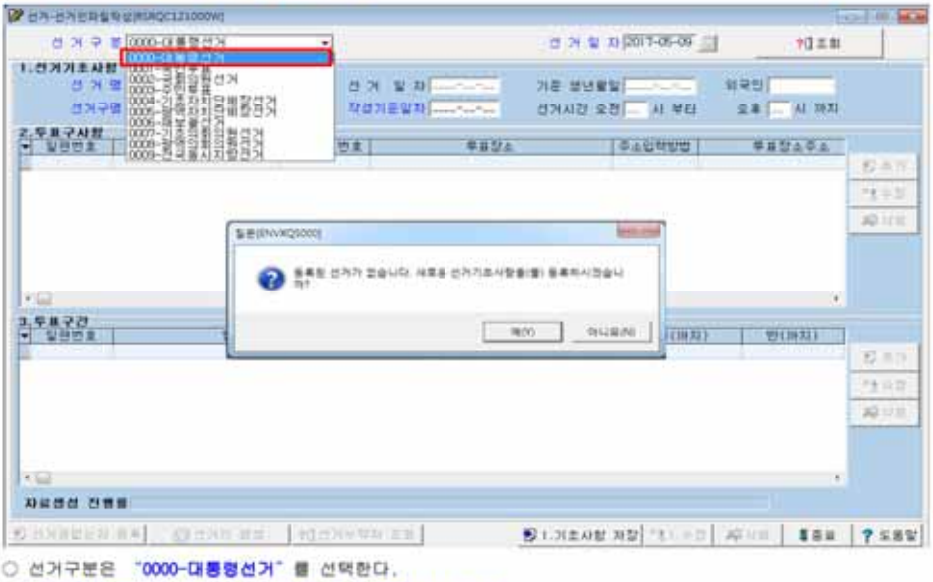
1. 명부등재 순서는 투표구별로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재외국민(재외국민주민등록자) →외국인 순이며,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 1인 1세대로 등록됨
2. 재외국민거주자가 세대주인 경우, 명부의 주민등록자란에는 차순위 세대원이 세대주로 표기됨

42

II.읍면동 담당자

17. 9311.선거인파일 작성 - 기초사항조회

행정자치부



○ 선거구분은 "0000-대통령선거" 를 선택한다.

○ **선거일자 "2017-05-09" 로 자동 출력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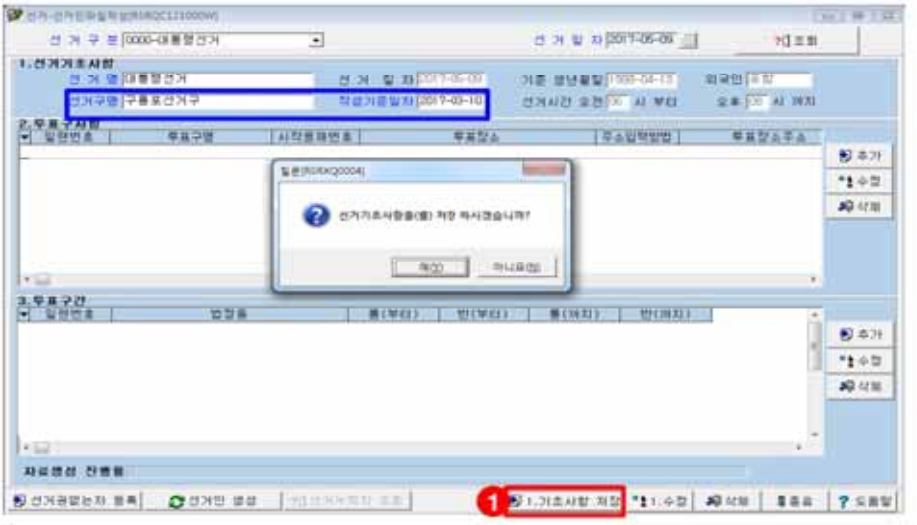
○ 등록된 선거가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예"를 선택한다.(기초사항 등록 후에는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음)

43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기초사항 입력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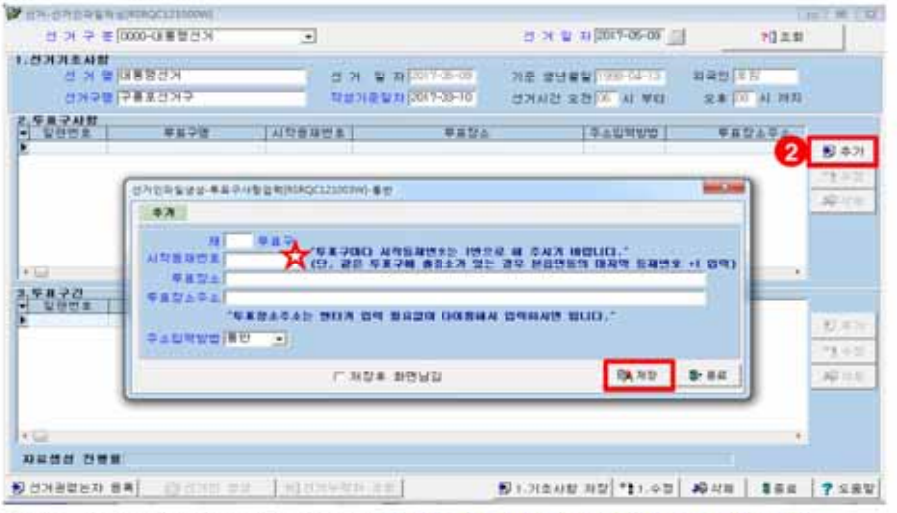


○ 선거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수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명칭을 수정한다.
○ 선거구명은 **해당 읍면동의 선거구명을 입력**(ex: 구룡포읍 선거구)한다.
○ 작성기준일은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일자가 입력됨)
○ 화면 하단의 "1.기초사항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선거기초사항이 저장된다.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사항 입력

행정자치부



○ 투표구, 시작등재번호, 투표장소를 입력한다. **(각 투표구별로 시작등재번호는 반드시 1을 입력한다.)**
○ 주소입력방법 "통반" 을 선택한다.
○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투표구가 저장된다.
○ 같은 방법으로 투표구를 전부 입력한다.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간 입력1

행정자치부



○ 투표구사항에서 **해당 투표구를 선택 한 후** 투표구간의 **"추가" 버튼을 누른다.**

○ 투표구에 해당하는 법정동을 선택한다. 선택한 법정동의 시작 통/반, 종료 통/반을 입력한다.

○ 시작 통/반을 입력할 때, 반이 입력되지 않은 대상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을 입력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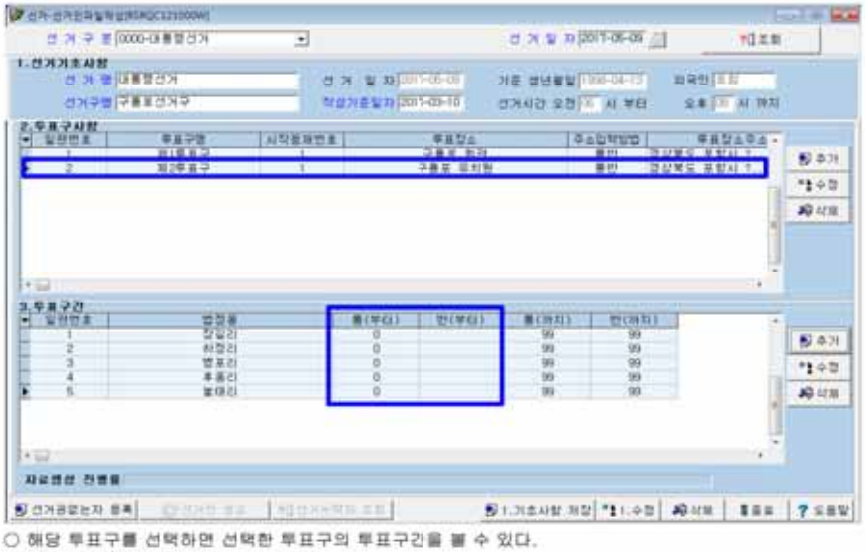
○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 사항을 저장하고, 다음 투표구간을 반복하여 입력한다.

46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간 입력2

행정자치부



○ 해당 투표구를 선택하면 선택한 투표구의 투표구간을 볼 수 있다.

○ 투표구간 입력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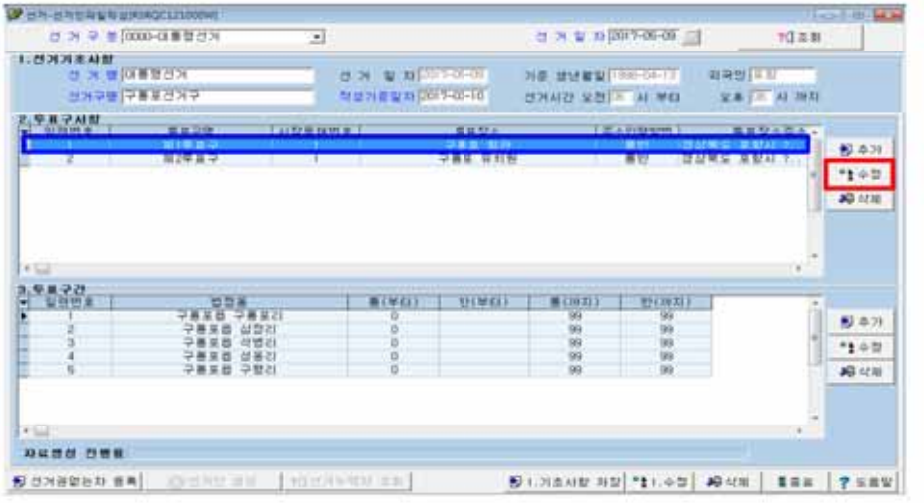
1. 반이 지정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경우는 **시작 범위의 반(부터)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비워놓는다.**
2. **통이 없는 세대가 있는 경우는 시작 통 범위에 0을 입력**하면 통이 없는 세대가 모두 포함된다.

47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사항 수정

행정자치부



○ **투표장소 변경 시**에는 투표구사항 란의 "수정" 버튼으로 해당 투표구의 투표장소를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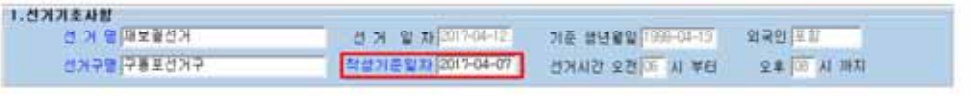
48

Ⅱ.읍면동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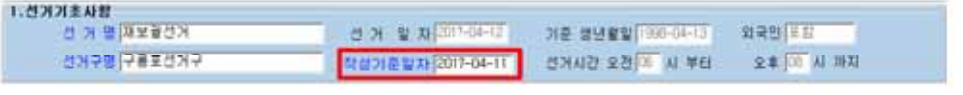
17. 선거인파일 작성 – 작성기준일 수정 방법

행정자치부

○ 예비명부를 "2017-04-07"에 작성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기준일자가 "2017-04-07"로 조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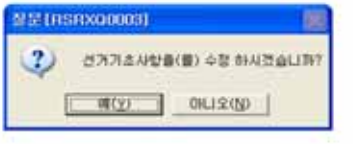
○ 작성기준일자를 본 명부작성일인 "2017-04-11"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아래 그림에 있는 "1.수정"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내용을 수정한다.



○ 반드시 "예"를 눌러서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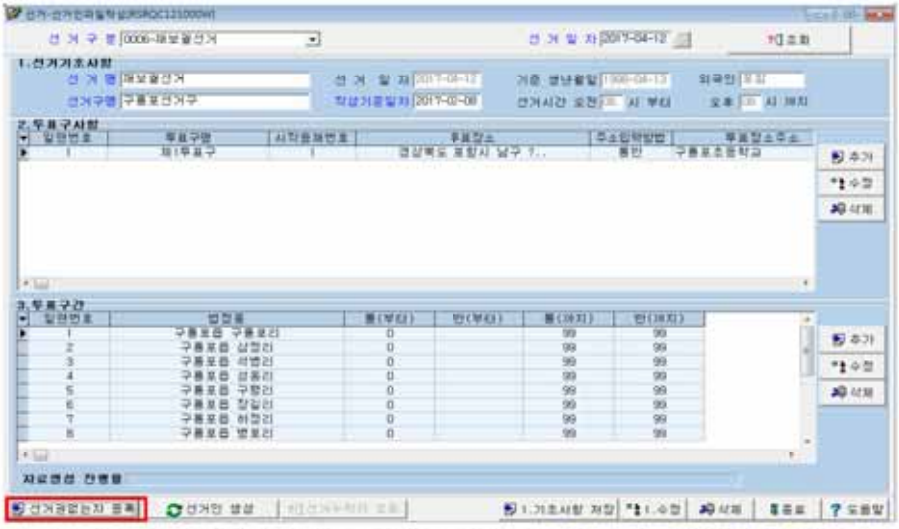


49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권없는자 선거인 선택

행정자치부



○ 선거권 없는 자 등록을 위해 선거권없는자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혹은, [9309]선거권없는자 등록업무에서 등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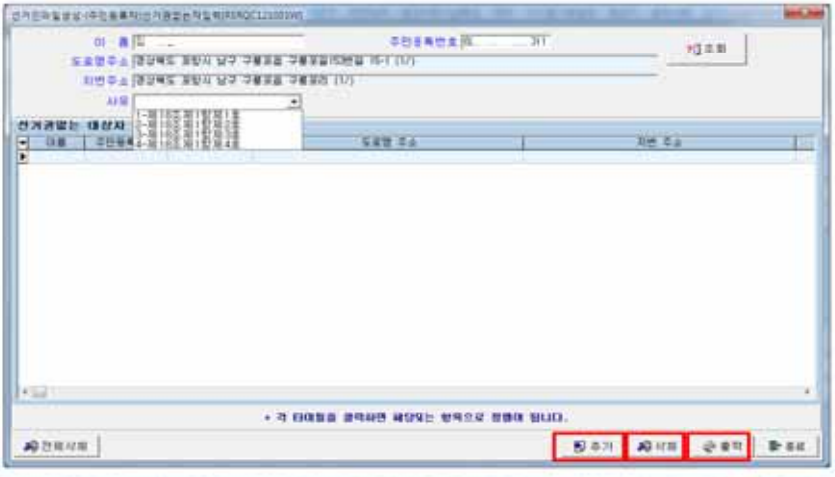
○ 선거권 없는 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도 주민등록자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50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선거권없는자 등록

행정자치부



○ 대상자를 조회하여 사유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선거권 없는 대상자 란에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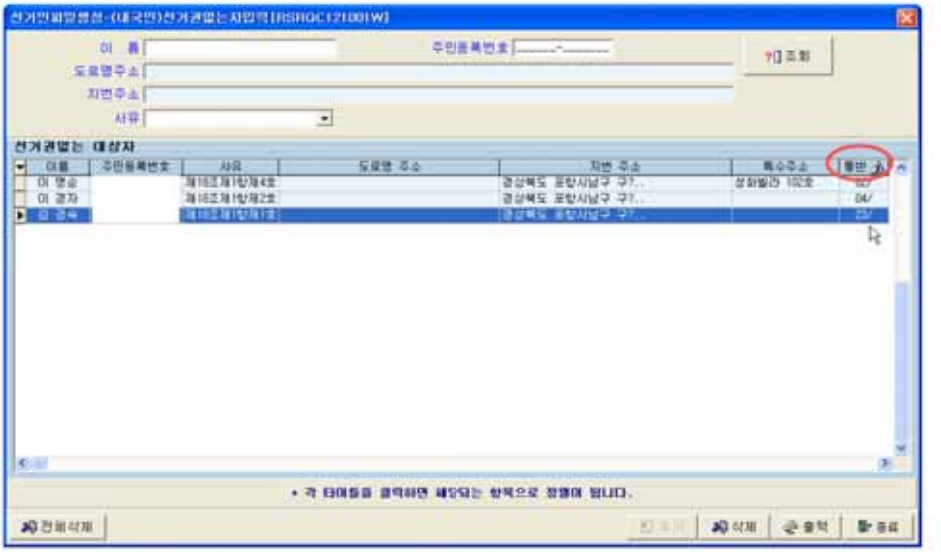
○ 삭제하고자 하면 대상자 리스트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에서 "삭제" 버튼을 누른다.

○ 선거권 없는 대상자를 출력하고자 하면 "출력"버튼을 눌러서 출력한다.

51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선거권없는자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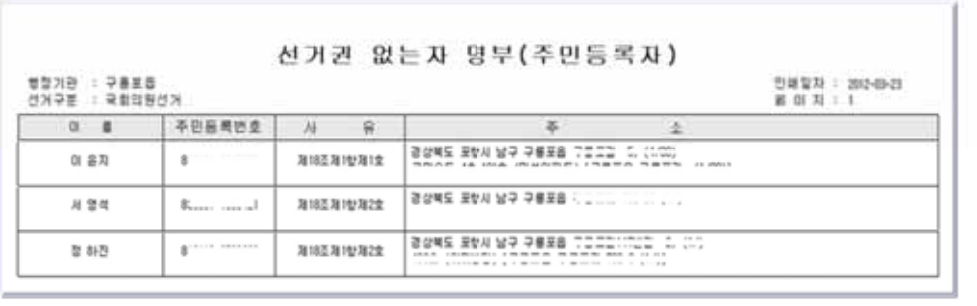


○ 대상자를 통,반 순으로 정렬하고자 할 경우, 조회 화면의 통반 타이틀을 클릭하여 재 정렬한다.

52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권없는자 명부 출력



선거권 없는자 명부(주민등록자)

행정기관 : 구룡포읍
선거구분 : 국회의원선거

인쇄일자 : 2012-09-28
쪽 이 지 : 1

이 름	주민등록번호	사 유	주 소
이 순자	8	제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서 영석	8	제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정 하진	8	제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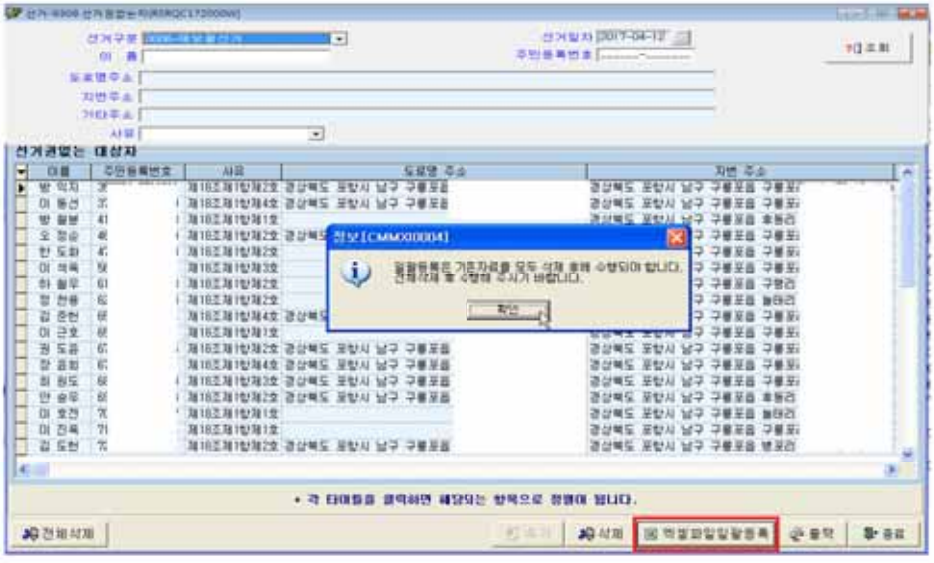
○ 선거권 없는 자 명부 출력의 미리보기 화면

53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1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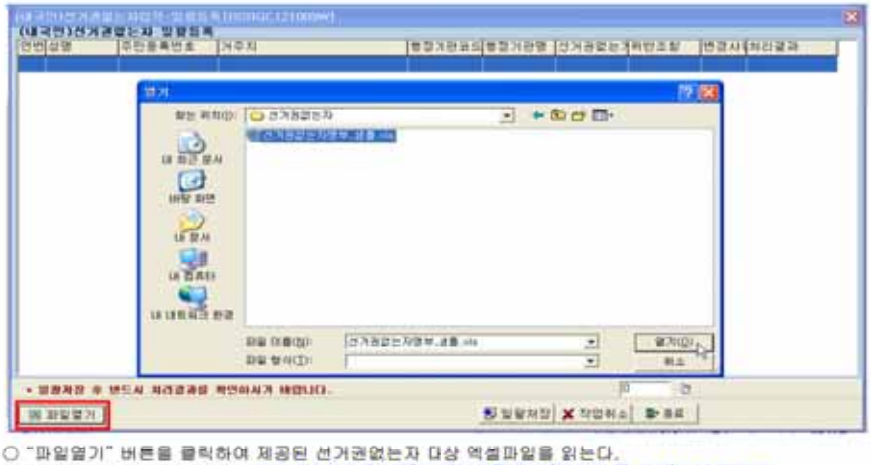
○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 시에는 기존자료를 모두 삭제 후에만 가능하므로, "전체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모두 삭제 후 수행한다.

56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2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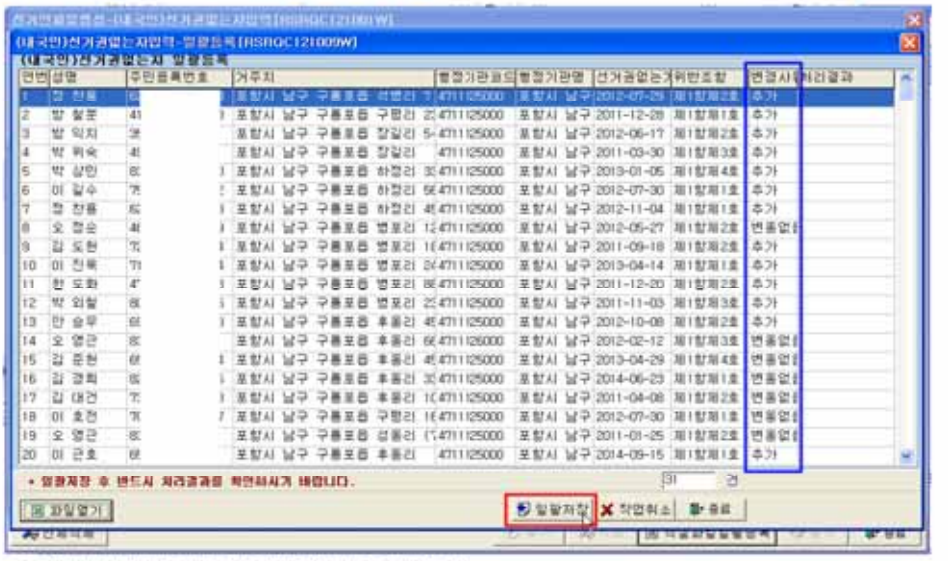
○ "파일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선거권없는자 대상 엑셀파일을 읽는다.
○ 입력하고자 하는 엑셀파일은 **변경사유란이 "삭제"인 대상자를 제외(대상자 줄 삭제)하여야 하며, 엑셀 칼럼을 아래 나열된 칼럼순서대로 조정한 파일이어야 한다.**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담당자로부터 제공된 엑셀파일을 선택한다.
(읍면동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엑셀파일을 내려받음)

○ 엑셀 칼럼순서 : 연번,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 거주지행정동코드, 거주지행정관서, 선거권없는기간, 공직선거법제18조 위반 조항, 변경사유

55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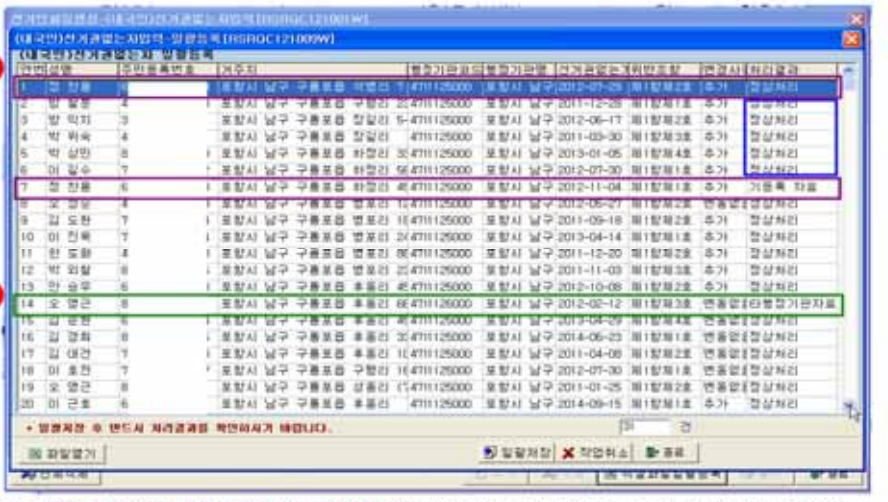
○ 엑셀파일의 내용과 그리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한다.

○ **"변경사유"가 "신규", "추가", "변동없음"만 등록**되며 "삭제"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56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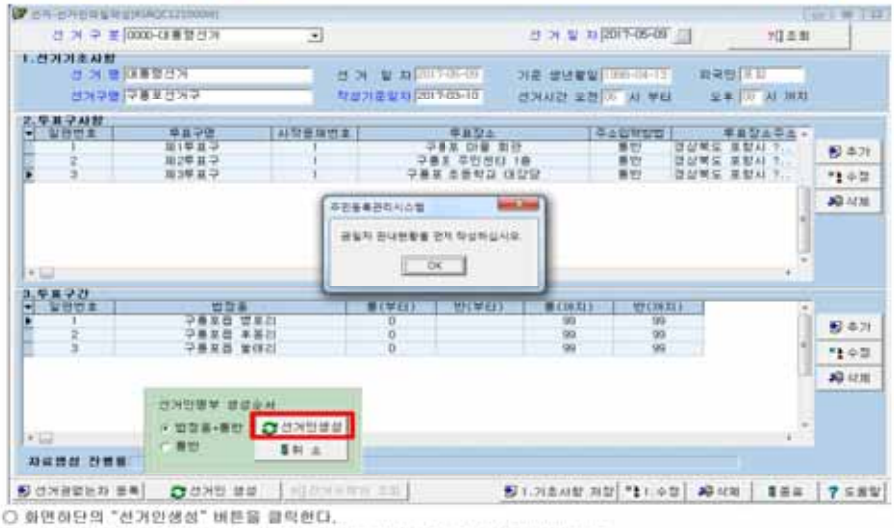
○ **한 사람이 위반조항이 다르게 2건 이상 존재하는 경우**, 처음 건으로 입력되고 다른 건들은 처리되지 않으며 이는 정상 처리된 것이다.

○ 처리결과가 **'타행정기관자료', '입력오류', '행정기관코드오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건별로 입력한다.

57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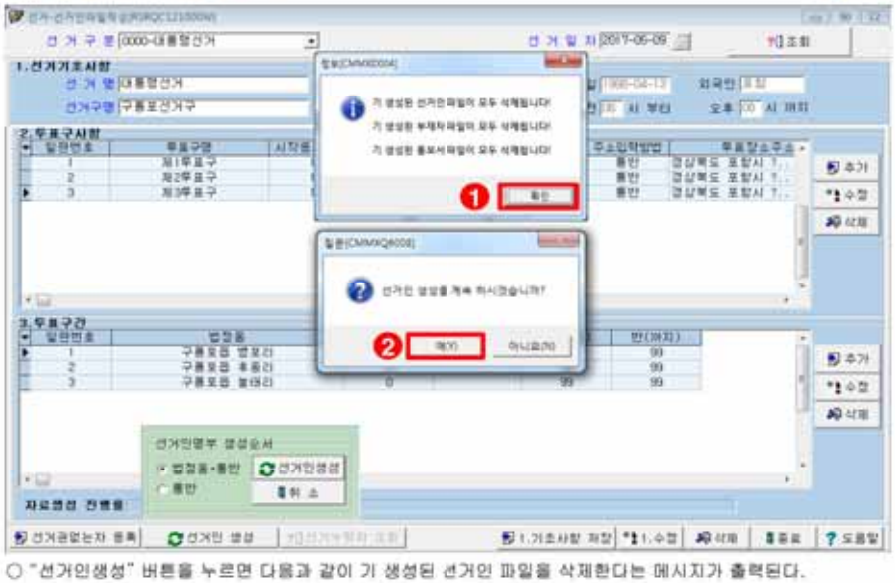


○ 화면하단의 "선거인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선거인생성"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 된다.
○ "선거인생성" 버튼을 누른다.
○ 만약 당일 관내현황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관내현황을 먼저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이럴 경우 [5410]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성"버튼을 클릭한 후 선거인생성 작업을 다시 한다.
○ 법정동을 무시하고 통반 순으로 투표구별 등재번호를 생성할 경우 "통반"을 선택한다.

58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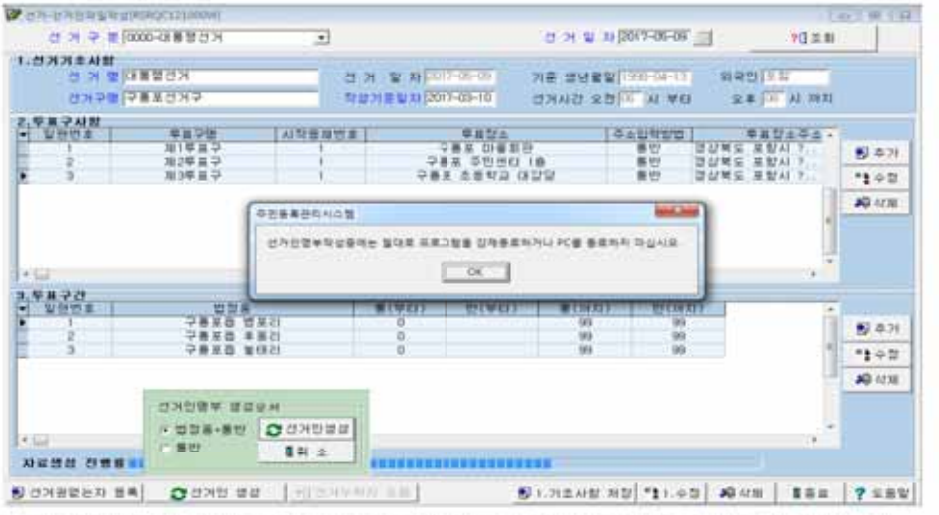
○ "선거인생성"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기 생성된 선거인 파일을 삭제한다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 "선거인 생성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에서 "예"를 선택한다.

59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이 멈춤

행정자치부



○ 선거인생성 중 위와 같이 화면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군구 서버에서 작업중으로 화면상에서만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 잠시 기다리면 다음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절대 PC를 끄 부팅하거나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면 안 된다.**

○ 작업을 강제 종료하거나 작업PC의 전원을 끄는 경우 해당 시군구 서버에 영향을 주어 작업시간이 더욱 느려질 수 있다.

60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누락자 조회

행정자치부



○ 누락자를 조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는 "[9312]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에 인구수가 맞지 않는다.

○ 누락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거누락자 조회" 버튼이 활성화되며 대상자를 조회 후 조치한다.

○ 누락자가 없이 완벽하게 선거인 명부가 생성된 경우에는 "선거누락자 조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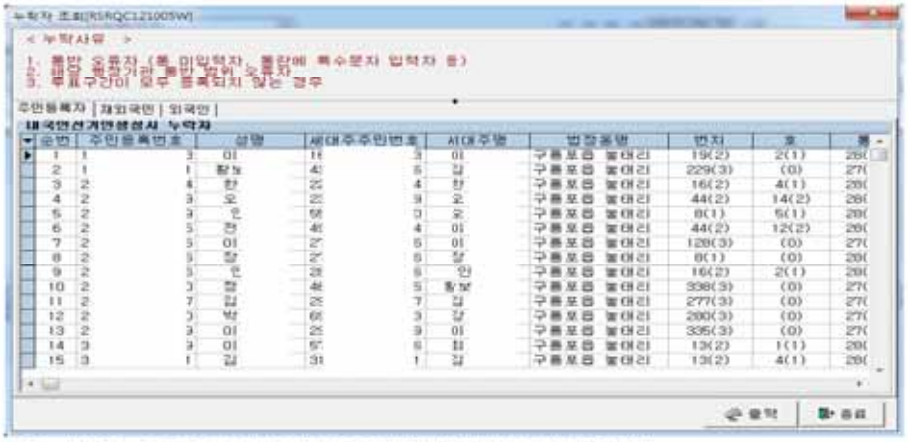
○ 반드시 누락자를 모두 조치한 후에 선거인생성을 재작성해야 한다.

61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 누락자 조회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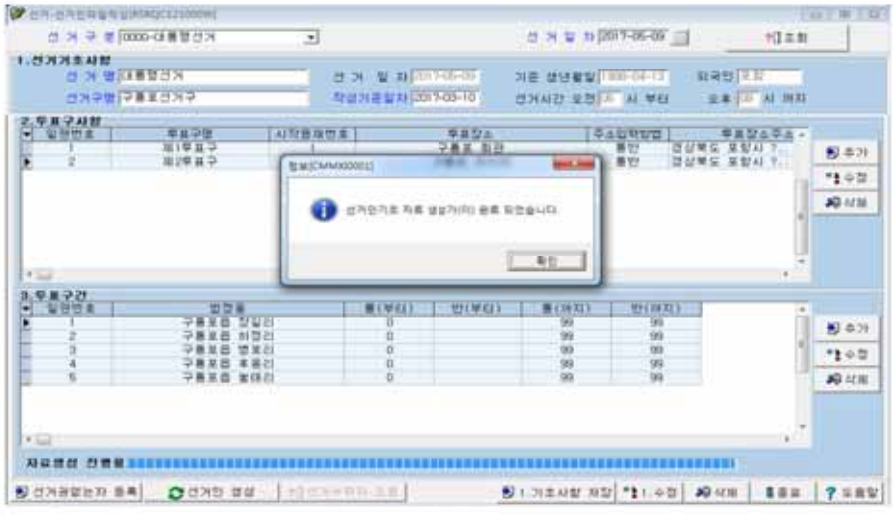
○ 누락사유는 투표구간에서 누락되거나 오류 통을 입력한 세대 등이 대부분이다.
우선 누락된 투표구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투표구간 입력을 완료한다.
○ 주민등록자(재외국민주민등록자 제외)인 경우 누락 세대의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관리->직권정리->[5312]세대현주소정리"** 업무에서 통반 수정한다.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인 경우는 [9308]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 업무에서 수정한다.**

62

II.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의 완료1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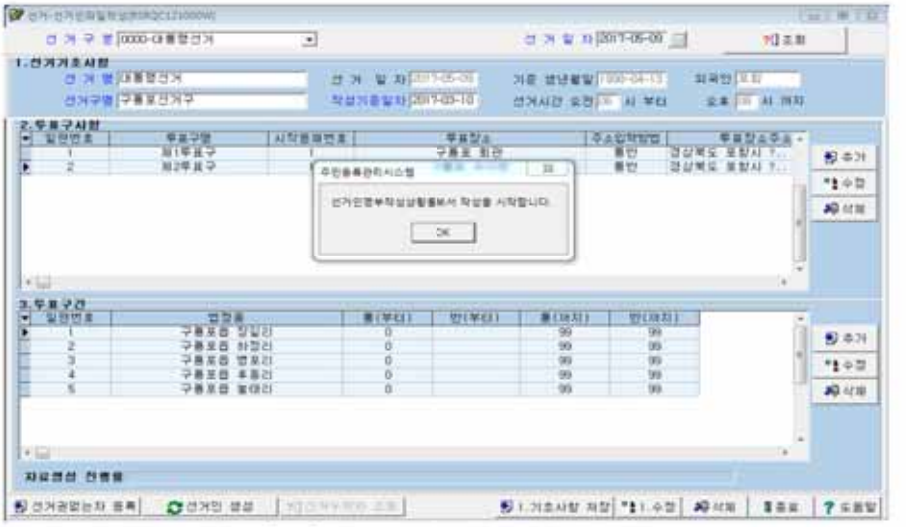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선거인명부 생성이 완료된 것이다.
1. **누락자가 없을 것 ("선거누락자조회" 버튼 비활성화)**
2. **자료생성 진행률 표시가 모두 끝까지 갈 것**
3. **생성 중에 어떤 오류메시지도 표시되지 않을 것**

63

Ⅱ.읍면동 담당자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의 완료2

행정자치부



○ **선거인명부 생성 완료 후**에는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구 담당자가 명부작성상황을 RIUS(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업무에서 확인할 수 없다.

64

Ⅱ.읍면동 담당자

18.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조회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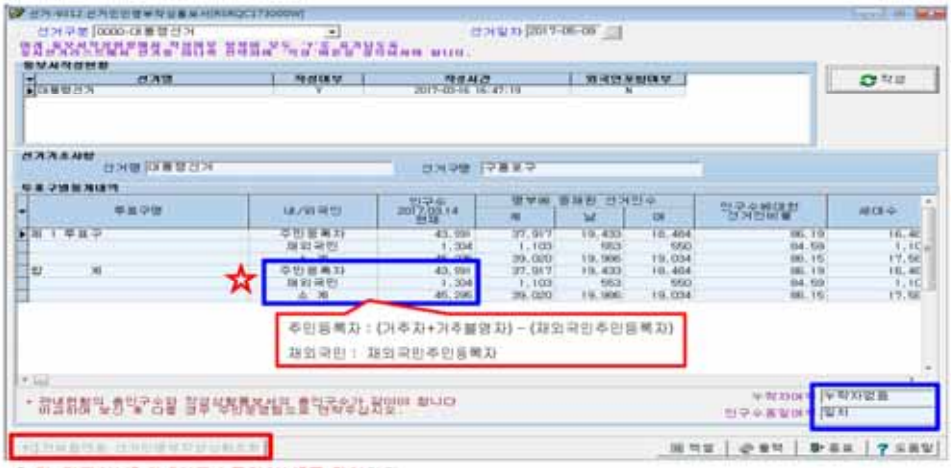
○ **작성상황통보서를 선거별로 작성할 수 있다.**
○ 선거구분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표시되고 실시되는 선거를 차례로 하나씩 선택하여 "작성" 버튼을 누른다.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기준의 기타통보서(선거인연령별현황)도 함께 일괄 작성된다.**

65

II.읍면동 담당자

18.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작성

행정자치부



○ **"누락자여부" 와 "인구수동일여부"를 확인**한다.

- **누락자가 존재할 경우** : 선거인생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누락자 조치 후 선거인생성을 재작성**한다.
- **인구수동일여부가 "불일치"일 경우** : ① 또는 ②로 조치
  - ① **[5410]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성"**버튼을 눌러 관내현황을 재작성 한후 **선거인생성을 재작성**한다.
  - ② **[9300]주민오류자료조회** 업무의 **법정동별통반 현황을 확인**한 후 투표구간 확인하여 **선거인생성을 재작성**한다.

○ 시.군.구 담당자는 "전체읍면동선거인명부작성상황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관할 읍.면.동의 명부작성상황을 일괄 점검한다. 또한 **RIUS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40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_외국인포함 작성상황집계가 가능하다.**

66

II.읍면동 담당자

18.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출력

행정자치부

선 거 명 : 대통령선거
선거구명 : 구룡포읍
통장기관 : 남구 구룡포읍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페이지 : 1

투표구명	인구수 (2017년 03월 14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대한 선거인수비율 (%)	세대수	비고
		계	남	여			
제 1 투표구	45,295 (1,304)	39,020 (1,103)	19,986 (553)	19,034 (550)	86.15 (84.59)	17,589 (1,103)	
합 계	45,295 (1,304)	39,020 (1,103)	19,986 (553)	19,034 (550)	86.15 (84.59)	17,589 (1,103)	

○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를 출력한다.

○ 출력물 왼쪽 상단에 선거명이 표기된다.

○ 윗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 )안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 대통령선거인 경우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수)**
- 재보궐 선거(지방선거)인 경우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수 / 외국인수)**

67

Ⅱ.읍면동 담당자

19. 선거인명부 출력 – 선거인명부 조회

행정자치부



○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명부 자료가 화면에 조회되고 "연속용지출력" 버튼과 "A4용지 출력"버튼이 활성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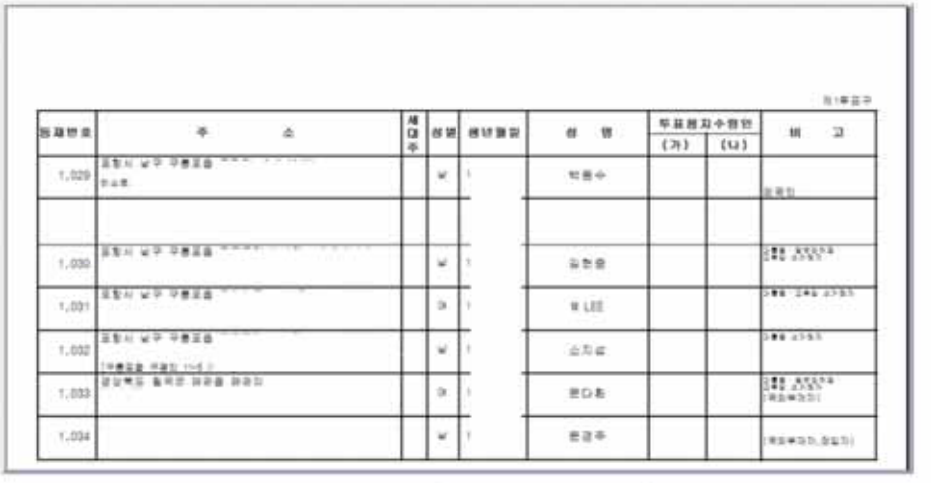
○ 통 별로 페이지를 나누어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별로 페이지분리하여 출력하기" 체크박스를 체크한다.

68

Ⅱ.읍면동 담당자

19. 선거인명부 출력 – A4용지 출력

행정자치부



○ 상단의 프린터(출력) 아이콘을 이용하여 출력한다.(한 페이지에 10명씩 인쇄)

○ 하단의 %와 Page 1 of 478 는 출력할 페이지를 의미한다. **화면 맨 하단 좌측의 %가 100%까지 진행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출력** 작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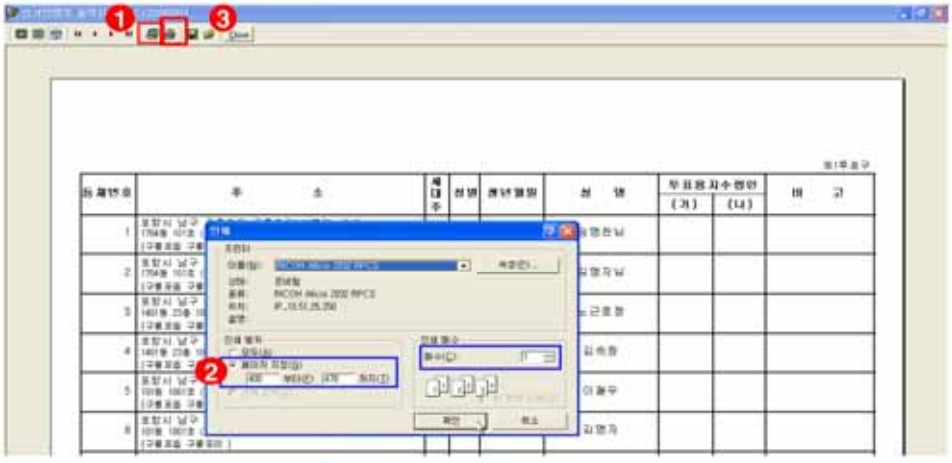
○ **주민등록자(재외국민제외), 모든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재외국민주민등록자), 외국인, 일부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순으로 출력된다.**

69

II.읍면동 담당자

19. 선거인명부 출력 – 페이지지정 출력

행정자치부



○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 옆에 ① **"프린터설정" 아이콘**을 누른다.
○ 인쇄범위의 페이지 지정에 ② 페이지 범위를 설정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원하는 페이지를 설정한다.
○ 인쇄매수 또한 1매에서 지정매수까지 지정 할 수 있다.
○ 상단의 ③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프린터설정에서 **지정한 페이지를 출력**한다.

70

II.읍면동 담당자

19. 선거인명부 출력 – 기타통보서(연령별 등재인구) 출력

행정자치부

선거인 연령별 현황

구 분	내/외국인	성별	합 계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70세 이상	비 고
합 계	-	-	7,550	88	794	788	1,108	1,812	1,442	1,542	
소 계	내국인	남자	3,833	50	458	499	651	927	681	567	
소 계	내국인	여자	3,661	38	320	261	447	882	760	953	
소 계	재외국민	남자	14	0	4	2	5	1	1	1	
소 계	재외국민	여자	18	0	1	2	3	2	0	0	
소 계	외국인	남자	19	0	1	1	0	0	0	17	
소 계	외국인	여자	5	0	0	1	0	0	0	4	
1 투표구	내국인	남자	2,424	38	307	329	381	601	432	336	
1 투표구	내국인	여자	2,343	27	221	170	286	589	491	559	
1 투표구	재외국민	남자	4	0	1	2	1	0	0	0	
1 투표구	재외국민	여자	2	0	0	0	2	0	0	0	
1 투표구	외국인	남자	2	0	1	0	0	0	0	1	
1 투표구	외국인	여자	3	0	0	1	0	0	0	2	
2 투표구	내국인	남자	368	5	26	43	72	79	68	77	
2 투표구	내국인	여자	390	1	22	18	35	72	89	153	

최고령자
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illegible] 허 복연 111 세(1900.04.17)
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illegible] 111 세(1901.11.16)

페이지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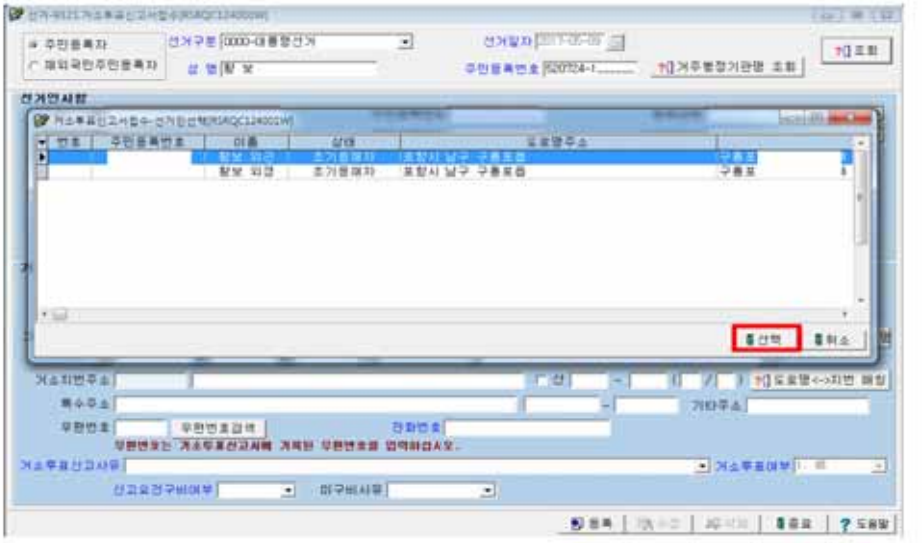
○ "기타통보서출력" 버튼에서 기타통보서-->출력(Y)을 선택하면 선거인 연령별 현황이 위와 같이 출력된다.
○ "기타통보서출력" 버튼에서 기타통보서-->엑셀(Z)을 선택하면 엑셀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진다.
○ 시.군.구 담당자는 **RIUS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70 선거인명부기타통보서_외국인포함에서 기타통보서 집계가 가능하다.**

71

Ⅱ.읍면동 담당자

20. 9321.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1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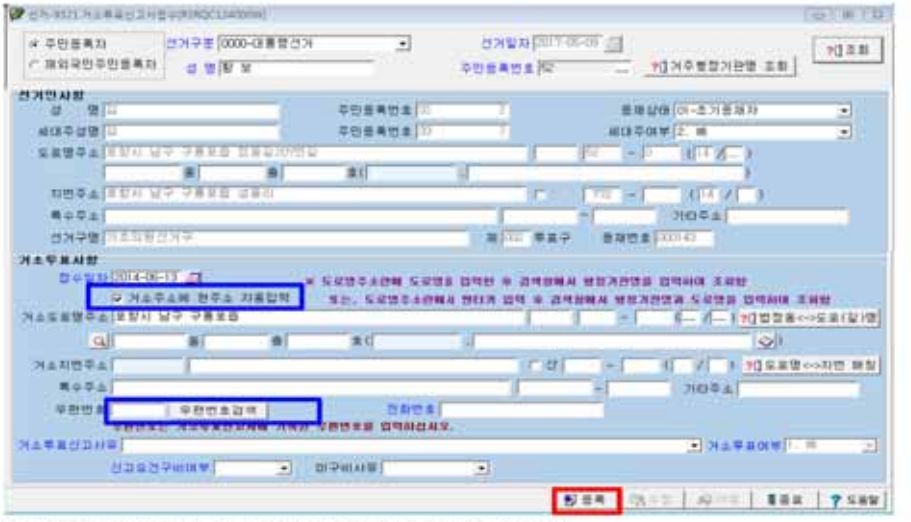
○ 선거구분을 선택한다.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6자리)+성별(1자리)+'000000'로 입력하여 접수처리 하며 신고요건구비여부는 미구비로 한다.

72

Ⅱ.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2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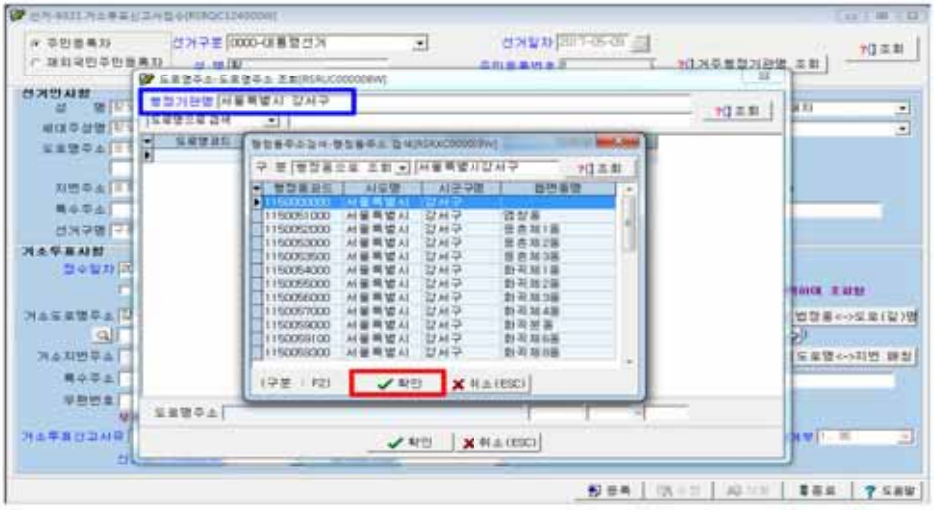
○ 대상자를 조회하면 투표인 사항이 조회되고 거소투표사항을 입력한다.
○ 거소투표여부는 "1.예"로 자동 출력된다.
○ 거소주소가 현주소와 같을 경우 현주소를 거소주소에 자동으로 입력시킬 수 있다. 거소주소가 다를 경우 직접 입력한다.
○ **우편번호는 접수된 내역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접수내역에 없을 경우는 도로명주소에서 검색해서 입력한다.

73

Ⅱ.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2(도로명주소)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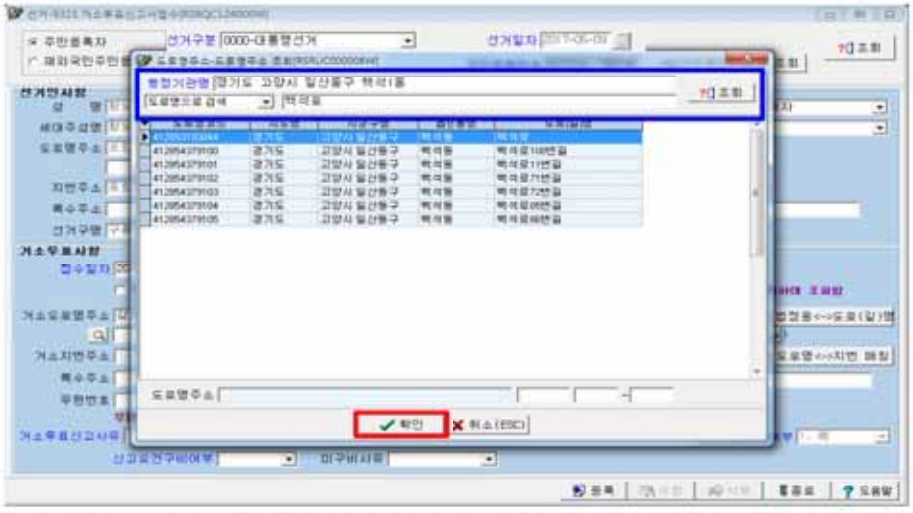
○ 거소투표신고자의 도로명주소를 입력 시 행정기관명을 입력 후 엔터키 입력을 하면 도로명주소를 조회하는 화면이 나온다.
○ 행정기관명을 입력 후 엔터키 입력을 하면 행정동주소 검색 화면창이 나오고 해당 행정기관을 선택한다.

74

Ⅱ.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2(도로명주소)

행정자치부



○ 행정기관명이 입력된 상태에서 "도로명으로 검색"으로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도로명주소가 검색된다.
○ 도로명주소 선택 후 지하구분/본번/부번을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75

Ⅱ.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거소주소 입력

행정자치부



○ 거소주소를 직접 입력 시 거소주소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반드시 **법정동 주소 입력 창에서** 선택하여 입력한다.
(입력란에서 명칭 일부만 입력하거나 엔터키를 누르면 별도창이 활성화되어 선택할 수 있다)
○ 전화번호, 거소투표신고사유, 신고요건구비여부 사항을 입력한다.
○ 신고요건구비여부가 "아니오"일 경우에는 미구비사유를 입력한다.

76

Ⅱ.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등록

행정자치부



○ 파란색은 필수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모두 입력해야 한다.
○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 확인 창이 뜨고 "예"를 누르면 거소투표 접수내역이 등록된다.
○ **세대주가 거소투표신고인으로 접수되면 세대주여부는 "아니오"로 변경된다.(세대원 중 차순위자가 세대주가 된다)**

77

II.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주의사항1

행정자치부

☞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비거주등재자"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본명부 작성일(4월 11일) 명부생성 시 명부에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며,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이므로 다음을 참조한다.

1) 만19세 미만인 자

2) 선거권없는자

3) 본 명부 작성일 (4월 11일) 이후 전입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라도 거소투표접수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우편물을 반송한 경우 제외),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에서 신고서 내용 그대로 등록해야 한다.
(유효한 거소투표로 처리되지 않음)

78

II.읍면동 담당자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주의사항2

행정자치부

☞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선거인명부에 미 등재된 자 입력하는 방법

선거인파일 작성기준일 이전에 말소된 대상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안된 상태에서 거소투표 신고접수를 하였을 경우 (단,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말소자인 경우로 가정하여)

1) 작성기준일자의 주소지에 재등록한다.

2) [9341.선거인명부 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 작업을 선택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 시킨다.
이때, 거소투표신고서를 이미 접수했으면 선거인명부 등재 전 입력한 거소투표신고서 내역을 먼저 삭제한다.

3) 본 명부 작성시 출력한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등재 시킨다.

4) [9321.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업무에서 거소투표 신고내역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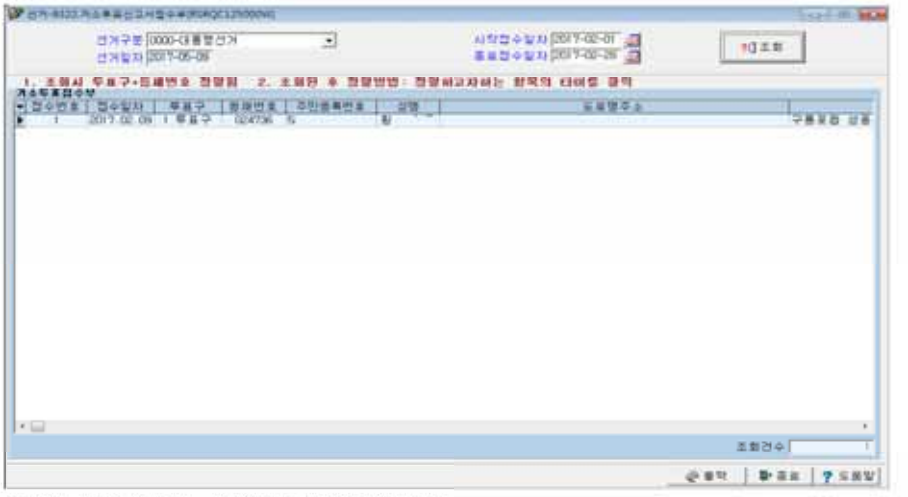
5) 거소투표 입력 마감 후 [9312.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업무에서 "작성" 버튼을 이용하여 통보서를 재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만 작성한다.**
재 작성하지 않으면 각종 통보서(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에 선거인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79

Ⅱ.읍면동 담당자

21. 9322.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조회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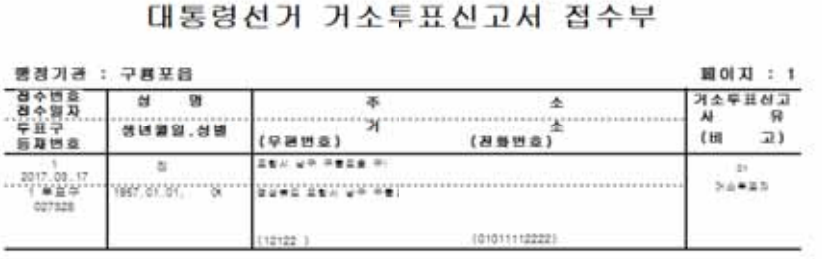
○ 선거구분을 선택한다.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시작접수일자는 해당월의 1일이고 종료접수일자는 해당월의 마지막 일자가 기본으로 표시된다.
접수일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해당일자를 변경한다.
○ "조회"버튼을 눌러 해당 접수 내역을 조회한다.

80

Ⅱ.읍면동 담당자

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출력

행정자치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

명칭기관 : 구룡포읍 페이지 : 1

접수번호 접수일자 투표구 등재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거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거소투표신고 사 유 (비 고)
1 2017.03.17 (월요일) 027328	정 1957.01.01.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 (12122) (01011112222)	01 거소투표자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도로명주소만 표기된다.(단 도로명 주소가 없을 시 지번주소 표기)
○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난다.
○ A4 용지 출력만 가능하고 한 페이지에 8명씩 출력된다.

81

II.읍면동 담당자

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참고사항

행정자치부

☞ 부등재 거소투표 특정대상자 접수내역 확인방법

부등재거소투표자란 ?
관할동 선거인이 아닌데 거소투표신고서가 접수되어 접수를 한 대상자

추후 특정 대상자 확인을 할 때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명만 알고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주로 생년월일+성별+000000)를 모르는 경우

1) [9322.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업무에서 조회 후 조회결과 표의 "투표구" 타이틀을 클릭 하여 투표구별로 정렬한다.

2) 상단에 조회되는 대상자들로 투표구와 등재번호가 공란으로 조회되는 대상자들이 "부등재 거소투표자"이므로, 특정대상자 성명이 해당자들 중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성명 옆 주민 등록번호를 확인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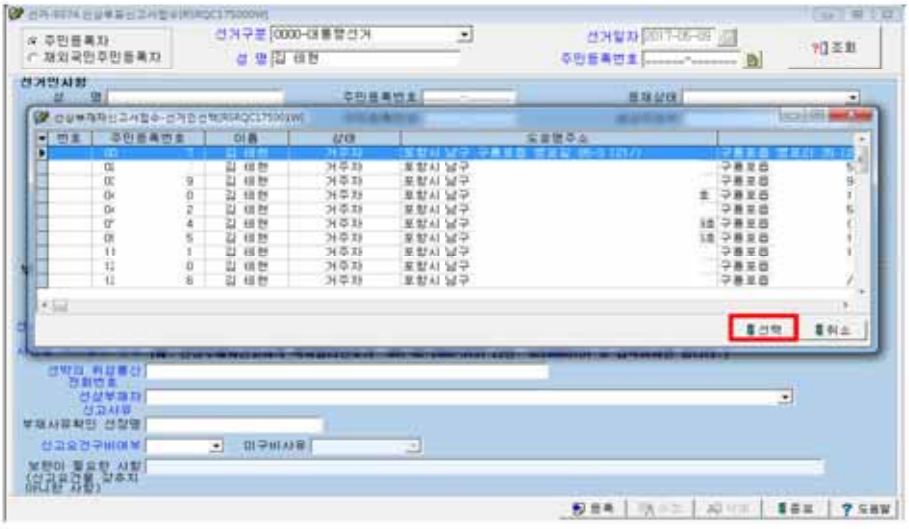
3)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 업무에서 2번에서 확인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조회조건에 입력 후 조회한다.

82

II.읍면동 담당자

22. 9323.선상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1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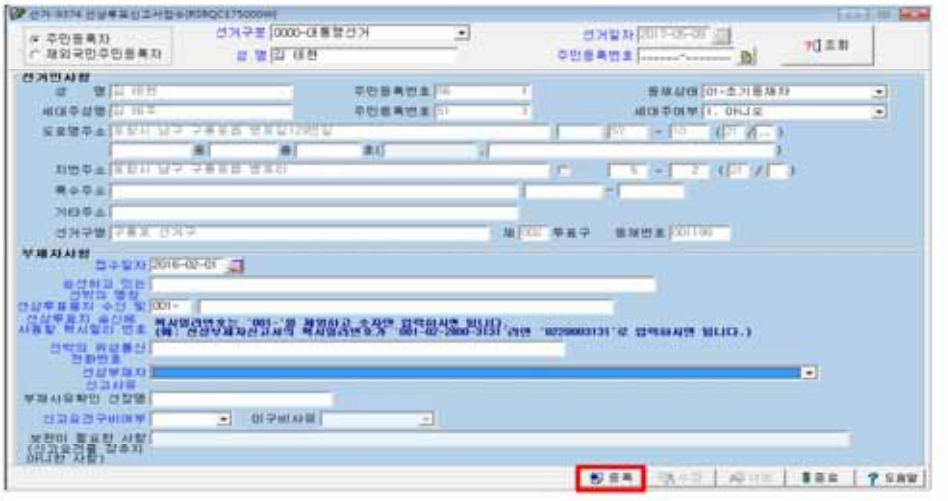
○ 선거구분을 선택한다.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6자리)+성별(1자리)+'000000'로 입력하여 접수처리 하며 신고요건구비여부는 미구비로 한다.

83

Ⅱ.읍면동 담당자

22. 선상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2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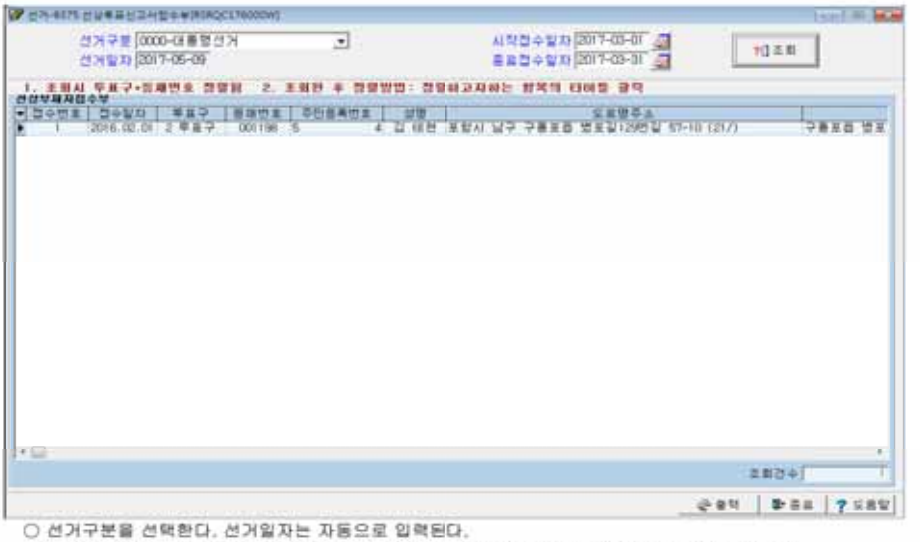
○ 대상자를 조회하면 투표인 사항이 조회되고 선상투표사항을 입력한다.
○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요건구비여부를 '예' 또는 '아니요'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가 선상투표자로 등록되며 9375.선상투표신고접수부 메뉴에서 조회하여 확인한다.

86

Ⅱ.읍면동 담당자

23. 9324.선상투표신고서접수부 – 조회

행정자치부



○ 선거구분을 선택한다.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시작접수일자는 해당월의 1일이고 종료접수일자는 해당월의 마지막 일자가 기본으로 표시된다.
접수일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해당일자를 변경한다.
○ "조회"버튼을 눌러 해당 접수 내역을 조회한다.

85

II.읍면동 담당자

23. 선상투표신고서접수부 – 출력

행정자치부

대통령선거 선상부재자신고서 접수부

관정기관 : 구룡포읍 페이지 :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 명	주 소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선상부재자 신고 사유
투표구 등재번호	생년월일.성별	(국시일련번호) (위성통신전화번호) 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항	(비 고)
1 2017.05.17	[illegible]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illegible]	[illegible]
		통리번호 통리명	
1 투표구 006402	1967.01.05 [illegible]	001-20009151 12466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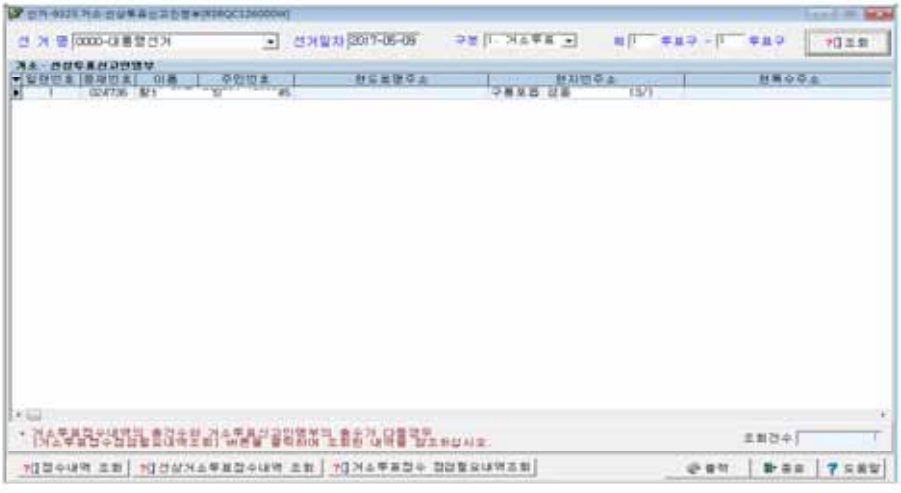
○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으로 도로명 주소만 표기된다.(단 도로명 주소가 없을 시 지번주소 표기)
○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난다.
○ A4 용지 출력만 가능하고 한 페이지에 8명씩 출력된다.

86

II.읍면동 담당자

24. 9325.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조회

행정자치부



○ 선거명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할 투표구간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시 **미구비사유가 입력된 대상자는 접수부에는 출력되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는 출력 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인명부 미 등재 거소투표자도 접수부에는 출력이 되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는 출력되지 않는다.**

87

Ⅱ.읍면동 담당자

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출력

행정자치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통 재 번 호	선거인명부등재번호 / 거소투표접수일시	성 명 / 생년월일,성별	주 소 / 거 소 (우편번호)	비 고
1	24,736 / 2017.02.09	홍 / 1985	[redacted]	01

○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출력이 된다.

○ 거소투표 신고인명부는 A4 용지 출력만 가능하고 한 페이지에 9명씩 출력된다.

88

Ⅱ.읍면동 담당자

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접수내역조회1

행정자치부



○ 화면좌측 하단의 "접수내역 조회" 버튼을 눌러서 거소투표신고사유별 접수내역을 조회한다.

○ 선상투표신고의 사유별 접수내역 조회는 화면좌측 하단의 "선상투표접수내역 조회" 버튼으로 조회한다.

89

II.읍면동 담당자

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접수내역조회2

행정자치부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페이지 : 1

일련번호	거소투표신고사유	건수
1	01-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장내 또는 항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1
2	합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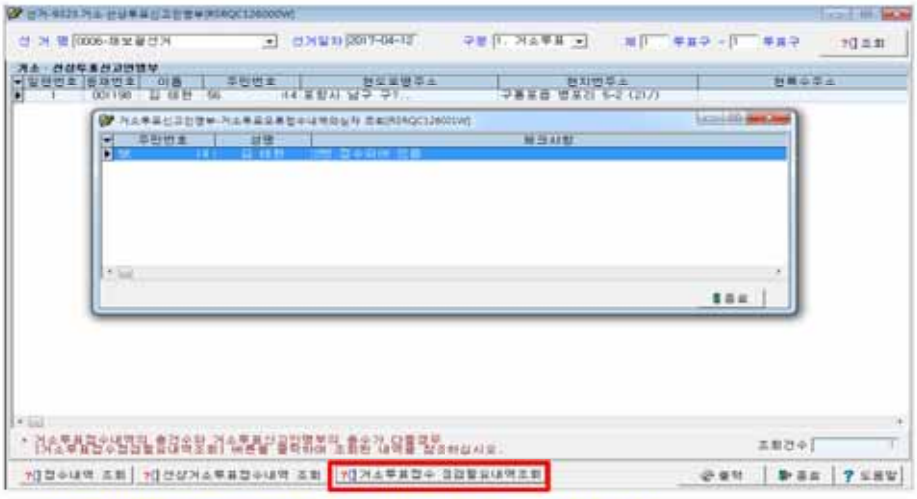
○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출력이 된다.

90

II.읍면동 담당자

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접수내역건수 오류 확인

행정자치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건수와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의 건수가 같지 않을 경우 화면 하단의 "거소투표접수점검 필요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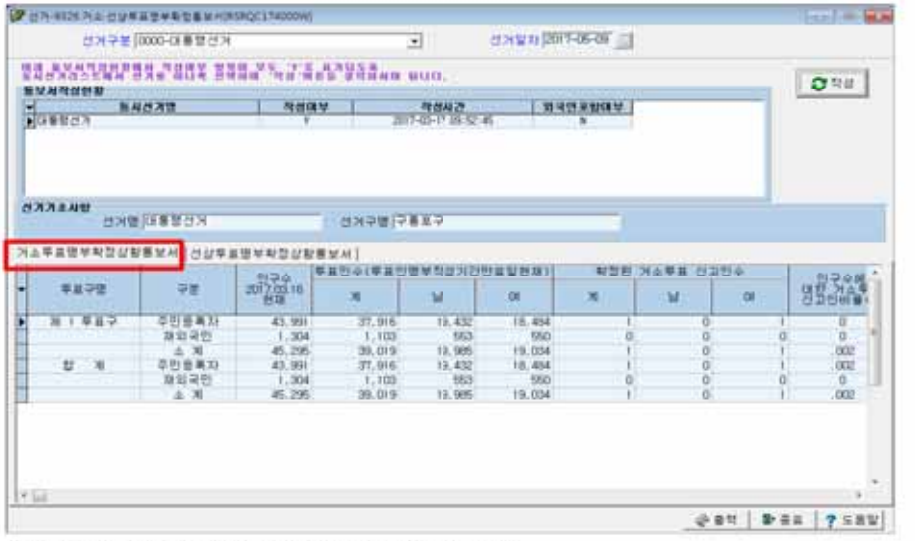
○ 동일한 투표인에 대해 거소투표접수내역을 여러 번 입력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한 내역의 신고요건구비여부가 "예"가 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으로 인정되므로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 업무에서 최종신고내역을 선택하여 "예"로 수정한다.

91

Ⅱ.읍면동 담당자

25. 9326.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거소투표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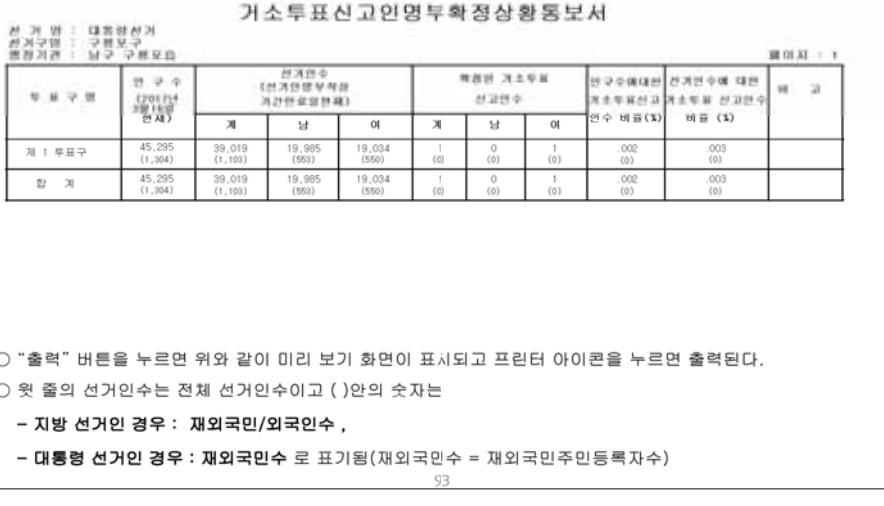
○ 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를 선거별로 생성할 수 있다.
○ 선거구분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선거를 선택 후 "작성"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통보서가 선거별로 작성**되어 조회된다.
○ **작성 기준일 인구수는 [9312]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의 인구수와 동일하다.**

92

Ⅱ.읍면동 담당자

25.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출력

행정자치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선 거 명 : 대통령선거
선거구명 : 구통로구
명칭기준 : 남구 구통로읍

페이지 : 1

투 표 구 명	인 구 수 (2017년4 3월16일 현재)	선거인수 (선거인명부작성 기간만료일현재)			확정된 거소투표 신고인수			인구수에대한 거소투표신고 인수 비율(%)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인수 비율 (%)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제 1 투표구	45,295 (1,304)	39,019 (1,103)	19,985 (553)	19,034 (550)	1 (0)	0 (0)	1 (0)	.002 (0)	.003 (0)	
합 계	45,295 (1,304)	39,019 (1,103)	19,985 (553)	19,034 (550)	1 (0)	0 (0)	1 (0)	.002 (0)	.003 (0)	

○ "출력"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되고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출력된다.
○ 윗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 )안의 숫자는
- **지방 선거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수 ,**
- **대통령 선거인 경우 : 재외국민수** 로 표기됨(재외국민수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수)

93

Ⅱ.읍면동 담당자

26. 9331.선관위용파일작성 – 조회 및 파일작성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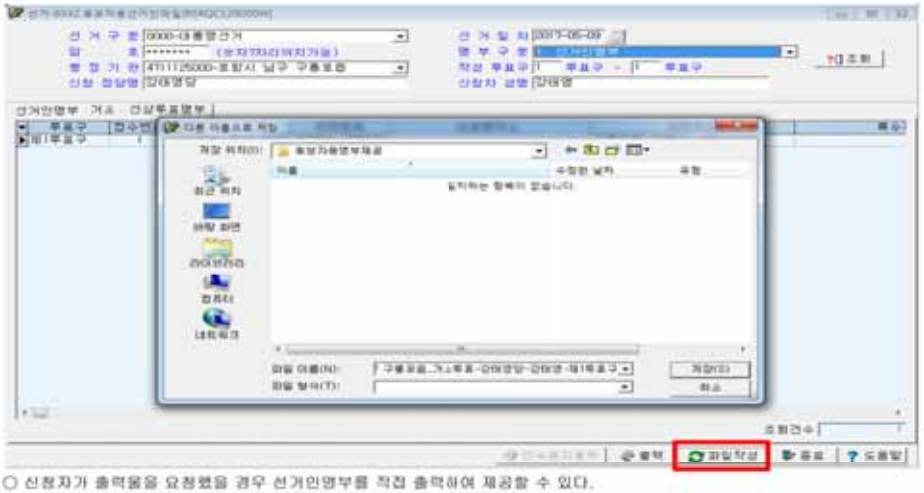
○ 저장위치와 파일이름 확인 후 저장한다. **이때, 선거인 명부 파일명은 명부작성 구분을 위해 "(작성)"으로 표기된다.**
○ **열람기간 이후에는 작성할 수 없다.**
○ 명부구분은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명부"중 선택한다.
○ **구,시,군 담당자도 작성이 가능하며, 행정기관별로 조회하여 파일을 작성한다.**

94

Ⅱ.읍면동 담당자

27. 9332. 후보자용파일작성 – 조회 및 파일작성

행정자치부



○ 신청자가 출력물을 요청했을 경우 선거인명부를 직접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 "파일작성" 버튼을 누르면 파일저장을 위한 창이 나타난다.
○ 작성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 후 **파일명을 수정하지 말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 전체 투표구간으로 조회하여 작성하며,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 명부 파일이 투표구단위로 각각 생성된다.**
○ 생성된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로 지정된 프로그램으로만 출력할 수 있다.
PC의 C:₩raisWa_rst₩후보자용선거인출력.exe 파일 또는 주민등록,인감 온라인 공동학습방(http://10.91.21.13/)
-> 선거업무 ->자료실->게시번호 '40336' 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함께 제공

95

Ⅱ.읍면동 담당자

참고. 선거인 명부의 수정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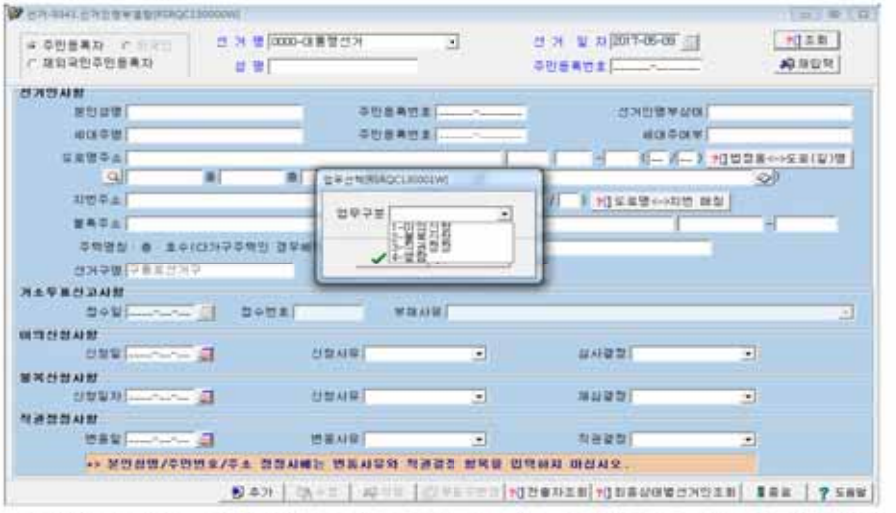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4/11 ~ 4/15)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 (4/16 ~ 4/27)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4/28~)
◆ 명부 수정 불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 단,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우 등재 위해 명부 수정 가능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으로 추가 등재 ▶ 명부 등재 즉시 혹은 4/15일 까지 ☞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재작성	◆ 이의신청, 불복신청에 의한 수정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이의신청' 혹은 '불복신청'으로 수정 ◆ 명부누락자의 구제에 의한 수정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으로 결정사항을 등재로 하여 수정 ◆ 오기, 선거권없는자, 사망자가 있는 경우 수정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으로 결정사항을 삭제로 하여 수정 ▶ 명부 확정 후 혹은 4/27일까지 ☞ [9351.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작성 ☞ 「선거인명부수정상황통보서」 통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므로 전산처리는 하지 않음 ◆ 사망자, 선거권없는자, 오기된 자 등은 제7호 서식 (나)에 의하여 통보 ◆ 사전투표소 투표기간 종료 후 선관위시스템에서 사전투표정보를 반영한 선거인명부 출력 후의 수정사항은 명부 비고란에 기재

96

Ⅱ.읍면동 담당자

28. 9341.선거인명부열람 – 업무선택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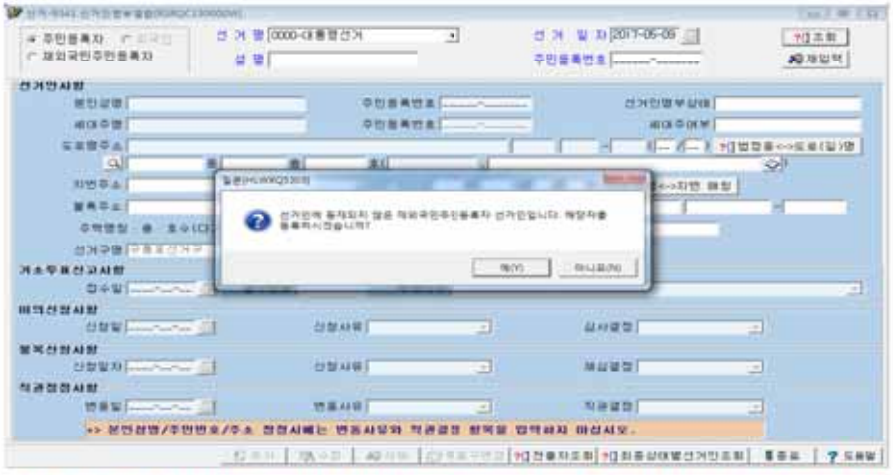
○ 선거명을 선택하면 선거일자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대상자의 성명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업무구분 선택 창이 나타난다.
○ 이의신청, 불복신청, 직권정정, 열람 업무 중 해당업무를 선택한다.
○ **미 등재자를 직권정정으로 추가 등재할 수 있는 기간은 명부작성기간 또는, 이의신청기간 이후부터 명부확정 전까지이다.**

97

II.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추가1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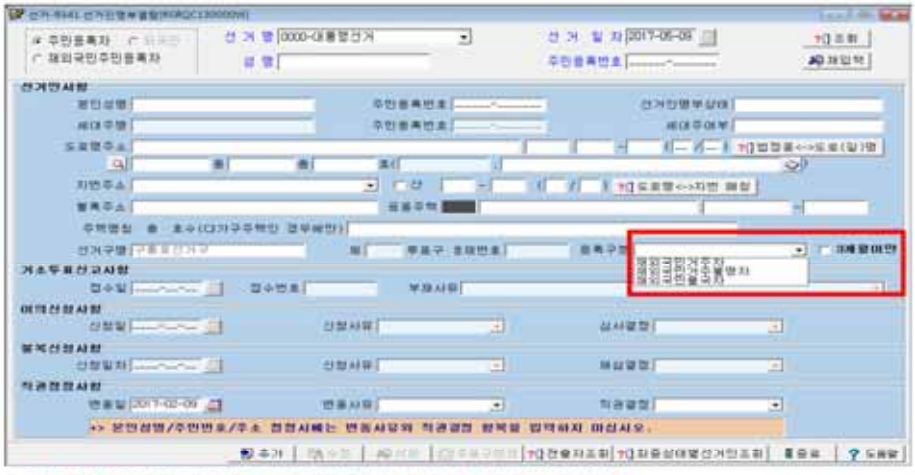
○ 거주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자" 선택,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인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선택한다.
○ 업무구분을 선택한 후 자료를 입력한다.

98

II.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추가2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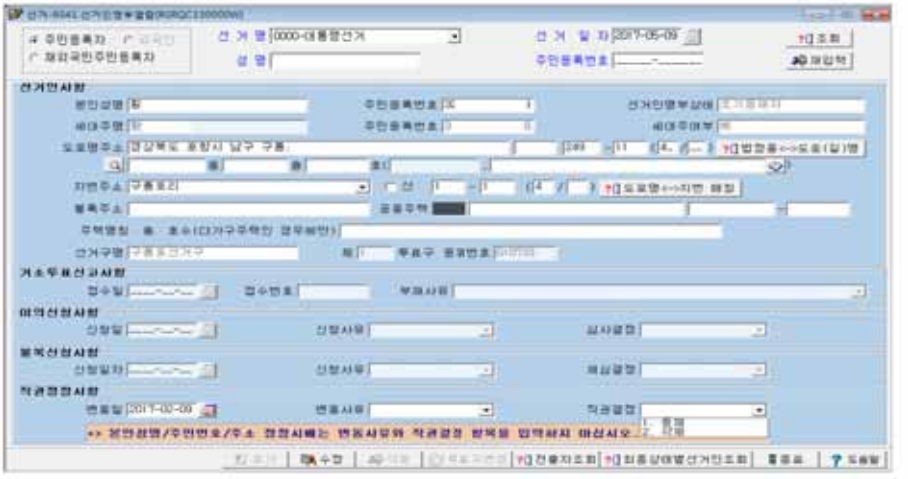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인 경우 3개월 미만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체크한다
(3개월 미만을 체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은 없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권만 부여, 대통령선거인 경우에는 3개월 미만 여부 상관없이 선거권 부여됨).
○ 새로운 선거인을 등재할 경우는 "추가" 버튼으로 작업한다.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직권정정으로 선거인을 등재했을 경우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재 작성해야 한다.

99

Ⅱ.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수정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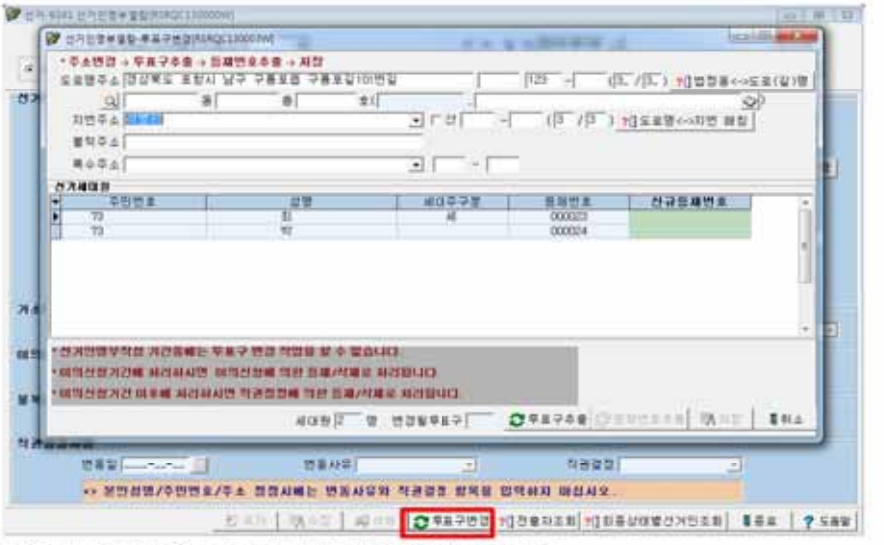
○ 변동(신청)사유와 직권(심사/채심)결정 상태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등재된 선거인을 수정하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한다.
○ 이의신청기간에 작업자 오류로 이의신청으로 등재된 선거인(해당 투표구의 가장 마지막 등재번호인 선거인)에 한해서만 "삭제" 버튼으로 선거인을 삭제할 수 있다.

100

Ⅱ.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투표구변경1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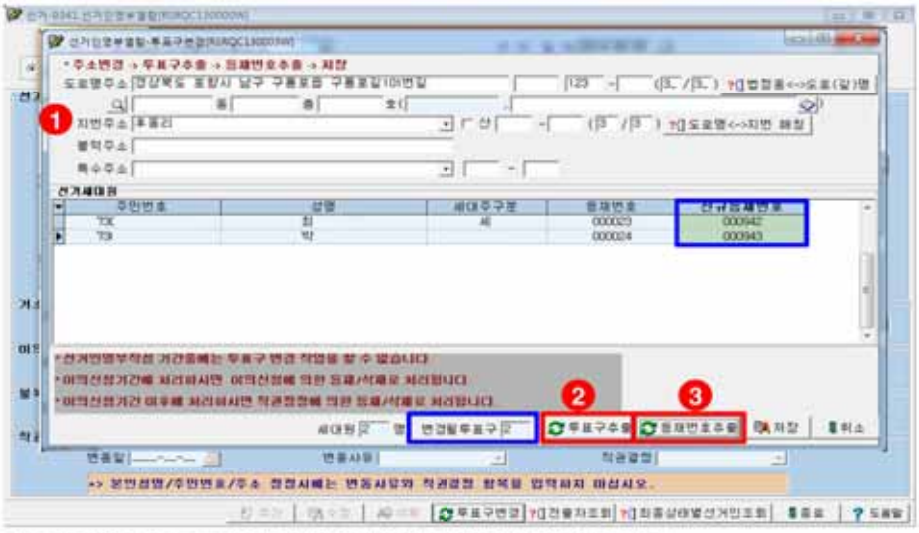


○ 업무구분을 "열람"으로 선택하면 "투표구변경" 버튼이 활성화 된다.
○ 명부작성기간에는 투표구변경을 할 수 없다.
○ 투표구변경 화면에서 변경될 투표구에 해당하는 주소로 수정한다.

101

II.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투표구변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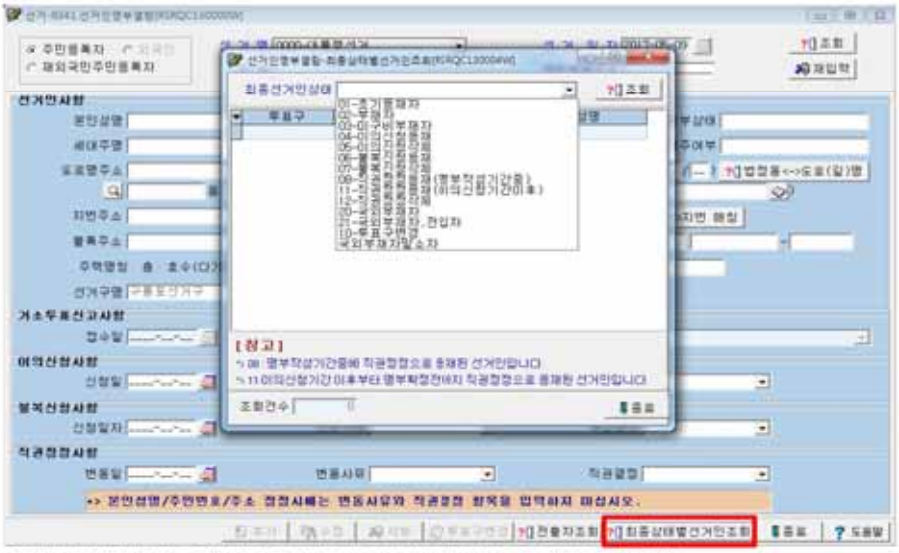


○ "투표구추출"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주소에 해당하는 변경될 투표구가 추출된다.
○ "등재번호추출"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될 투표구의 새로운 등재번호가 부여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다.
○ 이의신청기간에 투표구변경 시 [이의신청에 의한 증/감]으로 반영된다.
○ 이의신청기간 이후부터 명부확정 전까지 투표구 변경 시 [이의신청에 의한 증/직권수정에 의한 감]으로 반영된다.

102

II.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최종상태별 선거인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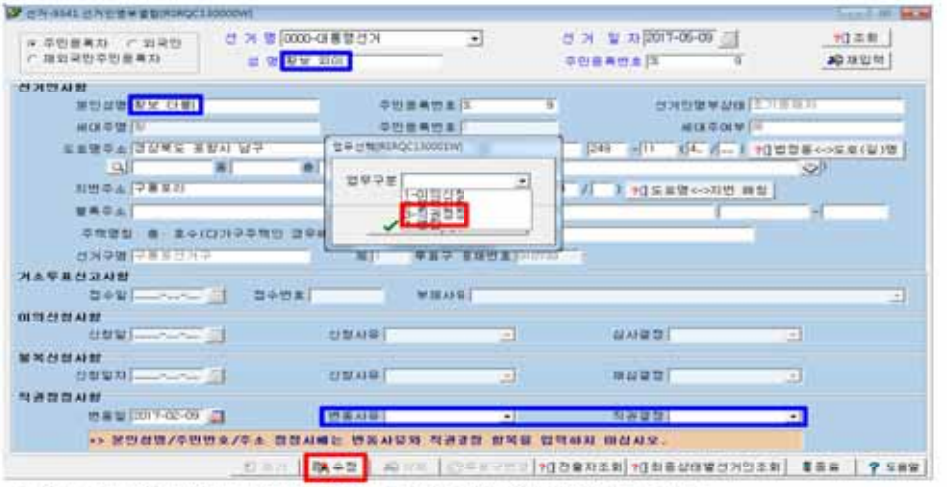
○ "최종상태별선거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상태별선거인조회 화면이 실행된다.
○ 조회하고자 하는 최종선거인상태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01-초기등재자는 조회되지 않는다.

103

Ⅱ.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정정1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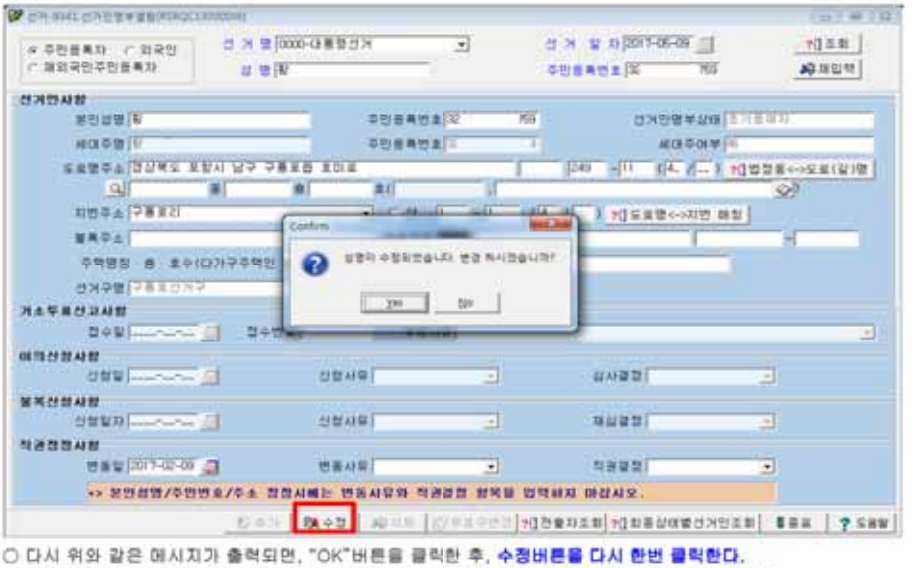
○ 주민등록 자료에 미리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4120]개인별주민등록열람에서 확인한다.
○ 업무구분은 직권정정을 선택한다.
○ 성명이나 주민번호 정정의 경우 변경 전의 성명 또는 변경 전 주민번호로 대상자를 조회한다.
○ **주민번호 정정 시 성별이 바뀌는 정정은 불가능하며, 직권삭제 후 직권등재로 처리해야 한다.**
○ **변동사유나 직권결정은 입력하지 않는다.**
○ 선거인사항에서 본인성명(또는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성명정정의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되면 "Yes"를 클릭한다.

104

Ⅱ.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정정2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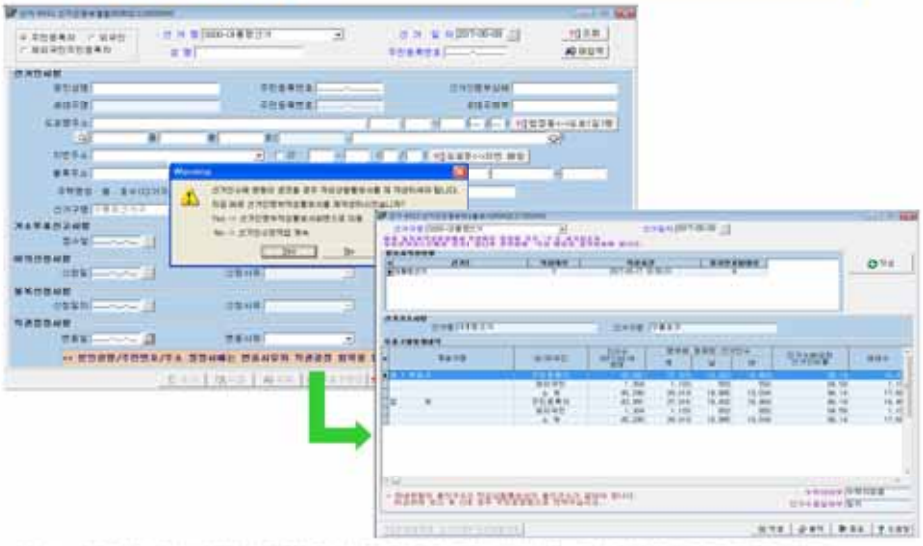
○ 다시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되면, "OK"버튼을 클릭한 후, **수정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한다.**
○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면 변경 후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로 대상자를 조회하여 선거인명부의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105

II.읍면동 담당자

28. 선거인명부열람 – 선거인수변동1

행정자치부



○ 'Yes'버튼을 눌러서 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화면으로 이동되면 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가 자동으로 재작성된다.
○ 선거인을 등재나 삭제하여 선거인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다.
○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대상자가 더 이상 없으면 'Yes'버튼을 눌러 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화면으로 이동하고 수정할 대상자가 있으면 'No'버튼을 눌러서 수정작업을 진행한다.

106

II.읍면동 담당자

29. 9351.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 조회/작성

행정자치부



○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를 선거별로 생성할 수 있다.
○ 선거를 선택 후 "작성" 버튼을 누르면 선거인명부확정상황 통보서가 작성되고 자동으로 중앙센터로 전송되어 통보서가 집계된다.
○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의 기타통보서(선거인연령별현황)도 함께 일괄 작성된다.**
○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명부를 수정(등재 혹은 삭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 버튼을 눌러 재 작성하여야 한다.
○ 확정된 투표구별/연령대별 선거인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기타통보서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107

Ⅱ.읍면동 담당자

29.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 출력

행정자치부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선 거 명 : 대통령선거
선거구명 : 구로보구
연정기관 : 남구 구로모읍

페이지 : 1

투 표 구 명		① 인 구 수 (2017년 8월 현재)	② 선거인명부 등재된 선거인 수	③ 직권 수정			④ 확정 된 선거인수	⑤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⑥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⑦ 인구수에 선거인비율 (%)	⑧ 세대수	비 고
				계	증	감						
제 1 투표구	계	45,295 (1,304)	39,019 (1,103)	0 (0)	0 (0)	0 (0)	39,019 (1,103)	1 (0)	1 (0)	86.14 (84.59)	17,588 (1,103)	
	남	23,282 (672)	19,985 (553)	0 (0)	0 (0)	0 (0)	19,985 (553)	0 (0)	0 (0)	85.84 (82.29)		
	여	22,013 (632)	19,034 (550)	0 (0)	0 (0)	0 (0)	19,034 (550)	1 (0)	1 (0)	86.47 (87.03)		
합 계	계	45,295 (1,304)	39,019 (1,103)	0 (0)	0 (0)	0 (0)	39,019 (1,103)	1 (0)	1 (0)	86.14 (84.59)	17,588 (1,103)	
	남	23,282 (672)	19,985 (553)	0 (0)	0 (0)	0 (0)	19,985 (553)	0 (0)	0 (0)	85.84 (82.29)		
	여	22,013 (632)	19,034 (550)	0 (0)	0 (0)	0 (0)	19,034 (550)	1 (0)	1 (0)	86.47 (87.03)		

○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를 출력한다.
○ 맨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 )안의 숫자는 (재외국민주민등록자수/외국인수)로 표기됨
○ 주민등록자의 세대수는 작성상황통보서의 세대수와 동일함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및 외국인의 세대수는 확정된 선거인수의 1인 1세대로 변경되어 집계됨

108

Ⅱ.읍면동 담당자

30. 9342.우편발송물주소조회 – 우편번호관리

행정자치부



○ "우편번호관리" 버튼을 클릭한다.
○ 법정동을 선택하고, 우편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버튼을 눌러 해당 법정동의 우편번호를 추가한다.
○ 삭제 시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 과거 선거기간에 입력했던 자료가 있을 경우는 화면에 조회되므로 달라진 우편번호만 삭제 후 추가한다.

109

II.읍면동 담당자

30.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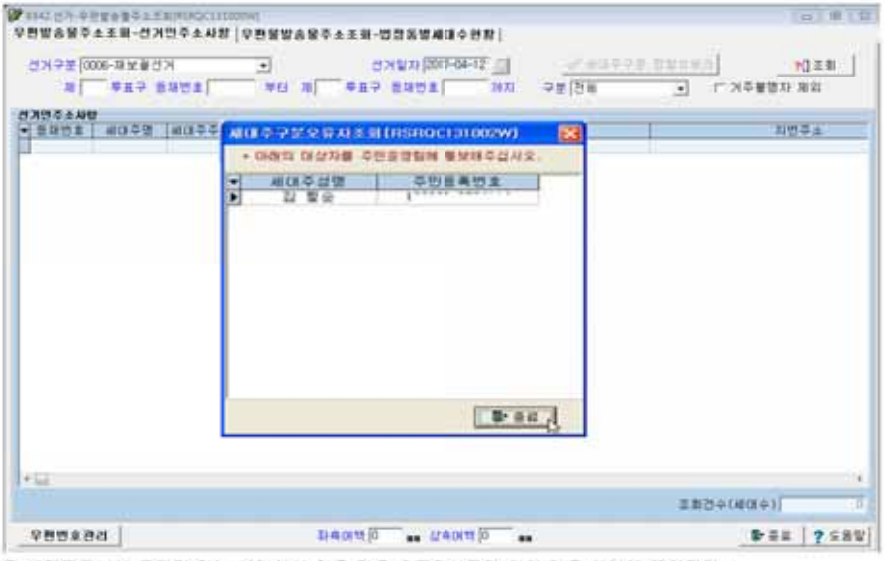
○ 세대주구분 정합성 체크가 정상일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다.
○ 출력하고자 하는 투표구, 등재번호 범위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세대주가 거소투표신고인이 되거나 명부에서 직권삭제 될 경우 투표권이 있는 세대원 중 등재번호가 빠른 자를 자동으로 임시 세대주로 지정 한다. 이 경우 오동작이 발생하면 투표안내문이 전혀 다른 세대에 포함되어 출력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를 하도록 한다.
○ **거소투표신거인을 제외한 투표권이 있는 세대의 세대수가 조회된다.**

110

II.읍면동 담당자

30.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오류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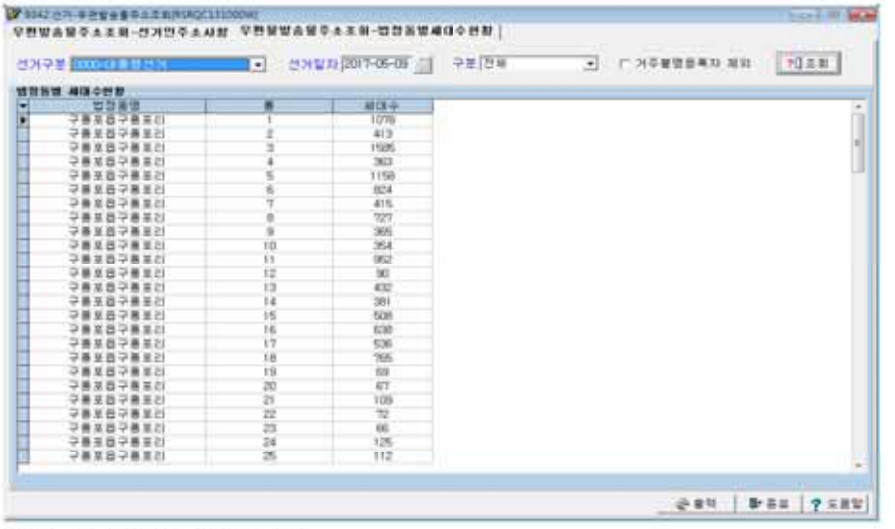


○ 세대주구분에 문제가 있는 선거인이 있을 경우 오류대상자가 위와 같은 화면에 조회된다.
○ 오류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민업무팀에 문의하여 조치토록 한다.

111

Ⅱ.읍면동 담당자

30.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세대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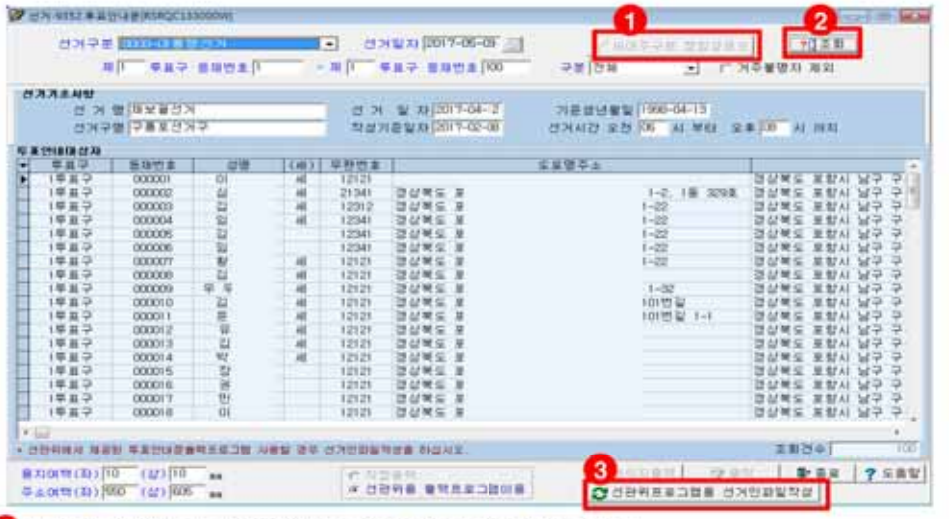


○ 법정동별세대수현황 탭을 클릭한다.
○ 선거구분을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법정동별 통별 선거권이 있는 세대수가 조회된다.

112

Ⅱ.읍면동 담당자

31. 9352.투표안내문 – 조회



❶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는 [9342.우편발송물주소] 업무의 작업방법과 동일하다.
❷ 투표구와 동재번호 구간을 입력한 후 조회하면 거소투표선거인을 제외한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이 조회된다.
❸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통합시스템(http://emd.nec.go.kr)에서만 투표안내문 출력이 가능하므로 선관위프로그램용 선거인 파일을 작성하여 중앙선관위 프로그램에서 출력한다.

113

II.읍면동 담당자

32. 주의사항

행정자치부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일자에는 반드시 모든 읍.면.동에서 **선거인명부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인 본 명부 작성 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예비명부 작성 전 [9300.주민오류자료조회] 업무에서 조회된 오류자료를 모두 보정해야 한다.
○ 주택명칭.층.호수(기타주소)가 투표안내문 주소에 포함되어 출력되므로 선거인명부작성(4/11)
전까지 **기타주소 내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미리 정비**해야 한다.(교재내 기타주소정비 참고)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일과 선거인본명부 작성일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
1. [9300.주민오류자조회] 업무에서 **오류 자료 조회 및 자료 보정**
2. [5410.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업일자의 **관내현황을 작성하여 총 인구수 확인**
3. [9307.외국인선거인등록],[9308.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에서 등록여부 확인,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시 등록했을 경우, 선거인 본 명부 작성시에는 변동된 자료만 보정
4. [9311.선거인파일작성] 업무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5.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업무에서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작성**
6. **관내현황 총 인구수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의 총 인구수가 같고 누락자가 없는지 확인**
7. [9313.선거인명부출력] 업무에서 기타통보서와 선거인명부 출력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시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대사완료 후 파기하여 본 명부 작성 후의 선거인명부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에 대한 3개월 미만(주민등록표) 확인이 중요함(지방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1. 등록구분이 거주자,국외이주신고자가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상 체크함.
2. 재등록 및 신규등록으로 등록구분이 재외국민 거주자가 된 경우 재등록 및 신규등록 된 날짜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일까지 3개월 미만 여부를 확인 후 체크해야 함.

114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인감 온라인 공동 학습방
(http://10.51.21.13)

「선거업무 → Q&A, 자료실」

FAX : 02)2100-3728


질의응답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목차

Ⅰ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1. 결격사유조회 업무 흐름도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2.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3. 중요사항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1. 선거권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념도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4. 주의사항
Ⅳ 기타 안내사항

Ⅰ.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1. 결격사유조회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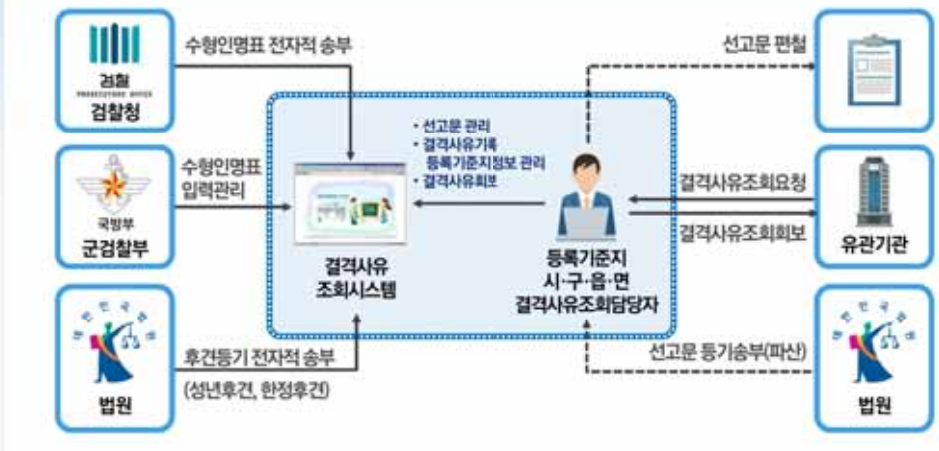


Ⅰ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행정자치부

1. 결격사유조회 업무 흐름도

수형인명표의 전자적 전송과 시 · 구 · 읍 · 면에서 법원 선고문을 등록 관리하여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기록 정보를 전자적 통합 조회 할 수 있음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 자 관련 설명 4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2.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3. 중요사항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업무 개요

○ 수형인의 죄명을 검증하여 선거관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련법위반여부' 및 '선거권없는기간'을 수정하여 정확한 선거권없는자명부가 작성 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3호)



신 규 접 수 → 선거관련법 위반자 →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선거권위반 여부 검증!

선거권위반 여부 검증!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 자 관련 설명 6

II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 신규 접수 시 선거관련법위반 여부 확인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메뉴구조]

결격사유기록관리 》 신규결격사유기록관리 》 신규결격사유기록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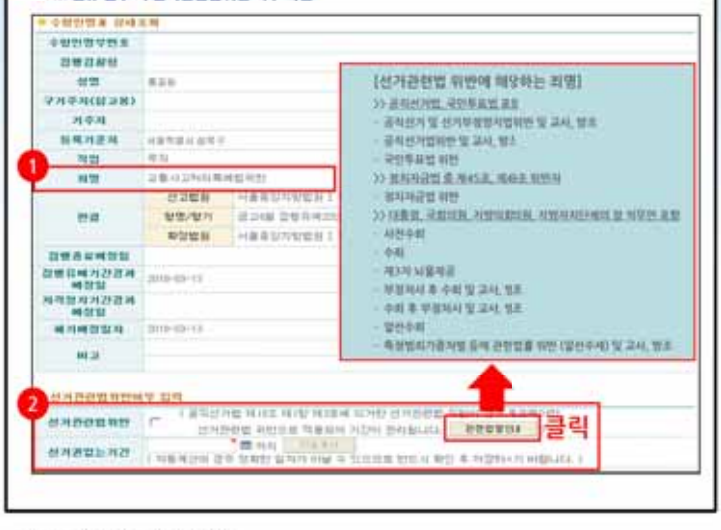
1. 송부유형이 신규인 대상자가 발생 시 검색결과의 성명, 주민번호 링크를 클릭

II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 신규 접수 시 선거관련법위반 여부 확인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메뉴구조] (미접수건수)

결격사유기록관리 》 신규결격사유기록관리 》 신규결격사유기록조회

1. 대상자의 죄명을 보고 선거관련법 위반자 인지 판단
2. 선거관련법위반자 일 경우에 선거관련법위반여부에 체크 후 선거권없는기간을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후 접수

<중요>

※ 선거관련법위반자 판단 근거는 화면 내에 관련법령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 선거관련법위반에 해당하는 죄명과 해당 수형자의 죄명을 비교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절차1) - 선거관련법위반으로 체크 된 대상자의 죄명 검증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메뉴구조]
선거권없는자관리))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1. 선거관련법위반여부를 선거관련법 위반으로 체크된 목록으로 선택
2. 검색 버튼 클릭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절차1) - 선거관련법위반으로 체크 된 대상자의 죄명 검증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메뉴구조]
선거권없는자관리))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1. 죄명이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일반 수형 죄명은 선거관련법위반 죄명이 아니므로 현재 목록에서 보인다면 **잘못**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 죄명을 클릭
2. 선거관련법위반에 해당하는 죄명이므로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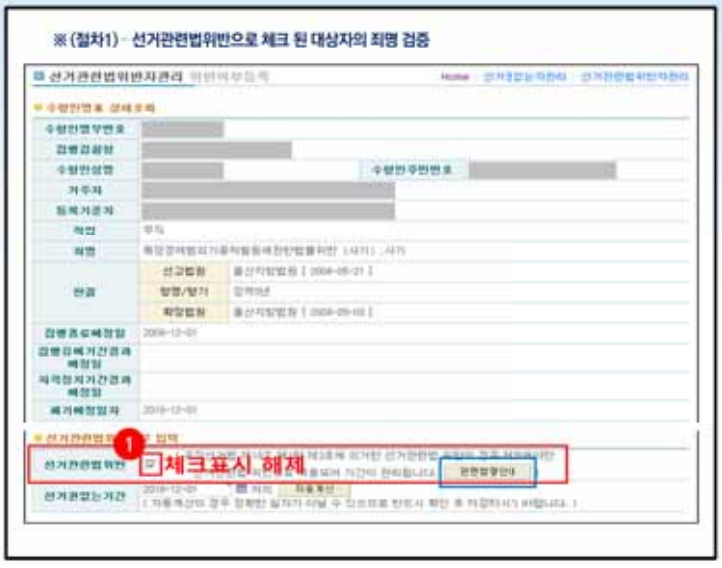
※ 선거관련법위반에 해당하는 죄명은 화면내의 관련죄명안내, 관련법령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절차1) - 선거관련법위반으로 체크 된 대상자의 죄명 검증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메뉴구조]

선거권없는자관리))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1. 상세화면에서 '선거관련법위반 여부 입력' 항목 부분의 선거관련법위반 체크 사항을 해제 후 아래에 수정 버튼 클릭

※ 혹여 죄명으로 선거관련법위반자 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확인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없는자관련 설명 11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절차2) - 선거관련법위반으로 체크 된 대상자의 복권사항 확인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메뉴구조]

선거권없는자관리))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1. 선거관련법위반자 중에서 선거권 없는기간이 선거일자보다 미래 인 대상자의 검색 결과 클릭

※ 선거권없는기간이 선거일자보다 이전 날짜인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없는자관련 설명 12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절차2) - 선거관련법위반으로 체크 된 대상자의 복권사항 확인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메뉴구조]

선거권없는자관리 >>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1. 변경이력조회 버튼 클릭
2. 변경이력 중에 복권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기사항 시행일자를 확인
3. 선거권없는기간에 변경이력에서 확인한 복권 부기사항 시행일자를 수동으로 입력 후 아래 수정 버튼 클릭하여 저장 (자동계산 버튼X)

※ 변경이력조회에서 복권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2.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 선거부서 담당자가 선거인명부작성 목적으로 선거권없는자 명부를 요청하는 경우엔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를 다운로드 받아 ①자료 검토 → ②엑셀 암호화 해제 후 전달

선거권없는자관리 메뉴 구조 설명



※ 요청받는 선거권없는자 명부는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메뉴로 추출

[선거권없는자관리 메뉴 설명]

>>선거관련법위반자관리
- 시행자의 선거관련법위반 여부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
- 선거권 유무 확인 불가 (위반여부 수정 메뉴)

>>선거권없는자조회(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대상자의 선거권 유무 조회 메뉴
- 엑셀 다운로드 가능

>>선거권없는자조회(거주지)
- 거주지가 관내인 대상자의 선거권 유무 조회 메뉴
- 엑셀 자료 다운로드 불가 (조회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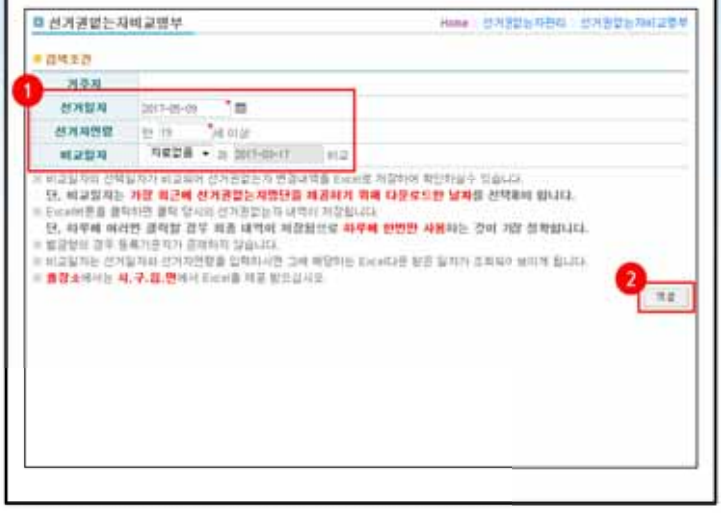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 거주지가 관내인 선거권없는자 명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
- 선거담당부서로부터 선거권없는 명부를 요청 받을 경우 활용

II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2.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메뉴구조]
선거권없는자관리 》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1.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추출 시 3가지 항목 필히 확인
   - 선거일자 : 2017-05-09 (선거일자 변경 시 대상자들의 선거권 유무 사항이 변동되어질 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 후 다운로드)
   - 선거자연령 : 만 19세 이상
   - 비교일자 가장 최근에 다운받은 명부와 현재 명부를 비교하여 변동 여부를 명부에 표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않고 추출 (비교일자의 자료없음은 선거권 없는자비교명부를 최초 추출시에 표시)
2. 엑셀 버튼 클릭하여 다운로드

II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2.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암호화 해제 방법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1. 저장된 비교명부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보안문서 관리 메뉴의 암호화 해제 메뉴를 클릭 (아이콘에 자물쇠 모양 표시)
2. 암호화가 해제되면 엑셀 아이콘의 자물쇠 모양이 사라지게 됨 (암호화해제 완료)

<확인>
※ 엑셀 지원 버전
2003, 2007, 2010, 2013만 가능
2013 이상의 상위버전을 사용할 때엔 엑셀버전 다운그레이드 필요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3. 중요사항

중요사항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추출 시 해당 문서를 '열기'로 열지 않고 PC로 '저장'하여 명부를 관리
- 선거기간 동안에는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추출 요청이 자주 발생 함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부서 담당자가 명부 해석 요청 시 이력추적이 불가능

◦ 비교명부 추출 시 3가지 입력 사항 확인 (선거일자, 선거자연령, 비교일자)
- 선거일자는 '2017-05-09' 선거일로 입력 (선거일자가 변경될 시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가 상이해 질 수 있음)
- 선거자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입력
- 비교일자는 가급적 수정하지 않고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날짜와 현재 날짜가 비교되어질 수 있도록 설정

◦ 선거부서 담당자에게 비교명부를 전달할 때 반드시 '파일 암호화 해제' 후 전달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추출 이전에 '선거관련법위반자' 점증 및 정리 절차(1,2)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 정확한 선거권없는자명단이 작성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 자 관련 설명** 17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1. 선거권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념도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4.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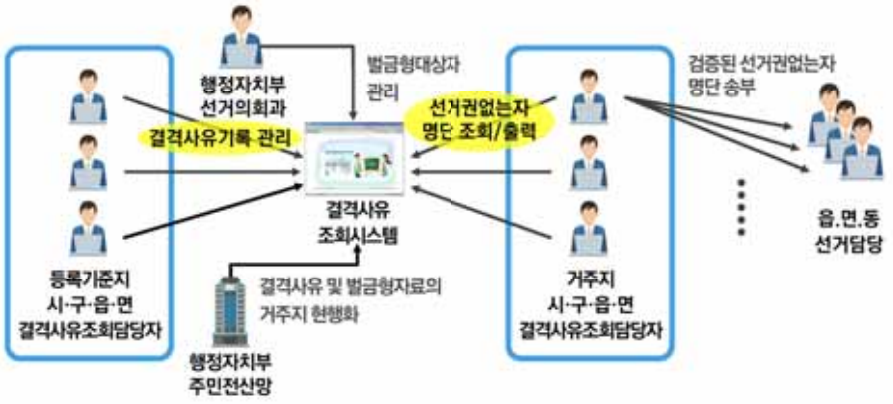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1. 선거권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각 등록기준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 및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서 관리하는 벌금형자료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 등록 후 시·구·읍·면 결격사유조회담당자가 선거권 없는 자 명단 추출(Excel)로 선거담당에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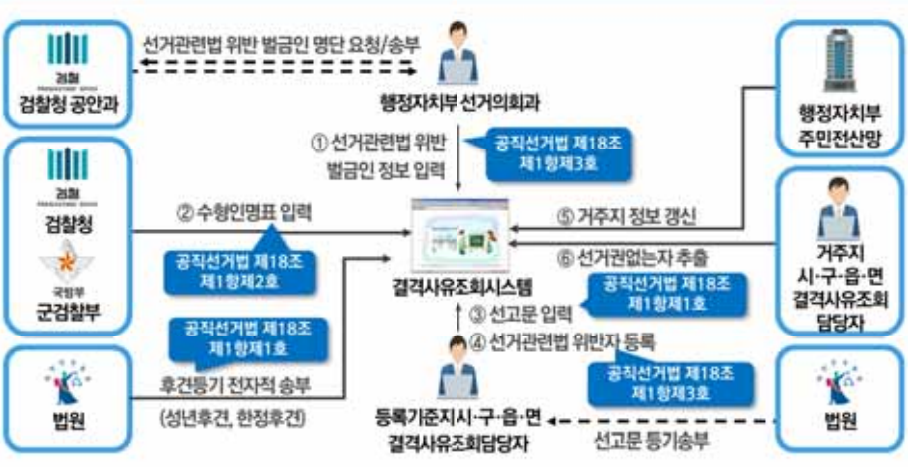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념도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벌금형 입력,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의 수형/선고 자료를 접수·입력 하고 거주지 시·구·읍·면 에서는 선거권 없는 자를 추출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 Excel에 표현되는 변경사유 중 추가/삭제 원인 설명

- 신규 : 등록기준지에서 신규 수형/선고 자료를 접수
- 전입/전출 : 신규 수형/선고 자료의 경우 거주지가 최초로 현행화, 대상자의 거주지가 실제로 변경
- 종료예정일변경 : 집행종료예정일 등의 변경
- 선거관련법위반여부변경 : 담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여부의 체크를 선택/해지 한 경우
- 선거권없는기간변경 : 담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자의 선거권 없는 기간을 변경하였을 경우
  [예]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복권이 발생하여 선거권 없는기간에 복권일자를 입력한 경우

◆ 다운받은 Excel 자료의 변경상세내역에는 위와 같은 사유와 자료의 변동 일자가 조회

[예1] 전입/전출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변경일자:2011-12-20][2015-10-06]
[예2] 전입/전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서울특별시종로구 관철동 [변경일자:2015-10-05][2015-10-06]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 자 관련 설명 21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 일자에 대한 정의 (선거권없는기간 / 폐기예정일자)

- 2999-12-12 : 검찰청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으로 폐기예정일자를 주지 않았을 경우
  =>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검찰청 시스템의 실효일자를 수정 요청
- 8888-12-31 : 검찰청에서 사형/무기징역/도망 등으로 인해 형 집행을 하지 못하였거나 집행기간이 무기한인 경우
- 2099-12-31 : 97년 이전수형등록에서 형명을 사형/무기징역으로 입력하였을 경우
- 7777-12-31 : 상소권회복으로 인해 선거권이 복권되었을경우
- 1900-01-01 : 검찰청에서 무죄판결로 복권되었을 경우
- 1111-11-11 : 검찰청에서 수형인명표를 삭제하였을 경우(즉, 검찰청에 존재하지 않는 명표)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 자 관련 설명 22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거주지	거주지행정동코드	거주지행정관서	종착	변경사유	변경상세내역
정길동	********* *	전라남도 ** 군 **읍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 **	11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① 종착	② 삭제	전입/전출-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변경일자:2017-04-26][2017-04-27] ③
정길동	********* *	전라남도 ** 군 **읍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 **	11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종착	추가	전입/전출-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변경일자:2017-04-26][2017-04-27]
공길동		전라북도 ** 군 **읍 55	서울특별시 종로구 ** **	11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④ 종착	추가	전입/전출-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변경일자:2017-04-26][2017-04-27]
유길동		경상남도 ** 군 **읍 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 **	11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동	⑤ 종착	삭제	전입/전출-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동->서울특별시 종구[변경일자:2017-04-26][2017-04-27]

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일자 : 2017-05-09
선거연령 : 만 19세 이상
비교일자 : 2017-04-25 과 2017-04-27 비교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메뉴의 조회조건

1. 거주지행정관서의 이동(관내 이동) : 대상자 정길동은 2017-04-25일과 2017-04-27일 사이에 거주지 행정관서가 (가회동 -) 교남동로 변경됨
2. 비교명부 Excel파일은 거주지행정관서별로 정렬되므로 [거주지행정관서 - 가회동]에서는 대상자 정길동의 변경사유가 삭제로 나타나고 [거주지행정관서 - 교남동]에서는 대상자 정길동의 변경사유가 추가로 보여진다.
3. 변경상세내역은 변경사유에 대한 내역으로 "전입/전출 - 구거주지행정관서 -; 신거주지행정관서[변경일자(주민센터에 등록된 전입일자)] [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 거주지가 적용된 날짜(즉 거주지현행화일)]"를 나타내게 된다.
4. 대상자 공길동은 "전입/전출"의 사유에 의해 (성북구 -) 종로구로 "추가"됨
5. 대상자 유길동은 "전입/전출"의 사유에 의해 (종로구 -) 중구로 "삭제"됨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거주지	거주지행정동코드	거주지행정관서	생착	변경사유	변경상세내역
가길동		전라남도 ** 군 **읍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생착 ①	추가	신규 -[2017-04-26]
나라면	***** *****	전라남도 ** 군 **읍 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동	생착 ②	변동없음	
다길동		전라남도 ** 군 **읍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생착 ③	추가	선거관련법위반여부변경-[2017-04-26]
라길동		전라남도 ** 군 **읍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생착 ④	삭제	선거권없는기간변경-[2017-04-26]

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일자 : 2017-05-09
선거연령 : 만 19세 이상
비교일자 : 2017-04-25 과 2017-04-27 비교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메뉴의 조회조건

1. 대검찰청/군검찰부에 의해 신규 수형인명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유는 "추가"이며 변경상세내역은 "신규"로 정의
2. 변동없음 : 대상자 나라면은 2017-04-25일과 2017-04-27일 사이에 변경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3. 시.구.읍.면 등록기준지 담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여부 체크의 내역을 변경하였을 경우 "추가" 또는 "삭제"로 나타나게 되며 "선거관련법위반여부변경"으로 정의 [예 : 대상자 나길동에 대해 접수 시에는 선거사범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후에선거관련법위반자로 판명되어 등록기준지에서 선거관련법위반여부를 체크하여 수정하였을 경우]
4. 시.구.읍.면 등록기준지 담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여부 체크는 그대로 두고 선거권 없는 기간만을 변경하여 수정하였을 경우 "추가" 또는 "삭제"로 나타나게 되며 "선거권없는기간변경"으로 정의 [예 : 선거사범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라길동이 사면/복권으로 인해 선거권 없는 기간이 2017-12-28일 이었다가 2017-01-29일로 변경될 경우 삭제 - 선거권 없는 기간변경으로 나타낸다]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행정자치부

4. 주의사항

1. 각 시,구,읍,면 선거담당자는 엑셀 컬럼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위반 조항]으로 끝나는 자료는 잘못 제공된 자료이므로 [변경상세내역] 또는 [변경유무]로 끝나는 엑셀 자료를 결격사유조회 담당자에게 다시 요청하여야 함.
2. 선거인명부 작성프로그램에 선거권 없는 자 입력할 때 [사유]는 제공받은 엑셀 컬럼의 [공직선거법 제18조 위반조항]의 내용을 입력한다.
3. [거주지행정관서]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는 [거주지] 컬럼을 참고
4. 엑셀 문서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를 제공한 결격사유조회 담당자에게 암호화 해제 후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문서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문서암호화)
5. 벌금형의 경우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죄명 검증이 필요함.
6.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시 처벌 등의 강화로 인한 엑셀자료 보관 및 활용 시 주의
   - 엑셀자료 유통은 암호화 후 보안 USB를 활용하여 제공
   - 담당자 PC에 있는 자료는 전산 처리 후 삭제 조치
7.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2호' 중 일부 위헌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자가 '선거권 없는 자'로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검증**
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2호' 중 징역 1년 미만자는 '선거권 없는 자 ' 로 포함되지 않도록 **검증**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 자 관련 설명**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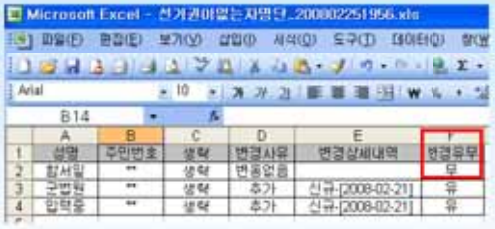
Ⅳ. 기타 안내사항



Ⅳ 기타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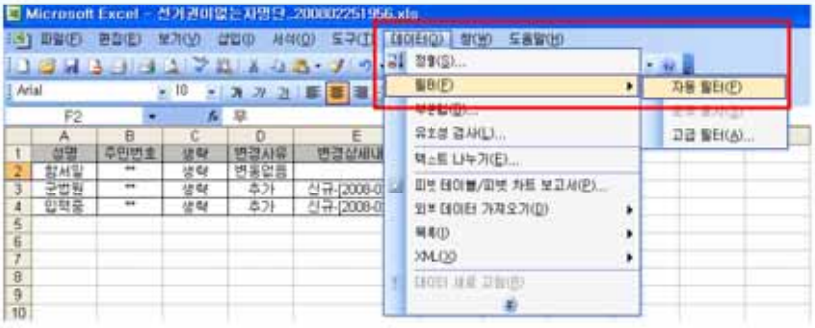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Excel 2003 이하 버전



※ 참고
변경유무가 "유" 인 대상자는 추가/삭제가 된 대상자 이므로 거주지 행정관서에 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할 경우 이를 이용하면 된다.

※ 방법
1.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Excel을 받는다.
2. "변경유무" 라고 표현된 항목을 클릭한다.
3. 메뉴에서 [데이타-필터-자동필터]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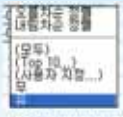
Ⅳ 기타 안내사항

행정자치부

Excel 2003 이하 버전



1. 자동필터가 선택되면 화살표가 생기게 된다.
2. "변경유무" 라고 표현된 항목을 클릭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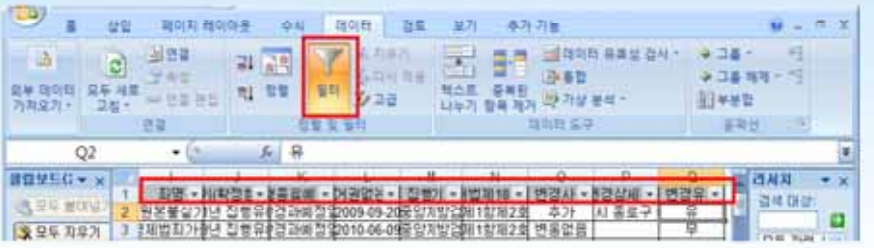
왼쪽과 같은 상자가 보이게 된다.

3. 변경된 대상자만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를 변경되지 않은 대상자만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를 선택한다.
4. [유]를 선택하였다면 변경사유가 [추가] 또는 [삭제]인 대상자만 행정관서별로 보여지게 된다.
5.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면 [모두]를 선택한다.

Ⅳ 기타 안내사항

행정자치부

Excel 2007 버전



** 방법
1.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Excel을 받는다.
2. "변경유무" 라고 표현된 항목을 클릭한다.
3. 메뉴에서 [데이터-필터]를 선택한다.
4. 필터가 선택되면 화살표가 생기게 된다.
5. 변경유무 확인은 2003버전과 동일함.

질의 응답



V 주요 선거사무 일정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3. 10.부터 3. 20.까지 (D-60~50)	금 월	대통령 궐위 통보	사유발생시(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지체 없이	법§200③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
		국외부재자신고 개시 (D-40 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법§218조의12
		선거일 공고 (D-50 限)	선거일 전 50일까지	법§35①
4. 1.까지 (D-38)	토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배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법§38③
4. 5.부터 4. 9.까지 (D-34~30)	수 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확정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218조의12
4. 9.까지 (D-30)	일	**입후보 예정 공무원 사직 기한**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53②
4. 11.부터 4. 15.까지 (D-28~24)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및 명부 작성		법§38 규§11
4. 15.부터 4. 16.까지 (D-24~23)	토 일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6.부터 4. 18.까지 (D-23~21)	일 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 법§41
4. 17.부터 5. 8.까지 (D-22~1)	월 월	선거운동기간 개시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59
4. 25.부터 4. 30.까지 (D-14~9)	화 일	재외선거 투표	선거일전 14일부터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4. 27. (D-12)	목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	법§44①
4. 29. (D-10)	토	투표소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선거공보 발송	선거일전 10일까지(선관위)	법§65⑥ 법§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선관위)	법§65⑥, §153①② 규§76
5. 1.부터 5. 4.까지 (D-8~5)	월 목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 3
5. 4.까지 (D-5)	목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선관위)	법§173①
5. 4.부터 5. 5.까지 (D-5~4)	목 금	사전투표(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5. 9. (D)	화	**투 표(오전6시~오후8시)**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법 10장
		개 표(투표종료 후 즉시)		법 11장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 업무편람

발 행 일 2016년 3월

인 쇄 일 2016년 3월

발 행 처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3855~6

홈페이지 www.moi.go.kr